



WORLD TRADE  
ORGANIZATION

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260000-000367-14

# WTO

#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세계무역기구

**위치** : 스위스 제네바

**설립연도** : 1995년 1월 1일

**설립근거** : 우루과이라운드(1986~94)

**회원국** : 151개국(2007년 7월 27일 기준)

**예산** : 1억 7500만 스위스 프랑(2006년)

**사무국 직원수** : 635명

**대표** : 파스칼 라미(사무총장)

### 기능 :

- WTO 무역협정 관련 행정업무
- 무역협상 포럼
- 무역분쟁 조정
- 국가별 무역정책 감독
- 개도국 기술지원 및 훈련
-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 3판

과거 “미래를 향한 무역(Trading into the Future)”으로 발간 됨

세계무역기구 공보국 제작·발간

© WTO 1995, 2000, 2001, 2003, 2005, 2007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최신판은 WTO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http://www.wto.org> 접속 후 “the WTO” 클릭)

### WTO 공보국 연락처

rue de Lausanne 154, CH-1211 Genève 21, Switzerland

전화 : (41-22) 739 5007/5190, 팩스 : (41-22) 739 54 58

이메일 : [enquiries@wto.org](mailto:enquiries@wto.org)

### WTO 출판부 연락처

rue de Lausanne 154, CH-1211 Genève 21, Switzerland

전화 : (41-22) 739 5208/5308, 팩스 : (41 22) 739 5792

이메일 : [publications@wto.org](mailto:publications@wto.org)

2007년 2월 - 6,000부 발행

# WTO 이해하기

## 〈영문〉

3판

2003년 9월 “미래를 향한 무역” 발간

2007년 2월 개정판

## 〈한글〉

2판

1999년 8월 “WTO 이해하기” 발간

2007년 12월 개정판





“WTO 이해하기(2007년 판)”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WTO 이해하기(2007년 판)”는 제네바 WTO 사무국이 2007년 2월에 발간한 “Understanding the WTO”를 번역한 책으로서, WTO에 대한 생생한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WTO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으로 범세계적 교역 확대와 무역규범 강화, 회원국간 무역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상당 분야에서 WTO 협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WTO에 대한 이해는 국제통상질서를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WTO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다자무역규범의 강화를 목표로 2001년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외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WTO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WTO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 12. 11.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 종 훈

# 용어정리

다음은 WTO에서 사용되는 약어와 머리글자이다.

ACP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그룹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로메협약 및 코토누협정)	MERCOSUR	남미공동시장 (Southern Common Market)
AD, A-D	반덤핑조치 (Anti-dumping measures)	MFA	다자간섬유협정 (Multifibre Arrangement, ATC에 의해 대체됨)
AFT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	MFN	최혜국대우 (Most-favoured-nation)
AMS	농업보조총액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MTN	다자간무역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TC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PSE	농업 생산자 보조 상당치 (Producer subsidy equivalent)
CBD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SI	선적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CCC (현, WCO)	관세협력이사회 (Customs Co-operation Council)	S&D, SDT	개도국 우대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CER(또는 ANCERTA)	호주 뉴질랜드 경제협력 무역협정 (Australia 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SAARC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COMESA	동남 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SDR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CTD	무역개발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SELA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 (Latin American Economic System)
CTE	무역환경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SP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CVD	상계관세(보조금) (Countervailing duty(subsidies))	TBT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DDA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TMB	섬유감시기구(Textiles Monitoring Body)
DSB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TNC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DSU	분쟁해결양해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PRB	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
EC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TPRM	무역정책검토제도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WTO 내에서 공식명칭은 EC )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UN	국제연합 (United Nations)
GAT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UNCTAD	유엔 무역개발회의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UNDP	유엔개발계획 (UN Development Programme)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UNEP	유엔환경계획 (UN Environment Programme)
H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UPOV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ICITO	ITO 잠정위원회(Interim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UR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ILO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VER	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
IM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VRA	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ITC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WCO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ITO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MEA	다자간환경협정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보다 큰 범위의 약어와 용어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3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간한 월터구드(Walter Goode) 교수의 무역정책 용어사전 4차 개정판을 권한다.

이 책을 포함한 WTO 및 무역에 관한 출판물은 아래 WTO 사무국 출판부에 문의하기 바란다.

WTO Publications, World Trade Organization, Centre William Rappard, Rue de Lausanne 154, CH-1211 Geneva, Switzerland.

전화 : (+41-22)739-5208, 팩스 : (+41-22)739-5792, 이메일 : publications@wto.org



## 웹사이트에 대하여

WTO 웹사이트에서 WTO의 활동 및 이슈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주제와 연결된 “게이트웨이(gateway)” – 이를테면, 무역 관련 주제와 연결된 게이트웨이 또는 도하개발 아젠다와 연결된 게이트웨이 등 –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게이트웨이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에 대한 링크(link)를 제공한다

본문 중의 참조표시를 통해 독자들은 어디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참조표시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네비게이션 링크(navigation link) 중 하나나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게이트웨이의 경로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농업협상에 대한 자료를 찾고자 할 경우, 독자들은 아래의 게이트웨이와 링크를 거치면 된다.

**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agriculture negotiations**

독자는 링크를 직접 클릭하거나,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상단에 나타나는 “무역 관련 주제(trade topics)”에 커서를 올려놓을 경우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drop-down menu)를 통해서, 이러한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

## 주의사항

책자 본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책자를 WTO 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해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본문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 일부 단순화한 부분도 있음을 부연한다.

특히, 일부 회원국들은 통상적인 의미의 국가가 아니며 공식적으로는 “관세영역(customs territories)”이지만, WTO 회원국들을 지칭하기 위해 “나라(country)”와 “국가(nation)”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였다.(회원 목록 참조) 무역협상 참가국을 “나라”나 “국가”로 지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오해의 여지가 적을 경우, 예를 들어 WTO 협정문에 대한 설명 등에서는, “회원국(member countries(nations, governments))”이라는 단어에서 “회원(member)”이라는 말을 생략하였다.

본문의 일부분에서는 GATT를 “국제기구”로 기술하였다. 이 문구는 WTO가 설립되기 전에 GATT가 수행한 사실상의 역할을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역할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하여 사용한 것이다. 본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GATT의 이러한 역할은 적법한 근거가 없는 임시적인(ad hoc) 것이었다. 국제법에서는 GATT를 하나의 기구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단순화를 위해 본문에서는 “GATT 회원국(GATT member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GATT는 조약이며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구가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GATT 서명국은 “계약국(contracting parties)”이다.

그리고 읽기의 편의를 위해, GATT와 GATS 조항의 번호는 로마자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었다.

# 목 차

## 제 1 장 기초적인 사항들

1.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9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원칙들	10
3. 개방된 무역을 위한 변호	13
4. GATT 연혁 : 아바나에서 마라케쉬까지	15
5. 우루과이라운드	18

## 제 2 장 협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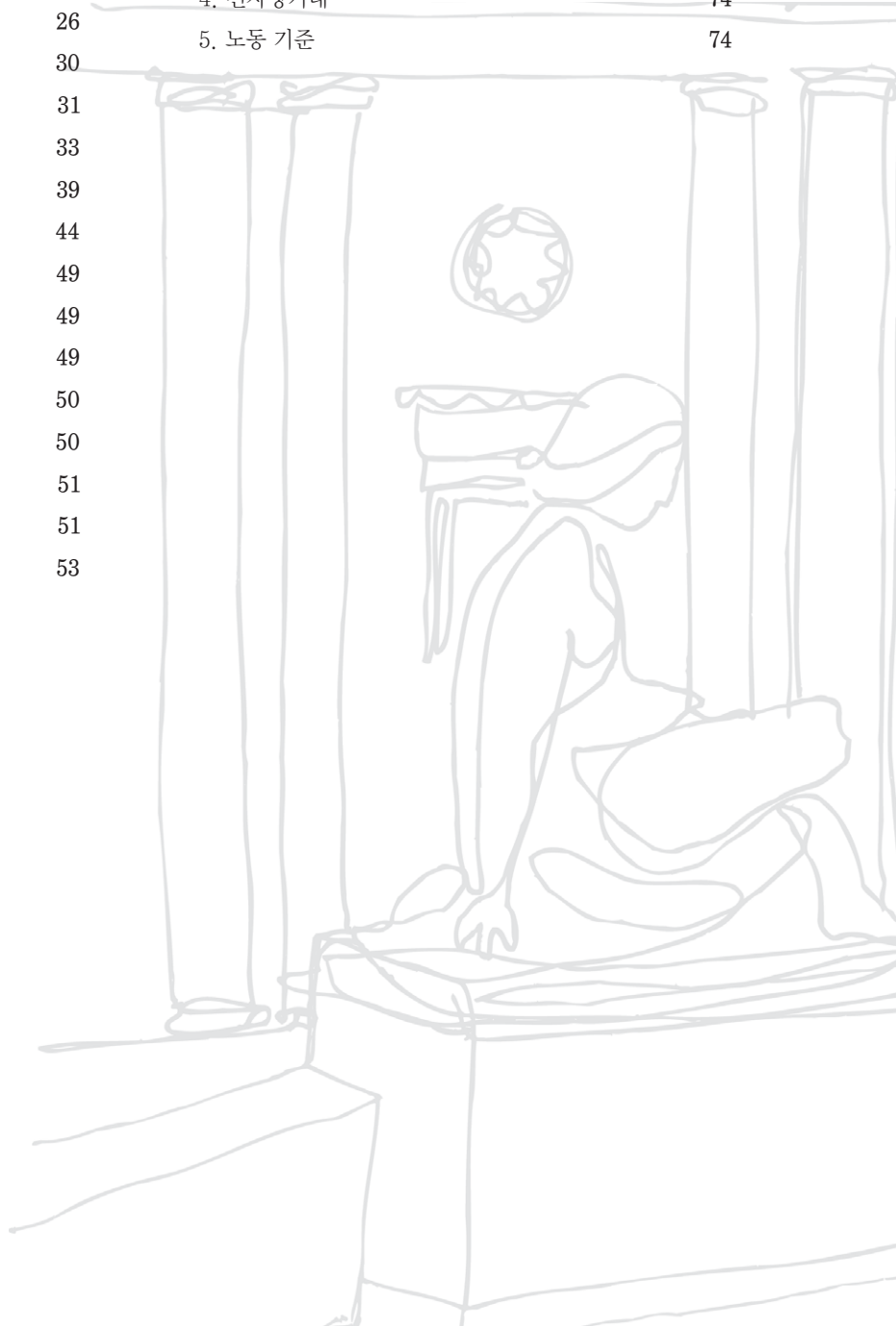
1. 개관 : 항해 가이드	23
2. 관세 : 양허의 확대와 관세감축	25
3. 농업 : 농민을 위한 더 공정한 시장으로	26
4. 표준과 안전	30
5. 섬유 : 다자체제로의 복귀	31
6. 서비스 : 성장과 투자를 위한 규범	33
7. 지적재산권 : 보호와 집행	39
8.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 우발상황 등	44
9. 비관세장벽 : 번거로운 행정절차들	49
수입허가 : 절차를 명확하게 유지	49
관세평가 규정	49
선적전 검사 :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50
원산지규정 :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50
투자조치 : 무역왜곡의 완화	51
10. 복수국간 협정 : 소수의 관심사안	51
11. 무역정책검토 : 투명성 확보	53

## 제 3 장 분쟁해결

1. 특별한 기여	55
2. 패널 절차	59
3. 분쟁사례 : 패널절차의 시간표	60

## 제 4 장 공통쟁점 및 신규의제

1. 지역주의 : 친구 또는 경쟁자?	63
2. 환경 : 특별한 관심	65
3. 투자, 경쟁, 정부조달 및 무역절차 간소화	72
4. 전자상거래	74
5. 노동 기준	74





## 제 5 장 도하 아젠다

이행 관련 이슈와 우려 사항(제12항)	77
농업(제13, 14항)	80
서비스(제15항)	81
비농산물 시장접근(제16항)	8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제17~19항)	82
무역과 투자와의 관계(제20~22항)	84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관계(제23~25항)	84
정부조달 투명성(제26항)	85
무역원활화(제27항)	85
WTO 규범 : 반덤핑 및 보조금(제28항)	86
WTO 규범 : 지역무역협정(제29항)	86
분쟁해결에 대한 양해(제30항)	87
무역과 환경(제31~33항)	87
전자상거래(제34항)	89
소규모 경제국(제35항)	89
무역, 채무 및 금융(제36항)	89
무역과 기술이전(제37항)	89
기술협력과 능력배양(제38~41항)	89
최빈개도국(제42, 43항)	90
개도국 우대(제44항)	91
2003년 칸쿤, 2005년 홍콩	91

## 제 6 장 개발도상국

1. 개관	93
2. 위원회	95
3. WTO 기술협력	96
4. 제기된 문제들	97

## 제 7 장 조 직

1. 누구의 WTO인가?	101
2. 회원자격, 연합 및 행정조직	105
3. WTO 사무국	108
4. 특별정책	109

## 부 록 우리나라와 WTO

1. WTO 가입과 그 영향	113
2. WTO 분쟁 사례	113
3.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	117
4. DDA 협상	117
5. WTO에 대한 재정적 기여	120
색인	121
현 WTO 회원	124









첫 단계는 대화다. 원칙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sup>1)</sup>는 회원국 정부들이 다른 회원국들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는 대화의 장이다.

WTO의 핵심은 다수의 무역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일련의 협정들이다.

하지만 WTO는 단순히 무역자유화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WTO 규범들이 무역장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질병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역주 1)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본서에서의 WTO는 세계무역기구를 의미한다.



협상 "테이블" : WTO 무역협상위원회(2002년 10월 3일 제네바 개최)





## 제1장 기초적인 사항들

WTO는 협상으로 탄생했다. WTO가 하는 모든 것은 협상의 결과이다

### 1.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WTO는 거의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국가들간의 무역규범을 다루는 곳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 WTO는 새일까, 아니면 비행기일까?

WTO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WTO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기구이며, 각국 정부가 무역과 관련된 협정들을 협상하는 장이기도 하다. 또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고 무역과 관련된 규범 체계를 이행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WTO가 전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 - 또는 야기 - 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 WTO는 슈퍼맨이 아니다!)

어쨌거나 WTO는 협상의 장이다... 원칙적으로 WTO는 회원국 정부들이 다른 회원국들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는 곳이다. 그러므로 첫 단계는 대화다. WTO는 협상으로 탄생했으며 WTO가 하는 모든 것은 협상의 결과이다. 현재 WTO 업무의 상당부분이 1986~94년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라는 협상과 그 이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협상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WTO는 지금도 2001년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새로운 협상을 주관하고 있다.

협상은 회원국들이 직면한 무역장벽을 낮추어 무역자유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WTO는 단순히 무역자유화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WTO 규범들이 무역장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질병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그런 경우이다.

WTO는 규범의 집합체이다... WTO의 핵심은 다수의 무역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일련의 협정들이다. 이 문서들은 국제상거래의 기본적인 법규범을 제공하며, 각국의 무역정책을 회원국간에 합의한 범위 내에 두기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의 집합이다. 각국 정부가 협상하고 서명했지만 그 목적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들, 수출입업자들의 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각자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아니면 테이블일까?

WTO에 대한 라디오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WTO가 이걸 해야 한다 또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등..

그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 결국 WTO는 테이블이다. 사람들이 둘러 앉아 협상하는 테이블이다. 테이블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 ‘다자’ 무역체제란...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이야기한다. 모든 주요 무역국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체제의 회원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아직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지구적” 또는 “전 세계적” 대신에 “다자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WTO와 관련해서는 “다자”라는 말이 지역적으로나 다른 소규모 그룹 국가들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들과 대별되어 쓰인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다자” 안보체제가 지역적인 것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국제관계분야에서의 용어 사용과는 차이가 있다.)

WTO 체제의 최대 목적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역이 최대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무역은 경제개발과 복지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 회사 및 정부가 무역규범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WTO 체제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준다... 분쟁해결은 세 번째로 중요한 WTO의 기능이다. 무역관계는 종종 이해의 대립을 야기한다. WTO 체제에서 아주 어렵게 협상된 것들을 포함해서 협정들이란 가끔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견을 가장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합의된 법적 근거에 기초한 중립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WTO 협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목적이다.

### 1995년에 탄생했으나 어리다고는 할 수 없다

WTO는 1995년 1월 1일 그 생애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실 WTO 무역체제의 나이는 50살이 더 많다. 1948년 이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이와 같은 무역체제에 규범을 제공해 온 것이다.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이 다자무역체제의 5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일반협정이 GATT(비공식명칭)라는 사실상의 비공식 국제기구를 탄생시키기까지는 그다지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GATT는 여러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진화해 왔다.

최대 규모였던 마지막 GATT 라운드는 우루과이라운드로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WTO가 출범하였다. GATT가 상품 무역을 주로 다루었다면 WTO 협정들은 이제 서비스나 무역의 대상이 되는 발명, 창조물 그리고 디자인(지적재산)까지 포괄해서 다루게 되었다.

##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원칙들

WTO 협정은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하는 법적인 문서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길고 복잡하다. 협정이 다루는 분야는 농업, 섬유, 금융, 통신, 정부조달, 산업표준 및 생물물 안전, 식품의 위생 규정, 지적재산권 등이다. 하지만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들이 이 모든 법적 문서들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이 원칙들이 다자무역체제의 기초인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 원칙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 차별 없는 무역

1. 최혜국(MFN : Most-favoured-nation) : 다른 사람들을 서로 공정하게 대우하기  
WTO 협정하에서는 어떤 국가가 무역상대국들간에 차별을 둘 수 없다. 누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면(예를 들어 그 상품에 대해 관세를 낮춰주는 조치)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이 원칙은 최혜국대우(MFN : most-favoured-nation)로 알려져 있다(박스 참조). 상품무역을 다루는 GATT 제1조가 바로 이 원칙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원칙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최혜국대우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제2조)이나 지적재산권(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제4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각 협정에서 이 원칙이 다소 다르게 취급되고 있기는 하다. 이 세 협정은 WTO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모두 포괄한다.

### 원칙

무역체제는...

- 차별이 없도록 - 국가는 무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즉, 무역상대국 모두에게 “최혜국”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자국의 상품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국민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즉,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 더 자유롭게 - 협상을 통해 장벽을 낮춘다.
- 예측 가능하도록 - 외국의 회사, 투자자 그리고 정부가 무역장벽(관세나 비관세장벽 포함)이 임의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세율이나 시장접근과 관련된 약속은 WTO에서 구속적으로 “양허되어” 있다.
- 경쟁을 더 도입하여 -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덤핑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
- 발전정도가 낮은 국가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 그들에게 더욱 긴 적응 기간, 신축성 그리고 특혜를 부여한다.



최혜국 대우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역외지역의 상품과 차별하여 역내지역의 상품에만 특혜를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 또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국의 시장에 특별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는 특정 국가로부터 상품이 불공정하게 거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상품에 대해 무역 장벽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차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WTO 협정은 이와 같은 예외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최혜국 대우(MFN)는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출 때마다 또는 시장을 개방할 때마다 빈국이든 부국이든 그리고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2. 내국민대우 :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은 최소한 외국상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후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서비스, 상표, 저작권 및 특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국민대우” 원칙(외국인 및 외국 상품을 자국민 및 자국 상품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도 세 개의 주요 WTO 협정들(GATT 제3조, GATS 제17조 및 TRIPS 제3조) 모두에서 발견된다. 물론 이 원칙도 협정들마다 다소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내국민대우는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이 국내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상품에 동등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국민대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자유로운 무역 : 점진적으로, 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은 무역을 장려하는 가장 명백한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한 무역장벽에는 관세나 수량을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쿼타 또는 수입금지와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행정규제나 환율정책이 논의되기도 한다.

1947~48년 GATT 창설 이래 여덟 차례의 다자간 협상이 개최되었다. 현재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하는 제9차 다자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초기의 다자간 협상은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 협상들의 결과로 선진국들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꾸준히 인하되어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평균 4% 이하로 낮춰졌다.

하지만 1980년대에 협상은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이나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시장개방이 이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구조 조정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WTO 협정은 회원국들이 “점진적 자유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에게는 보다 긴 의무이행기간이 주어진다.

**예측가능성 : 양허와 투명성을 통해**

경우에 따라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 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의 기회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전망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덕분에 투자가 장려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의 확대와 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경쟁의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다자무역체제는 기업환경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왜 “최혜”인가?**

이 개념은 다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특별한 대우를 연상시키는 것인데 WTO에서는 실제로 비차별, 즉, 모든 이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각 회원국들은 다른 모든 회원국들을 “최혜”국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한다. 어떤 국가가 다른 한 국가에게 특혜를 줄 경우, 이와 동일한 “최선의” 대우를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부여하여 모든 국가들이 “최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혜국(MFN : most-favoured nation)지위가 항상 동등한 대우를 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 양자간 최혜국 조약은 체결국들간에만 특혜를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마치 배타적 클럽과 같았다. 그러나 GATT와 WTO에서 이와 같은 최혜국 클럽은 더 이상 배타적이지 않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각 국가가 다른 140<sup>2)</sup>개 이상의 회원국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역주 2) 현재 회원국수는 151개국

###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증가된 양허율

1986~94년 협상 전후의 양허율

	전	후
선진국	78	99
개도국	21	73
체제전환국	73	98

(세번 기준 %이며 무역량 또는 무역액에 따른 가중치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WTO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을 열겠다고 약속할 때 회원국들은 그러한 약속을 구속적으로 “양허”한다. 상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양허가 관세율의 상한선이 된다. 때때로 어떤 나라들은 이와 같은 양허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부과되는 관세율과 양허세율이 대체로 동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나라가 자신의 양허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상대국들과 협상한 다음에만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 양허의 변경에 따른 무역 손실을 보상해주는 협상이 될 수도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다자 협상의 성과 중 하나는 양허 대상이 되는 무역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는 것이다(표 참조). 농업에서는 이제 100%의 품목의 관세가 양허되었다. 결과적으로 무역업자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안정성을 가져다주었다.

WTO 체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쿼타나 수입량에 제한을 두기 위해 활용하는 여타 조치들(쿼타 운용이 더 불공정한 관행이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각국의 무역정책이 가능한 한 최대한 명확하게 공개(“투명하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WTO 협정들이 각국 정부로 하여금 정책과 관행을 해당 국가 내에서 공개하거나 WTO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를 통한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 검토는 국내적으로나 다자적으로 투명성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 공정한 경쟁의 증진

WTO는 흔히 “자유 무역” 기구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용어가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WTO 체제 자체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보호 형태도 허용한다. 따라서 WTO 체제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유롭고, 공정하며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추구하는 규범체제의 집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라는 비차별 원칙에 대한 규범은 공정한 무역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다. 덤핑(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과 보조금에 대한 규범들도 그렇다. 이러한 이슈들은 복잡하다. 그리고 그 규범들은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 또 불공정한 무역에 의해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다른 많은 WTO 협정들은 농업,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과 같은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몇몇 WTO 회원국들만 서명했기 때문에 “복수국간” 협정이라고 한다)도 경쟁의 규범을 수천 개에 달하는 정부기관들의 구매행위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예도 있다.

### 개발 및 경제개혁의 장려

WTO 체제는 개발에 기여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은 WTO 체제의 각종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시간적으로 신속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WTO 협정들은 개도국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무역상의 양허를 허용하는 GATT의 이전 규정들을 내포하고 있다.

WTO 회원국의 3/4 이상이 개도국 또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sup>3)</sup>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진행되는 7년 반 기간 동안 이러한 국가들 중 60개국이 무역자유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행했다. 동시에 개도국과 체제전환국들은 이전의 무역협상 라운드 때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도하개발아젠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역주 3) Countries in transition to market economies,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국가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말미에 개도국들은 선진국에게 요구되던 의무의 대부분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협정은 개도국들에게, 특히 가장 가난한 “최빈국”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WTO 규정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료시 채택된 각료 결정에서 더 잘 사는 국가들이 최빈개도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 약속을 더 빨리 이행하고 이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최근 선진국들은 최빈개도국의 거의 모든 수출 상품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타 수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WTO와 그 회원국들은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현재도 하개발아젠다의 의제도 개도국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 3. 개방된 무역을 위한 변호

다자적으로 합의된 규범에 기초한 개방 무역체제가 이익을 가져온다는 경제학적인 논거는 아주 간단하며 상업적인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론 이를 뒷받침 할 경험적 사례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과 경제성장 과정이 그 예이다.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급격하게 떨어져 이제는 전체 선진국의 평균세율이 5% 이하가 되었다. 전쟁 직후 25년간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5%였는데 낮은 무역장벽이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세계무역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데 그 성장속도는 평균 8%에 이른다.

앞의 수치를 보면 자유로운 무역과 경제성장간에 통계학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경제학으로도 뒷받침 된다.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인적, 산업적, 자연적, 재정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 이를 사용하여 국내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경쟁할 수 있다. 경제학은 이와 같은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된다면 이로부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비교우위” 원칙은 자신들의 자산을 이용해 자신들이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고 이 상품을 다른 나라들이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로 거래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번영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막지 않는 자유무역정책은 경쟁을 강화하고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며 성공을 낳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시 최고의 디자인과 최적의 가격을 가진 최상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실제로 이익을 배가시킨다.

무역에서의 성공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특정 상품의 경쟁력도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더 싸고 좋은 상품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겨간다. 이런 과정에서 생산자들은 점진적이면서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적응하도록 기회가 주어진다. 그들은 새로운 상품에 집중할 수 있으며, 그들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틈새”를 발견하거나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경쟁력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 어떤 국가가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또는 충분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우위를 누렸다고 해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어떤 상품에는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방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자극으로 인해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 참인 동시에 자명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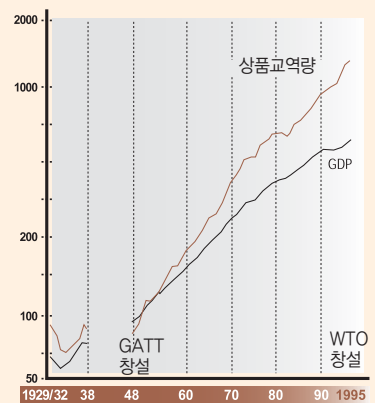
노벨상 수상자인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은 수학자 스타니스라브 울람(Stanislaw Ulam)으로부터 “사회과학에서 참이며 동시에 자명하지 않은 명제를 하나라도 들어보라”고 도전받은 적이 있다.

#### 사무엘슨의 답은? 비교우위.

“그것이 논리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수학자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자명하지 않다는 것은, 이 이론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거나, 설명을 들은 후에도 믿을 수 없었던 수천명의 중요한 지식인들이 증명한다.”

#### 세계무역과 생산은 계속 증가해 왔다.

1920년대 후반에는 무역과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1932년에 결국 바닥을 쳤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과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무역증가율이 거의 언제나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1950 = 100. 무역량과 GDP : 로그(log) 척도)





웹사이트  
www.wto.org > resources >  
WTO research and analysis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수입품을 막아보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더 부유한 정부들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보조금, 복잡한 행정절차 그리고 환경보존이나 소비자보호 등 합법적인 정책 목표 뒤에 숨어 이를 자국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이용하려는 사이렌 요정의 노래와 같은 보호주의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보호는 궁극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과도하게 비대한 생산자를 낳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형편없는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보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도 잃어버리게 된다. 다른 정부도 같은 정책을 추구하면 시장은 위축되고 세계경제활동은 감소할 것이다. WTO 협상에 있어서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자기 패배적이며 파괴적인 보호주의로의 표류를 막는 것이다.

### 비교우위

비교우위는 가장 중요한 경제학적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보다 자동차를 잘 만들고, B국은 A국보다 빵을 더 잘 만든다면 양국이 서로 특화하여, A국은 자동차를 만들고 B국은 빵을 만든 후 무역을 통해 교환한다면 양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학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자명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절대우위론이다.

하지만 어떤 국가가 잘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떨까? 무역이 모든 생산자들을 파산시킬 것인가? 리카르도(Ricardo)에 따르면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교우위론의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교우위론은 A국이 모든 부분에서 B국에 대해 우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A국과 B국이 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A국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고 빵을 만드는 것에는 다소 낮은 수준의 우위

를 갖고 있다면 A국은 그래도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즉,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모든 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B국에 수출해야 한다. B국도 A국보다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즉, 빵을 만들어 A국에 수출해야 한다. 이로써 양국은 무역의 이익을 공히 향유할 수 있다. 무역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일 잘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바로 비교우위 이론이다.

이 이론은 고전주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르도(David Ricardo)로부터 기원했으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이론의 하나다. 또한 절대우위론과 혼동될 가능성이 많아 비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가끔 일부 국가들은 어떤 상품에도 비교우위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러기는 불가능하다.

왜 그런지 잘 생각해볼길 바란다.

#### 4. GATT 연혁 : 아바나(Havana)에서 마라케쉬(Marrakesh)까지

1995년 1월 1일 WTO의 창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무역체제 최대의 개혁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1948년 실패를 경험한 국제무역기구(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창설을 현실로 옮긴 사건이기도 하다.

GATT 47년간 역사의 대부분은 제네바에서 쓰였다. 하지만 대륙을 넘나드는 여행의 기록도 갖고 있다. 1948년 쿠바 아바나에서의 어정쩡한 출발에서부터 프랑스 앙시, 영국 토르케이, 일본 도쿄, 우루과이 폰타 텔 에스테, 캐나다 몬트리올, 벨기에 브뤼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4년 모로코 마라케쉬에 이르기까지 긴 여행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무역체제는 국제무역기구의 창립실패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살아남은 GATT의 영향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 GATT는 일련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더욱 자유화되고 강력하면서도 성공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설립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1980년에 이르러 그런 체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했다. 그 결과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했으며 결국에는 WTO를 탄생시켰다.

#### GATT : 거의 50년간 '임시'

1948년에서 1994년에 이르기까지 GATT는 세계무역 상당부분에 규범을 제공해 왔으며 국제 상업거래에 있어서 최고의 성장률을 경험한 기간 동안 활동해왔다. 이렇게 GATT는 겉으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듯하나 사실 47년간 단지 임시적인 협정과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원래 의도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양대 경제기구인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합세하여 통상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제3의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50개가 넘는 국가들이 UN의 전문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설립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했다. ITO 헌장 초안은 야심찬 것이었다. 단순한 세계무역의 원칙을 넘어 고용, 1차산업협정, 제한적 기업관행, 국제투자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규범을 담고 있었다. 1947년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된 유엔 무역 및 고용회의(UN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는 ITO를 창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무역자유화를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하고 1930년대 초 이래 남아 있던 보호주의적 잔재를 시정하고자 열다섯 나라가 1945년 12월 관세를 감축하고 양허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상이 제1차 다자간 무역협상이었으며, 이는 일련의 무역규범과 전 세계무역의 1/5에 해당하는 10억 달러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45,000개의 관세양허를 도출하였다. 이 그룹이 1947년 10월 30일 협상결과 서명 시에는 23개국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도출된 관세양허는 1948년 “임시적용의정서”를 통해 발효되었다. 그리고 이 23개 설립회원국(공식적으로는 “체약국”)이 참여한 가운데 GATT가 탄생하게 되었다.

사실 이들 23개국은 ITO 헌장을 협상하던 보다 큰 그룹의 일원이었다. GATT 협정상의 어떤 조항은 초안상의 일부 무역규범이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협상을 통해 확보한 관세양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용이 “임시로나마”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또한 GATT와 ITO 헌장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고, 또한 ITO가 창설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했는데 결국 그들의 예상이 들어맞았다.

#### 무역체제의 수장들

##### GATT와 WTO의 사무총장

- Eric Wyndham White 경(영국) 1948~68
- Olivier Long(스위스) 1968~80
- Arthur Dunkel(스위스) 1980~93
- Peter Sutherland(아일랜드)  
GATT 1993~94, WTO 1995
- Renato Ruggiero(이탈리아) 1995~1999
- Mike Moore(뉴질랜드) 1999~2002
- Supachai Panitchpakdi(태국) 2002~2005
- Pascal Lamy(프랑스) 2005~



아바나 회의는 GATT가 서명된 지 한 달이 채 안된 1947년 11월 21일 시작되었다. ITO 헌장은 1948년 3월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지만 일부 국가의 입법기관에서 비준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국 정부가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가장 심각한 저항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1950년 미국 정부는 아바나 헌장의 의회 비준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결국 ITO는 실질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GATT가 1948년부터 WTO가 창설된 1995년에 이르기까지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체제가 된 것이다.

반세기동안 GATT의 기초적인 법 원칙들은 1948년에 비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1960년대에 개발과 관련된 절이 새로 추가되었고 1970년대에는 “복수국간”(즉, 일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협정이 추가되었으며 관세를 더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 대부분은 “무역 라운드”라고 알려진 일련의 다자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국제무역자유화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들은 모두 GATT의 주관하에 진행된 이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들의 결과이다.

GATT 초기에 다자간 무역협상은 관세를 인하하는데 집중되었다. 이후 60년대 중반 케네디 라운드는 GATT의 반덤핑협정과 개발에 대한 별도의 절을 탄생시켰다. 70년대의 도쿄라운드는 관세의 형태를 지니지 않은 무역 장벽을 다루고, 다자무역체제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최초의 의미 있는 시도였다. 1986년~94년간 개최된 제8차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로서는 마지막이자 가장 포괄적인 협상이었으며, WTO를 창설하고 일련의 새로운 협정들을 수립하였다.

#### GATT 협상 라운드

연 도	장소 / 명칭	협 상 주 제	참여국수
1947	제네바	관세	23
1949	양시	관세	13
1951	토르케이	관세	38
1956	제네바	관세	26
1960~1961	제네바(딜론라운드)	관세	26
1964~1967	제네바(케네디라운드)	관세 및 반덤핑조치	62
1973~1979	제네바(도쿄라운드)	관세, 비관세조치, “골격”협정들	102
1986~1994	제네바(우루과이라운드)	관세, 비관세조치, 규범,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섬유, 농업, WTO 창설 등	123

#### 도쿄라운드의 “규약”들

- 보조금 및 상계조치 - GATT의 제6조, 16조 및 23조 해석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때로는 표준규약이라고도 명명
- 수입허가절차
- 정부조달
- 관세평가 - 제7조 해석
- 반덤핑 - 제6조 해석, 케네디라운드 규약을 대체
- 우육협정
- 국제낙농협정
- 민간항공기교역

#### 도쿄라운드 : 체제를 개혁하려는 첫 번째 시도

도쿄라운드는 1973년~79년간 10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관세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려는 GATT의 노력을 계속 이어갔다. 그 결과 9개 주요 선진국의 관세를 평균 1/3 정도 감축함으로써 공산품의 평균관세를 4.7%로 인하하였다. 8년 동안 이행되는 관세감축은 높은 관세를 더욱 감축하는 “조화(harmonization)”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다른 쟁점에 있어서 도쿄라운드의 결과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농업무역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실패하였으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대한 협정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에도 실패하였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일련의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어떤 것은 GATT 기존 규범을 해석한 것도 있고, 다른 것들은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비교적 적은 수의 GATT 회원국만(대부분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협정 또는 약정에 서명하였다. GATT 전체 회원국에 의해 수용된 것이 아니어서, 비공식적으로는 흔히 “규약(Codes)”이라고 부른다.



이 규약들은 다자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시작 자체로서 의미가 있었다. 몇몇 규약들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수정되었고 모든 WTO 회원국들이 수락하여 다자적인 약속으로 전환되었다. 그 중 네 개만 “복수적”인 것으로 남았는데 그것들은 정부조달, 우육협정, 민간항공기 및 낙농협정이다. 1997년 WTO 회원국들이 우육협정과 낙농협정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여 결국 두 협정만 남아있다.

### GATT는 성공적이었는가?

GATT는 제한된 영역의 조치만 지닌 임시적인 존재였으나 지난 47년간 세계무역 대부분을 관장하면서 자유화를 증진하고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던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관세의 지속적인 감축만 하더라도 세계무역이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연평균 8%라는 최고의 증가율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GATT 시절 동안 무역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상회하도록 기여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서로 무역을 하고 무역의 이익을 향유하는 각국의 능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우루과이라운드 기간 동안 새로운 회원국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은 다자무역체제가 개발의 주춧돌이자 경제 및 무역의 혁신을 위한 도구였다는 것으로서 인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1970년대 도교라운드는 이와 같은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으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이것이 어려운 시절의 도래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GATT의 관세감축을 통해 관세수준이 낮아진 상황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경기후퇴가 발생하자 각국 정부들은 한층 치열해진 외국과의 경쟁에 직면한 분야에 대해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 정책을 고안해 냈다. 높은 실업률과 계속되는 공장폐쇄는 서유럽 및 북미 지역의 정부들로 하여금 경쟁자들과 양자간 시장분할협정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였고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GATT의 신뢰성과 효과를 크게 훼손하였다.

무역정책 환경이 어려워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1980년대 초 GATT는 1940년대와는 다른 세계무역 현실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았다. 우선 세계무역은 1940년대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해졌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GATT 규범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비스 무역이 더욱더 많은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국제 투자도 확대되었다. 또한 서비스 무역의 확장은 세계 상품무역의 추가적인 증가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다. 여타 측면에서도 GATT는 개선이 요구되었다. 예를 들면 농업에서 다자체제의 허점이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었으며, 농업무역을 자유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섬유와 의류 분야에서도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GATT의 정상적인 원칙에 대한 예외가 협상되어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re Arrangement)이 탄생했다. GATT의 제도적 구조나 분쟁해결제도도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 요인들이 GATT 회원국들로 하여금 다자체제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마라케쉬 선언으로 이어졌고 WTO의 창설에 이르게 되었다.

### 다자간 무역협상 : 패키지 방식을 통한 진전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들은 종종 길어지기도 한다. 우루과이라운드의 경우 7년 반이 걸렸다. 하지만 다자간 무역협상은 장점도 있는데, 개별 쟁점에 대해 별도의 협상을 하는 경우 보다 패키지 방식을 통해 더 유용한 결과를 낳는다.

- 패키지 규모가 클수록 참가국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익을 추구하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할 수 있다.

- 주고받기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기 더 쉬울 수 있다. 패키지 안 어떤가에는 참가국 각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함의(含意)뿐만 아니라 정치적 함의도 있다. 어떤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양허를 하고 싶어도 정치적으로 그와 같은 양허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패키지 내의 다른 분야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력력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보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무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개혁이 포괄적인 패키지의 일부로서 가능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농업무역 분야에 대한 개혁이 바로 좋은 예이다.

- 개도국들과 다른 약소국들은 주요 무역국들과의 양자관계에서보다 다자체제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 라운드의 크기는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 때때로 한 분야로 협상을 집중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하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 점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 어떤 단계에서 우루과이라운드는 모든 참가자들이 모든 주제에 대해 합의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질 만큼 버거워 보였다. 하지만 1993~94년 전체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료한 반면, 그 이후 해운분야라는 특정 한 분야에 대한 협상은 2년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이것이 무역협상 라운드만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1997년에 기본통신, 정보기술장비 및 금융서비스 분야와 같은 독립 협상 방식도 성공적인 타결을 보았다.

논쟁은 계속된다. 답이 무엇이든 간에 이유는 간단하지 않다. 아마도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해당되는 특정한 시점과 여건에 맞는 형태의 협상방식을 채택하는데 달려 있을 것이다.

## 1986년의 협상 의제

### 우루과이라운드의 원래 15개 의제

관세  
비관세장벽  
천연자원  
섬유 및 의류  
농업  
열대산물  
GATT 조항  
도쿄라운드 규약  
반덤핑  
보조금  
지적재산권  
투자조치  
분쟁해결  
GATT 체제  
서비스

### 우루과이라운드 - 주요일자

1986년 9월 폰타 델 에스테 : 출범  
1988년 12월 몬트리올 : 중간평가  
1989년 4월 제네바 : 중간평가 종료  
1990년 12월 브뤼셀 : "협상 종결을 위한" 각료회의가 난관에 직면  
1991년 12월 제네바 : 최종결과물 1차 초안 마련  
1992년 11월 워싱턴 : 미국과 EC가 농업에서 "블레어하우스" 합의 도출  
1993년 7월 도쿄 : 쿼드<sup>4)</sup>가 G7 정상회의에서 시장접근에 대한 핵심 합의 도출  
1993년 12월 제네바 : 일부 시장접근협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상 종료  
1994년 4월 마라케쉬 : 협정문 서명  
1995년 1월 제네바 : WTO 창설, 협정 발효

## 5.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는 당초 예정보다 두 배나 긴 7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123 개국이 참여했으며 칫솔에서 유람선에 이르기까지, 금융에서 통신에 이르기까지, 야생 쌀의 유전자에서 에이즈 치료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무역의 대상을 포괄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최대의 무역협상이었으며 아마도 인류역사상 최대의 협상이었을 것이다.

때로는 실패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창설된 이래 세계무역체제에 최대의 개혁을 낳았다. 물론 진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으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본 것도 있었다. 시작한지 2년도 안 되어서 참가자들은 주로 개도국이 수출하고 있는 열대산물에 대한 관세감축 방안에 합의하였다. 수정된 분쟁해결 규범 중 일부도 즉각 이행되었다. 세계 무역체제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규 보고서 제출 요구도 그러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 모든 협상 라운드를 종료할 협상 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의 씨앗은 1982년 11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회원국 각료회의에서 뿌려졌다. 당시 각료들은 의미 있는 새 협상을 개시하려고 했으나 농업 때문에 회의는 난관에 부딪혔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패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이때 각료들이 합의한 작업 계획이 나중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의제의 기초가 되었다.

각료들이 새로운 라운드 개시를 위해 다양한 쟁점들의 여러 측면을 짚어보고, 명확하게 하며, 컨센서스(consensus)를 구축하는 과정에 추가로 4년이 더 소요되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폰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결국 회원국들은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정책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포괄하는 협상 의제에 합의하였다. 협상은 다자무역체제를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농업 및 섬유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한 무역체제를 개혁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모든 GATT 원 조 문들이 검토의 대상이었다. 이것은 유사 이래 최대의 협상목표였으며, 각료들은 협상기간으로 4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였다.

2년 뒤인 1988년 12월 각료들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회합을 갖고 협상의 중간 평가를 갖기로 하였다. 목적은 남아 있는 2년여의 기간 동안 다루어야 할 의제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으나 협상은 그 직후 정체에 빠져들었고 제네바에서 다음해 4월 회원국들이 다시 모임을 가질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 회의에서 각료들은 조기 합의 대상인 개도국들을 돕기 위한 열대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일부 확대안, 분쟁해결절차 개선안 그리고 GATT 회원국들의 관행과 국가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이고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검토를 가능케 할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에 대해 합의하였다. 원래 협상 라운드는 1990년 12월 브뤼셀에서 각료들이 다시 모여서 결정함으로써 종료되게 되어 있었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는 가장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된다.

역주 4) QUAD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정치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기술적 협의가 계속되었으며 최종적인 법적 협정문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최종 문안”의 초안은 당시 GATT 사무총장이던 아서 던켈(Arthur Dunkel)에 의해 취합된 것으로서 던켈은 협상회의를 실무적으로 주재했다. 1991년 12월 이 문서는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Punta del Este 선언의 거의 모든 면을 충족시켰다. 그 예외란 관세를 감축하거나 양허하고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포함하는 각국의 이행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이다. 어쨌거나 이 초안은 최종 합의안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 2년간 협상은 곧 실패할 것 같다가도 다른 한순간 타결될 것 같기도 하는 등 극단적인 전망 사이를 오락가락 했다. 몇 차례의 종결시한을 놓쳤고, 서비스, 시장접근, 반덤핑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창설 등 농업 외에 새로운 쟁점이 중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이견이 최종적인 타결을 위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92년 11월 미국과 유럽연합은 농업에서 자신들의 이견을 대략 정리했는데, 이를 비공식적으로 “블레이어하우스 합의”라고 한다. 1993년 7월 “쿼드(Quad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및 캐나다)”는 관세와 관련된 주제(“시장접근”)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발표했다. 1993년 12월 15일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위한 협상이 종료되고, 모든 쟁점들이 해결되었다(물론 일부 시장접근 잔여 문제들에 대한 협상은 몇 주 후에 마무리되었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123개국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 최종안이 서명되었다.

협상타결이 늦춰지긴 했지만 그로 인해 좋은 점도 있었다.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1990년에 가능했을 수준 이상의 진전이 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부 이슈들이나 WTO 창설이 그런 이슈이다. 하지만 임무가 워낙 막중했으므로 오래된 협상으로 인한 피로감이 전 세계 통상관료들 모두에게서 느껴졌다. 거의 모든 통상 현안들에 대한 총체적인 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거대한 협상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에는 많은 이슈들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의 시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6년경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세기 초에 새로운 협상 라운드가 있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달랐다. 하지만 마라케쉬 합의는 이미 농업과 서비스에 대한 협상을 세기 전환기에 다시 시작할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협상은 2000년 초에 시작되었으며 2001년 후반 도하개발아젠다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 GATT는 어떻게 된 것인가?

WTO가 국제기구로서 GATT를 대체했지만 GATT 협정은 아직도 WTO의 상품분야 기본조약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통상변호사들은 GATT의 최종수정본인 GATT 1994와 GATT 1994의 핵심인 GATT 1947을 아직도 구분하고 있다. 혼동되지만 대부분 그냥 “GATT”라고 통틀어 지칭하면 충분하다.

## 우루과이라운드 기설정 의제

많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미래 작업을 위한 시한을 설정하고 있다.



이 “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 중 일부는 즉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일부 분야에서는 전혀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특정 시점의 상황에 대한 평가나 검토만을 포함한 것도 있다. 기본통신협상이나 금융서비스와 같은 일부 협상은 빨리 종결되었다. (회원국 정부들은 기설정 의제가 아니었던 정보기술상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유화안에 대한 합의를 재빨리 도출하기도 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해 설정된 의제들은 나중에 추가 또는 수정되었는데, 그중 많은 수가 최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수정되어 도하 아젠다 협상의 일부가 되었다.

기설정 의제로는 약 30여 개가 있는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1996년

- 해운서비스 : 시장접근협상 종료 목표(당초 종결 시한은 1996년 6월 30일이었는데, 2000년에 논의가 일시 중지되었다가 도하개발아젠다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 서비스와 환경 : (1996년 각료회의까지) 작업반 보고서 제출
- 서비스 정부조달 : 협상 개시

### 1997년

- 기본통신 : 협상 종료(2월 15일)
- 금융서비스 : 협상 종료(12월 30일)
- 지적재산권 중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에 대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 : 협상 개시 후 도하개발아젠다의 일부로 포함

#### 1998년

- 섬유 및 의류 : 새로운 단계가 1월 1일 시작
- 서비스(긴급 세이프가드) : 긴급 세이프가드에 대한 협상 결과 발효(당초 1998년 1월 1일 이나, 2004년 3월로 연기되었으며 아직도 협상중)
- 원산지규정 협상 : 통일원산지 작업계획 종료(1998년 7월 20일)
- 정부조달 : 규범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협상 개시(1998년 말까지)
- 분쟁해결 : 규범 및 절차에 대한 총체적 검토(1998년 말까지)

#### 1999년

- 지적재산권 : 특허성에 대한 예외와 식물 다양성 보호 검토 시작

#### 2000년

- 농업 : 협상 시작, 현재는 도하개발아젠다의 일부로 편입
- 서비스 : 협상 시작, 현재는 도하개발아젠다의 일부로 편입
- 관세양허 : GATT 제28조의 양허변경협상에서 협상권을 가진 “주공급자”의 정의 검토
- 지적재산권 : 협정 이행의 최초 2년 이행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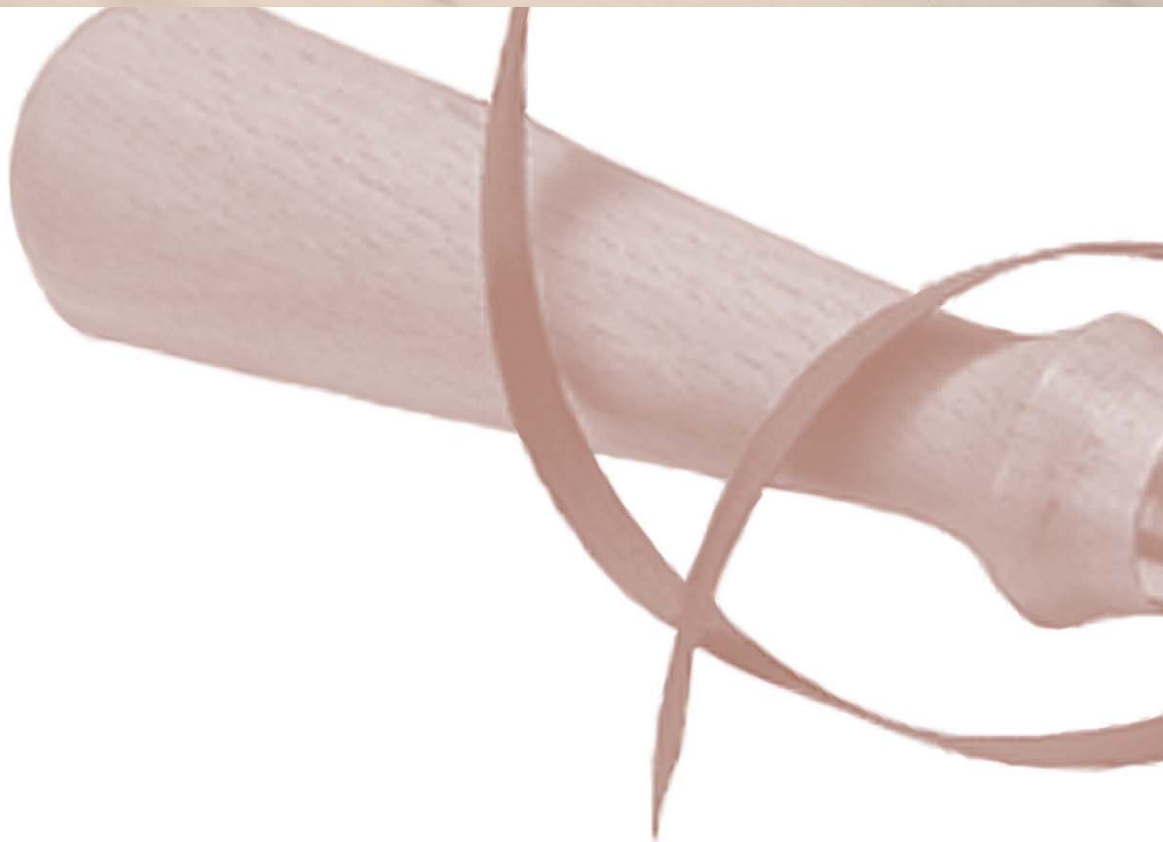
#### 2002년

- 섬유 및 의류 : 1월 1일 새로운 단계 시작

#### 2005년

- 섬유 및 의류 : GATT 체제로의 완전한 편입 및 섬유의류협정 1월 1일 종료







WTO는 ‘규범을 바탕으로 한다.’ WTO의 규범은 협상을 통해 얻어진 협정들이다

### 1. 개관 : 향해 가이드

WTO 협정은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을 모두 포괄한다. WTO 협정은 자유화를 위한 원칙들과 예외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인하 약속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화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도 포함하고 있다. 분쟁 해결절차 및 개도국 우대도 규정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조치를 WTO에 통보하고, 사무국이 각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각국이 무역정책을 투명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협정들을 흔히 WTO의 무역규범이라고 부르며 그래서 WTO는 “규범을 바탕으로 한”, 규범에 기초한 체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범이란 것이 사실은 각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낸 협정들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은 현재 WTO 체제의 기초가 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WTO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 추가 작업들은 각료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의 결과이며, 특히 새로운 협상과 여타 작업들이 시작된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의 결과이다. (도하 아젠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언급)

#### 핵심 6개 분야의 윤곽

“우루과이라운드 다자 무역협상의 결과 : 법적 문서”의 목차는 60여 개의 협정과 부속서, 결정 및 양해를 담은 방대한 목록이다. 사실 이 협정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주요 분야로 나뉜다. 총괄협정(WTO 설립협정), WTO가 다루는 3개 무역분야에 대한 협정(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정책검토가 그것이다.

상품과 서비스라는 양대 분야에 대한 협정들은 세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 기본원칙에서 시작한다 : GATT(상품분야)와 GATS(서비스분야)(그리고 현재 추가적인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세 번째 분야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도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분야나 쟁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추가 협정 및 부속서가 따라 붙는다.
- 마지막으로 각국이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길고 상세한 양허표가 첨부된다. GATT의 경우, 양허표는 일반적으로 상품 관세에 대한 구속적 약속의 형태를 취하며, 농산물의 경우 관세와 쿼타가 혼합된 형태를 취한다. GATS의 경우, 양허표는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분야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를 표시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이 비차별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서비스 형태들의 목록도 포함하고 있다.

#### ‘추가 상세분야’

이러한 협정들 및 부속서는 아래 분야 또는 쟁점에 대한 것이다.

##### 상품 (GATT하의 협정들)

- 농업
- 농산물에 대한 위생 관련 규정(SPS)
- 섬유 및 의류
- 제품 표준(TBT)
- 투자조치
- 반덤핑조치
- 관세평가 방법
- 선적전 검사
- 원산지규정
- 수입 허가
- 보조금 및 상계조치
- 세이프가드

##### 서비스(GATS 부속서)

- 자연인의 이동
- 항공운송
- 금융서비스
- 해운
- 통신

이러한 협정들을 실질적으로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협정과 양허표에 기초한 분쟁해결절차와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메커니즘인 무역정책검토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대부분이 앞의 두 부분, 즉, 일반원칙 및 특정 분야의 원칙을 다루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시장접근협상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농업과 서비스와 같은 분야의 경우, 원칙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된 다음, 양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다.

### 추가적 협정들

아래 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협정들도 중요한데, 민간항공기 협정 및 정부조달 협정 등과 같이 모든 회원국들이 서명한 것이 아닌 “복수국간” 협정이 여기에 속한다.

### 앞으로 예정된 추가적인 변화 : 도하 아젠다

이 협정들은 결코 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협정들은 이따금씩 다시 협상되며, 새로운 협정이 패키지에 추가되기도 한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통상각료들에 의해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하에서 많은 것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개요			
WTO 협정의 기본구조 : 다음 여섯 개 주요분야의 상관관계 - 총괄 WTO 협정,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 및 무역정책검토			
총괄	WTO 설립협정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기본원칙	GATT	GATS	TRIPS
추가사항	다른 상품 관련 협정 및 부속서	서비스 부속서	
시장접근 약속	양허표	양허표(MFN 면제포함)	
분쟁해결	분쟁해결		
투명성	무역정책검토		

## 2. 관세 : 양허의 확대와 관세감축

우루과이라운드 최대의 결과물은 22,500 페이지 분량의 국가별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양허표이다. 이 양허표에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감축 및 “양허”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 일부 경우에는 관세가 0%로 감축되고 있다. 또한 “양허”된 세율을 가진 - WTO에서 약속되어 그 이상으로 관세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세율 - 품목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goods schedules  
www.wto.org > trade topics > services > services schedules

### 관세감축

선진국들의 관세감축은 대부분의 경우 1995년 1월 1일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되었다. 그 결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평균 6.3%에서 3.8%로, 40% 감축되었다. 또한 선진국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는 공산품의 수입액 규모는 20%에서 44%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고관세품목의 숫자도 감소할 것이다. 선진국 수입품 중 15% 이상의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의 비중은 7%에서 5%로 감소될 것이다.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의 수출품 가운데 15% 이상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의 비중은 9%에서 5%로 줄어들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패키지는 계속 개선되어 왔다. 1997년 3월 26일 전 세계 정보기술제품 교역의 92%를 차지하는 40개국(일부의 경우 2005년까지) 정보기술제품의 수입관세 및 기타 부과금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른 관세 관련 약속과 마찬가지로, 각 참여국은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은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의 수출품에 대해 동등하게 (즉, 최혜국원칙에 따라) 이러한 약속을 적용하고 있다.



### 이 협정의 이름은?

관세감축의 목표를 설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은 없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관세를 몇 퍼센트나 감축해야 하는지 등)

그 대신, 개별 회원국들은 1994년도 GATT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의 부속 양허표에 자국의 약속을 수록하였다. 이것은 감축후 관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다. 이후, 1997년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따라 추가적인 약속이 이루어졌다.

### 양허의 확대

선진국들은 “양허”된(약속되고, 그 이상으로 관세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품의 수를 전체 세번(product line)의 78%에서 99%로 확대했다. 개도국들의 경우, 이러한 수준은 21%에서 73%로 대폭 확대되었다. 체제 전환국들은 양허 수준을 73%에서 98%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역업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시장 안정성을 제공한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market access



>도하 아젠다 협상 참조

### 양허관세

시장접근 양허표는 관세율을 단순히 공지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양허표 상에 제시된 세율, 즉, “양허”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우, 양허관세는 일반적으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실제로 적용하는 세율보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관세를 양허하므로, 양허세율은 곧 상한의 역할을 한다.

회원국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즉, 양허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 이렇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양허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협상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무역상대국에게 교역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그리고 농업 ..

지금은 모든 농산물의 관세에 대해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쿠파타 등과 같이, 관세의 형태를 띠지 않는 대부분의 수입제한 조치는, “관세화(tariffication)”를 통해 관세로 전환되어 왔다. 이로 인해 농산물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전에는 농업 생산품의 30% 이상이 쿠파타나 다른 수입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았다. 관세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수입제한 조치를 동일한 보호수준을 가진 관세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1995년부터 2000년까지(개도국의 경우 2005년<sup>5)</sup>까지의 6년 동안, 이 관세들을 점진적으로 감축하였다. 농업부문에 대한 시장접근 약속에는 또한, 특정 제품에 대한 과거 수입금지조치의 철폐와 각국 농업 생산품에 대한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금 감축 등도 담겨 있다. (아래 농업 관련 부분 참조)

> 제5장 도하 아젠다 참조

## 3. 농업 : 농민을 위한 더 공정한 시장으로

원래 GATT 규범은 농업에도 적용되었으나 허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GATT는 쿠파타와 같은 비관세 조치의 사용과 보조금 지급을 허용했다. 농업무역은, 특히 공산품의 경우 허용되지 않았을 수출보조금의 사용으로, 더욱 왜곡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농업 분야에 관한 최초의 다자 협정이 마련되었다. 이는 질서와 공정경쟁 그리고 농업 분야의 왜곡 감소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이 협정은 1995년부터 6년에 걸쳐 이행되었다. (개도국의 경우, 10년에 걸쳐 이행키로 하였으며 아직도 이행중에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향후 새로운 협상을 통해 개혁을 지속하도록 하는 약속을 포함했다. 이 협상은 농업 협정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2000년에 개시되었다.

> 도하 아젠다 협상 참조

### '왜곡'이란 무엇인가?

왜곡은 핵심적인 쟁점이다. 정상보다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경우, 또한 생산, 구입 및 판매되는 양이 정상보다 더 많거나 적은 경우, 즉, 경쟁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수준과 다른 경우 왜곡되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수입 장벽과 국내 보조금이 어떤 한 나라의 국내시장에서 곡물 가격을 비싸게 만들 수 있다. 높은 가격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 잉여 생산물이 가격이 낮은 국제시장에서 팔려야 한다면, 수출보조금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들은 정상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농업 무역이 왜곡되더라도 농민을 보호하고 보조해주는 이유로 각국 정부는 대개 다음 세 가지를 든다.

- 국내 수요를 충족할 충분한 양의 식량 생산 확보
- 기상조건 및 국제가격의 변동으로부터 농민 보호
- 농촌 사회 보존

하지만 이런 정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수출 보조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급과잉을 촉발한다. 보조금 지급 여력이 작은 국가들은 이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 협상에서의 주요 논쟁거리는 무역을 왜곡하지 않고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역주 5) 이 책자 영문판에는 '2005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대한 검토시 '200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농업협정 : 새로운 규범과 약속

농업협정의 목적은 농업분야의 무역을 개혁하고 정책을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는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에게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다.

새로운 규범 및 약속은 아래 사항에 적용된다.

- 시장접근 - 수입을 저해하는 다양한 무역규제
- 국내보조 - 보조금과 산지가격 지지 및 농가소득 보전 등 여타 프로그램
- 수출보조금 및 인위적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타 방법

이 협정은 정부가 덜 무역 왜곡적인 정책을 통해 농촌경제를 지원하는 것은 허용한다. 또한 이행방법에 있어서도 일부 유연성을 허용한다. 개도국은 보조금이나 관세를 선진국만큼 감축하지 않아도 되며, 이행기간도 더 길게 주어진다. 최빈개도국의 경우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면제된다. 순식량수입개도국의 이해나 최빈개도국의 관심을 반영한 특별규정도 있다.

협정 내의 “평화” 조항은 2003년 말까지 9년의 기간 동안 농업보조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삽입되었다.



**이 협정의 이름은? 대부분의 조항들 : 농업협정**

관세, 관세할당, 국내보조, 수출보조금에 대한 약속 : 1994년도 GATT에 대한 마라 케쉬의정서의 부속 양허표

또한 : 최빈개도국과 순식량수입개도국에 대한 개혁 프로그램의 부정적 효과 관련 조치에 대한 각료 결정 (또한 “개혁프로그램하의 특정 구속 약속 수립을 위한 세부원칙”, MTN.GNG/MA/W/24 참조)

### 시장접근 : ‘관세만을 통한’ 제한

농산물의 시장접근에 대한 새로운 규범은 “관세를 통한 제한만” 허용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는 일부 농산물 수입이 쿼타나 여타 비관세 조치를 통해 규제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비슷한 보호 효과를 가진 관세로 대체되어 왔다. 즉, 이전의 정책으로 인해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75% 정도 높았다면 새로운 관세도 약 75%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쿼타나 다른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관세화(tariffication)”라 한다.)

관세화 정책에는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이 정책은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의 수입량이 계속해서 수입되도록 보장하고, 일부 새로 수입되는 분량에는 금지적이지 않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것은 “관세할당(tariff-quotas)” 제도 - 쿼타 내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쿼타 밖 수입량에 대해서는 (때로는 매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 - 를 통해 달성된다.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새 양허관세와 관세할당은 1995년에 발효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참가국들은 선진국의 경우 6년의 이행기간 동안 평균 36%의 관세(관세할당의 경우 쿼타 밖 관세)를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도록 합의했다. 개도국들은 10년의 이행기간 동안 관세를 24% 감축하도록 했다. 일부 개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 GATT나 WTO에서 양허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한도양허율(ceiling tariff rates)을 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이용했다. 최빈개도국은 관세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러한 수치들이 농업 협정에는 실제로 나타나 있지 않다. 협상 참가국들은 양허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수치들을 이용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양허표상의 약속들이다.)

농업의 수치적 목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농업보조금과 보호의 감축 이 협정에는 수출보조금 감축 수치만 언급됨		
	선진국	개도국
	6년 : 1995~2000	10년 : 1995~2004
관세		
모든 농산물 평균감축률	-36%	-24%
품목당 최소감축률	-15%	-10%
국내보조		
각 부문별 총 AMS 감축률 (기준기간 : 1986~88)	-20%	-13%
수출		
보조액 감축률	-36%	-24%
보조금 지급물량 (기준기간 : 1986~90)	-21%	-14%
<p>최빈개도국은 관세나 보조금 감축 의무가 없다. 관세감축의 기준수준은 1995년 1월 1일 이전의 양허세율, 또는 비양허품목의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1986년 9월의 실행세율로 한다. 여타 수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허표"의 계산에 사용된 목표치이다.</p>		

가격의 급속한 하락이나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관세화한 품목들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농업협정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명시했다. (예를 들어, 특별세이프가드조치는 관세할당 내 수입에 대해서는 취할 수 없다.)

WTO 회원국 중 네 나라는 이행기간 동안(선진국의 경우 2000년까지, 개도국의 경우 2004년까지) 특별히 민감한 품목(주로 쌀)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대우" 조항을 이용했으나, 이는 해외 공급자에 대한 최소 시장접근 등을 포함한 엄격한 조건하에서 이용되었다. 이 네 나라는 일본, 한국, 필리핀(이상 쌀), 그리고 이스라엘(양고기, 분유, 일부 치즈)이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현재 이 권리를 포기했으나, 한국과 필리핀은 쌀에 대한 특별대우를 연장 적용하였다. 새 회원인 대만(지역)은 가입 첫 해인 2002년, 쌀에 이 권리를 이용했다.

**국내보조 : 허용보조와 금지보조**

국내 가격을 지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을 보조하는 정책에 대한 주요 불만은 이러한 정책이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입을 억제하거나 수출보조금 및 세계시장에 대한 저가 덤핑으로 이어진다. 농업협정은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분한다.

생산과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보조는 감축되어야 한다. WTO 회원국들은 1986~88년을 기준으로 농업부문에 이런 종류의 보조를 매년 얼마나 지급하는지를("총 감축대상보조(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또는 "총 AMS"라고 알려진 계산방법을 이용해서) 산출했다. 선진국은 1995년부터 6년간 이 수치를 20% 감축하는데 동의했다. 개도국은 10년간 13% 감축하는데 동의했다. 최빈개도국은 어떠한 감축도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범주의 국내보조는 흔히 "amber box(감축대상 보조금)"로 불리며, 이는 "감속"이라는 의미의 노란색(amber) 교통신호와 관련된 것이다.



무역에 미미한 영향을 주는 조치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이러한 조치는 “green box” (허용보조, 신희등의 “녹색(green)”과 관련)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연구, 방역, 기반시설, 식량안보 등과 같은 정부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특정한 형태의 직접 소득보조, 농민의 농업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보조, 환경 또는 지역 지원 프로그램하의 직접지불 등과 같이 생산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농민에게 직접 지불하는 보조도 포함한다.

생산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직접지불(“blue box(특정제한하의 직접지불)”라고 불림),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정 정부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농업 총생산액이나 품목 총생산액과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선진국의 경우 5% 이하, 개도국의 경우 10% 이하)의 보조(“de minimis(최소허용보조)”)도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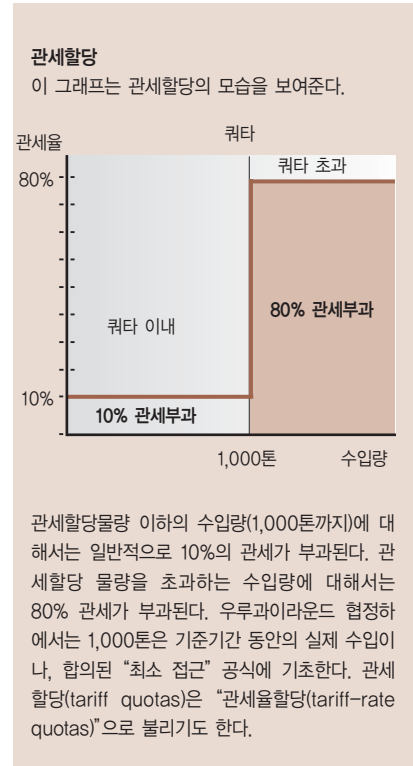
**수출보조금 : 지급액과 보조대상 수량에 대한 제한**


농업협정은 회원국의 양허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금지한다. 보조금이 회원국의 양허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농업협정은 WTO 회원국들이 수출보조금 지급액과 수출보조금을 지급받는 수출품의 수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86년~90년 평균을 기준으로 선진국은 1995년부터 6년간 36%(개도국은 10년간 24%)의 수출보조금 감축에 동의했다. 선진국은 또한 6년에 걸쳐 보조대상 수출품의 수량을 21%(개도국은 10년간 14%) 줄이도록 했다. 최빈개도국은 이러한 감축의무가 없다.

6년<sup>6)</sup>간의 이행기간 동안, 개도국은 특정 조건하에서 수출품에 대한 마케팅과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최빈개도국과 순식량수입개도국**

농업협정하에서 WTO 회원국들은 보조금이 지급된 수출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수입국들은 주요 산업국가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한 저렴한 식량공급에 의존한다. 여기에는 일부 최빈국들이 포함되며, 이들의 농업부문이 수출보조금 감소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의해 부양될 수도 있지만, 높아진 수입가격에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필요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특별 각료 결정은 식량원조와 농업개발용 원조의 제공을 위한 목적과 조치들을 제시하였으며, 상업적 식량수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지원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agriculture

역주 6) 이 책자 영문판에는 '6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타인 것으로 보이며, '10년'이 정확한 수치이다.

#### 누구의 국제표준인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는 아래 기구를 예로 든다

-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식품 관련 표준
- 국제수역사무국(OIE :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 동물 위생 관련 표준
- FAO의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사무국 : 식물 위생 관련 표준

회원국 정부는 모든 WTO 회원국에게 개방된 기타 국제기구나 협정을 추가할 수 있다.

회원국이 이러한 표준을 적용할 경우, WTO 분쟁을 통한 법률적 다툼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 4. 표준과 안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는 관련 조치가 차별적이거나 위장된 보호주의가 아닌 한, 회원국 정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식품안전 및 동식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상품 표준 일반에 관한 두 개의 별도 WTO 협정이 있다. 이 두 협정 모두 표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와 동시에 위장된 보호주의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혹자는 이를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는 해저 바위에 비교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회원국이 국제표준을 적용하면, 회원국 자신의 개별적인 표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WTO 분쟁에서 제소당할 가능성이 낮다.

#### 식품, 동물 및 식물 상품 :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한가?

문제 : 당신은 어떻게 당신 국가의 소비자들이 먹기에 안전한 - 특히, 당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한 - 식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동시에 당신은 어떻게 엄격한 위생 및 안전 규정이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핑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기본적 규범은 식품 안전 및 동식물 위생표준(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또는 SPS)에 대한 별도의 협정에 제시되어 있다.

이 협정은 각 회원국이 별도의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회원국의 규정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을 가진 국가들을 자의적, 혹은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다.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가 있는 경우 회원국들은 이런 국제표준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국제표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WTO 분쟁에서 제소당할 가능성이 낮다. 한편 회원국들은 과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자의적이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한, 적절한 위험 평가에 근거하여 높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과학적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안전 우선" 접근의 일종인 "사전예방 원칙"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 SPS 협정 제5.7조는 한시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허용한다.

SPS 협정은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표준과 상품 조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렇다면 수출국은 어떻게 자국이 적용하는 방법이 수입국에서도 허용되는지를 확신할 수 있을까? 만약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적용하는 조치를 통해 수입국의 건강보호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증명하면, 수입국은 수출국의 표준과 조사 방법을 수용하도록 기대된다.

이 협정은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회원국 정부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위생 및 식물위생 관련 규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별 문의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다.

#### 기술 규정 및 표준

기술 규정 및 표준은 중요하나 국가별로 그 내용이 다양하다. 과도하게 많은 표준은 생산자 및 수출업자에게 어려움을 주어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 보호에서부터 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표준은 필요하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그리고 표준은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생긴다. 어떻게 표준이 진정으로 유용하고, 자의적이지 않으며 보호주의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 절차가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 예컨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과 환경 보호 또는 다른 소비자 이익을 위한 - 표준을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나아가 회원국은 자국의 표준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규율을 통해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수많은 규정은 제조업자나 수출업자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국제 표준을 적용한다면 훨씬 간단해질 것이므로 협정은 이를 장려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국의 규정이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TBT 협정은 또한 모범관행규약을 두어 정부와 비정부, 또는 산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표준을 입안, 채택,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개 이상의 표준결정 기구들이 이 규약을 적용한다.

이 협정은 상품이 관련 표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고 규정한다. 이 협정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조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들의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인정이 없다면 수출품은 수출국에서 검사를 받은 후 수입국에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제조업자와 수출업자는 잠재 시장에서의 표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WTO 회원국 정부는 국가별 문의처를 설치하고 WTO를 통해 여타 회원국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간 900건 정도의 신규 또는 개정 법령이 통보되고 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법령과 이행에 대한 우려사항을 논의하는 주요한 장이다.

## 5. 섬유 : 다자체제로의 복귀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전의 GATT 체제에서도 그랬듯이 섬유는 농산물과 함께 WTO 체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이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것과 같이 참여국들은 10년에 걸쳐 국제 섬유 무역 관행과 규범을 개선했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초 이래로 섬유 무역을 주름잡았던 수입 쿼타제도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1974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국제 섬유 무역은 '다자간섬유협정'(MFA : Multifibre Arrangement)에 의해 지배되었다. 다자간섬유협정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국가의 섬유산업이 심각한 피해에 직면하는 경우, 수입되는 섬유의 양을 제한하는 양자협정이나 일방적 조치를 위한 틀이었다.

수입 쿼타는 이 협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수입 쿼타는 일반적으로 수량 제한에 비해 관세를 선호하는 GATT 원칙에 상치되는 것이었다. 또한, 수입 쿼타는 수입국이 각각의 수출국으로부터 얼마나 수입할 것인지를 구체화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GATT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했다.

1995년 이후로 WTO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 :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이 다자간섬유협정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섬유 부문은 정상적인 GATT 체제에 완전히 통합되었다. 특히, 수입 쿼타는 없어지고, 수입국가는 수출국들간에 더 이상 차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섬유 및 의



류에 관한 협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협정은 일정기간 이후 스스로 종료되도록 초기에 설정된 유일한 WTO 협정이다.

### 통합 : GATT 체제로의 점진적인 복귀

섬유와 의류 제품은 지난 10년에 걸쳐 GATT 체제로 돌아왔다. 섬유와 의류 제품의 GATT 체제로의 회귀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일부 품목은 이전에 쿼타의 적용을 받았다. 199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쿼타는 새로운 협정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쿼타가 설정되어 있던 품목들에 있어 GATT로의 통합이란 이러한 쿼타의 폐지를 의미했다.

#### 10년에 걸친 4단계 이행조치

아래 표는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수입 쿼타를 폐지하여 GATT 체제로 복귀시키기 위한 계획과 남은 쿼타가 철폐되는 속도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는 다자간섬유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연 6%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를 들고 있다. 실제로 다자간섬유협정(MFA)에서 사용되었던 증가율은 제품별로 상이했다.

단계	GATT 협정으로 편입되는 제품의 비율 (쿼타 폐지 포함)	잔존한 쿼타의 비율 (1994년의 증가율을 6%라고 할 경우)
1단계 : 1995년 1월 1일 (1997년 12월 31일까지)	16% (최소치, 1990년 수입량 기준)	매년 6.96%
2단계 : 1998년 1월 1일 (2001년 12월 31일까지)	17%	매년 8.7%
3단계 : 2002년 1월 1일 (2004년 12월 31일까지)	18%	매년 11.05%
4단계 : 2005년 1월 1일 GATT로의 완전한 통합 (쿼타의 완전 철폐)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ATC) 종료	49% (최대치)	쿼타의 완전 폐지

쿼타 지정하에서의 수입 증가를 산정하는 공식

1단계 :  $0.1 \times 1995\text{년 이전 증가율}$

2단계 :  $0.25 \times 1\text{단계 증가율}$

3단계 :  $0.27 \times 2\text{단계 증가율}$

이 협정은 각 단계에서 GATT 체제로 편입되어야 하는 섬유 및 의류 제품의 비율을 규정했다. 만약 쿼타를 유지하면서 이 협정으로 편입된 제품이 있다면, 그 쿼타는 이후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했다. GATT 체제로 편입되어야 하는 섬유 및 의류 제품의 비율은 수입국의 1990년도 섬유 및 의류 교역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이 협정은 또한 쿼타 지정 하에서 허용되는 수입량을 매년 증가시키고 그 증가율은 각 단계별로 확대되도록 규정했다. 증가율의 속도는 기존 다자간섬유협정 체제하의 수입 증가율에 근거한 공식에 의해 정해졌다. (표 참조)

1단계~3단계에서 GATT 체제에 편입된 제품은 반드시 방직사, 직물, 인조섬유제품, 의류 등 섬유 및 의류의 4가지 주요 품목을 포함해야 했다. 다자간섬유협정에서 규율되지 않았고, 1996년까지 WTO 협정과 합치되지 않는 기타 다른 제한들은 2005년까지 WTO 협정에 합치시키거나 폐지해야 했다.

만일 과도기 동안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 협정은 엄격한 조건하에서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제한을 허용했다.

이러한 “잠정세이프가드(transitional safeguards)”는 GATT하에서 보통 허용되는 여타 세이프가드조치와는 다른데, 이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국은 자국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심각한 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또한, 수입국은 그 피해가 다음 두 가지의 결과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문제가 되는 제품의 수입이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증가하는 동시에 특정한 국가로부터 급격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야 한다. 이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출국과 협이후 상호 합의에 의해서 또는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세이프가드조치는 섬유감시기구(Textiles Monitoring Body)의 검토 대상이 된다.

쿼타가 개별 수출국에게 할당된 체제에서 수출업자는 제3국을 통한 상품선적이나 제품의 원산지 변조를 통해서 이러한 쿼타를 우회하려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 협정은 특정 부류의 국가들 - 예컨대 신규 시장 진입국이나, 소규모 공급자, 최빈개도국 등 - 을 위한 특별대우를 예비했다.

섬유감시기구(TMB : Textiles Monitoring Body)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했다. 이 기구는 의장과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해진 조치의 협정에의 합치여부를 확인하고, 통합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는 상품이사회에 협정의 운영상황을 보고했다. 섬유감시기구는 또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만일 이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WTO의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로 이양되도록 했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 2005년 1월 1일에 종료됐을 때, 섬유감시기구 역시 소멸되었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textiles

## 6. 서비스 : 성장과 투자를 위한 규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다루는 최초이자 유일한 다자무역규범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타결된 GATS는 지난 30년간 서비스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통신혁명이 야기한 서비스 무역의 잠재력에 대응하여 발전하였다.

서비스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전 세계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며 세계 고용의 1/3, 세계 무역의 약 20%를 차지한다.

1980년대 초 중반 서비스 무역규범을 다자무역체제 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을 때, 많은 국가들은 그러한 제안에 회의적이었고, 심지어는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협정이 국내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회원국의 권한을 침해하고 정부의 규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제정된 협정은 규범적 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약속의 관점에서도 상당수준의 유연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 GATS에 대한 설명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3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일반적 의무 및 규율을 규정하는 본문 ; 특정 분야의 규범을 다루고 있는 부속서 ; 그리고 개별 회원국들이 임시적으로 비차별적인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두는 목록(indications)을 포함하여 서비스 시장의 시장접근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

#### 기본원칙

- 모든 종류의 서비스가 GATS의 적용 대상이다.
- 최혜국대우는 일시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 내국민대우는 각 회원국이 양허한 분야에 적용한다.
- 규제의 투명성을 위해 문의처를 설치한다.
- 국제 지불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각 회원국의 양허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구속력이 있다.
- 추가적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유화가 달성된다.



## 일반적 의무와 규율

**적용 범위** 이 협정은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모든 서비스를 다룬다. 예컨대 금융, 통신, 관광, 전문직 서비스 등. 또한 서비스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 (또는 “모드(mode)”)으로 정의된다.

- 한 국가의 영역에서 다른 국가의 영역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의 송수신), 공식적으로 알려진 “국경간 공급”(WTO 용어로, “mode 1”)
-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형태(예, 관광), 공식적으로 “해외소비”(“mode 2”)
- 한 외국회사가 자회사나 지사를 다른 국가에 설립하는 형태(예, 한 국가에 외국은행을 설립), 공식적으로 “상업적 주재”(“mode 3”)
-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인이 본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형태(예, 패션 모델이나 컨설턴트), 공식적으로 “자연인의 이동”(“mode 4”)

**최혜국(MFN : Most-favoured-nation) 대우** 어느 한 국가를 우대하면 모든 국가를 우대하라. (Favour one, favour all) 최혜국대우는 비차별 원칙에 의거하여 한 국가가 자국의 무역 상대국을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GATS하에서 회원국이 어떤 분야에서 외국의 경쟁을 허용한다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그 국가가 WTO 하에서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적용된다.)



MFN은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적용되지만 특별히 일시적 면제가 허용되기도 한다. GATS가 효력을 발휘했을 때 많은 국가들은 이미 서비스 영역에서 양자적 또는 소규모 그룹 형태로 우대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WTO 회원국들은 이러한 우대 조치들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회원국들은 최초 약속과 함께 “MFN 면제”를 규정하여 특정 서비스에 대해 특정 국가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일반적인 최혜국대우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면제는 한 번만 규정될 수 있으며 면제 조항을 추가할 수 없다. 현재 최혜국대우 면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검토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시장접근 약속과 내국민대우** 특정 분야의 시장을 개방하는 개별국가의 약속은 - 그리고, 이러한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 것인가는 - 협상의 결과이다. 이들 약속은 개방되는 분야, 개방되는 분야에서의 시장접근 정도(예, 외국인 소유에 있어 제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내국민대우의 제한(국내 기업에게 부여되는 특정 권리가 외국 기업에게 부여되지 않는지 여부)을 “양허표”에 기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정부가 외국의 은행들이 그 국가의 국내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약속한다면 그것은 **시장접근 약속**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정부가 인가하는 외국은행의 수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시장접근의 제한**이 된다. 또한 한 정부가 자국의 은행이 다수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외국 은행에 대해서는 한 개의 지사만 설립하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이다.



명확하게 정의된 이들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상품 교역에 있어서의 양허관세와 같이 서비스에 있어서 역시 이들은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의 협상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수정될 수 있다. “양허철회”는 어렵기 때문에 약속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외국인 수출입업자, 사업 분야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조건을 보장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부의 서비스는 본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며 GATS에는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민영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사실 “민영화”라는 용어조차 GATS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GATS에는 정부 독점 및 민간 독점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이러한 제외는 WTO 회원국 정부가 공공 자금 지원을 받는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는 핵심 분야로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약속이다. 이 협정에서 정부의 서비스는 상업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고 다른 공급자들과 경쟁하지 않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이들 서비스는 GATS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장접근 약속과 내국민대우(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가 적용되지 않는다.

GATS의 약속 방식은 회원국들이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해 개방 약속을 할 의무는 없음을 의미한다. 회원국은 자국의 핵심 영역이라고 간주하거나 혹은 여타 어떠한 이유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의 경쟁을 허용하는 약속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회원국의 유일한 의무는 그 분야를 규제하는데 투명성을 유지하고 외국의 공급자들간에 차별을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최소화된다.

**투명성** GATS는 회원국이 모든 관련 법과 규정을 공표해야 하며 정부 내에 문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외국 기업과 정부는 특정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이렇게 설치된 문의처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시장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가 변경될 경우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국내규제의 객관성과 합리성** 국내 규제는 서비스 교역에 영향력이나 통제를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협정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 정부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을 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결정의 적절성을 추후 심사하는 중립적인 절차(예를 들어, 행정심판 등)를 제공해야 한다.

GATS는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시장개방 약속은 정부가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 안전, 서비스의 질 등을 규제하거나 또는 적절하다고 보이는 어떠한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국민대우는 국내 공급자들과 해외 공급자들에게 동등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나 변호사의 자격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세울 권한을 당연히 유지한다.

**상호인정** 두개 이상의 회원국이 상호 자격 인정, 예를 들어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또는 인증에 대해 합의할 경우, GATS는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약정(pacts)을 협상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자격을 인정할 때에는 차별적이어서는 안 되며 위장된 보호주의 방식이 되어도 안 된다. 이러한 인정 협정은 WTO에 통보되어야 한다.

**국제 지불 및 송금** 한 회원국 정부가 서비스 분야를 외국 경쟁자에게 개방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공급되는 서비스의 지불대가로서 자국에서 송금되는 자금(“정상거래”)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유일한 예외가 인정되며 그러한 경우에도 규제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다른 제한 및 조건은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점진적 자유화** 우루과이라운드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GATS는 2000년 초에 추가협상을 개시하였으며, 현재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일부로 진행 중이다. 목표는 양허표 상의 시장 개방 약속 수준을 높임으로써 자유화의 과정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 **부속서 : 서비스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상품의 국제교역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간단하다. 한 상품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한다. 서비스에 있어서 교역은 훨씬 더 다양하다. 전화회사, 은행, 항공사와 회계법인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공급한다. GATS 부속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자연인의 이동** 이 부속서는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한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주재하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협상을 다루고 있다. 이는 협정이 영구적으로 고용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시민권, 영주권 및 영구적 고용 획득과 관련된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금융서비스** 은행 제도의 불안정성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서비스 부속서는 투자자, 예탁자 및 보험 계약자 보호, 금융제도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재량적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 부속서는 또한 중앙은행 서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 권한 행사와 관련된 서비스는 협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통신** 통신분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 이 분야는 별개의 경제 활동분야이자, 다른 경제 활동 공급의 토대가 되는 수단이다(예를 들어, 온라인 송금). 부속서는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공공 통신 서비스망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회원국 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운송 서비스** 이 부속서는 운송권과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은 GATS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양자협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속서는 GATS가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중 판매 및 컴퓨터 예약 서비스에는 적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현재 부속서를 검토중에 있다.

## 현행 작업

GATS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과중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있다. GATS가 발효된 1995년 1월 직후부터 의무화된대로 일부 주제들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서비스 국제무역의 자유화 증진을 위한 협상은 연구 및 검토가 수반되는 다른 작업들과 함께 2000년에 시작되었다.

**협상(제19조)** 서비스 국제 무역의 자유화 증진을 위한 협상은 GATS(제1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협상의 첫 단계는 회원국들이 협상을 위한 지침과 절차에 대해 합의한 2001년 3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지침에 합의함으로써 회원국들은 협상의 목표와 범위, 방법을 명확하고도 균형 잡힌 방식으로 설정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일부 GATS의 기본원칙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즉, 회원국의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 공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을 규제하고 도입하는 회원국의 권리; 어떠한 서비스를 어떠한 조건에서 외국 공급자에게 개방하고자 하는지를 명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위한 포괄적인 유연성의 원칙. 따라서 이 지침은 일반적으로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타 회원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의료, 공교육, 그리고 문화산업과 같은 중요 분야에서 공공 정책사항에 민감하다.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서 이러한 협상은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에 “일괄타결과제(single undertaking)”로 통합되었다. 2002년 7월부터 시장접근에 관한 양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GATS 규범작업반(제10조, 13조 그리고 15조)** 1995년부터 긴급 세이프가드조치, 정부조달 및 보조금에 관한 규정 등 GATS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원칙들의 개발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지금까지는 세이프가드에 집중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시장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접근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이며 협상은 이를 이용하는 정부의 절차와 원칙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몇회의 최종시한이 이미 지나버렸지만 현재 목표는 서비스 협상의 타결과 동시에 그 결과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규제작업반(제4.4조)** 국내규제 관한 원칙 - 외국 서비스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 - 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은 1995년 시작되었다. 자격 요건과 절차, 기술 표준 및 허가 요건이 주요 쟁점이다. 1998년 12월에 이르러서야 회원국들은 회계분야의 국내 규제에 관한 원칙에 합의했다. 그 후로 회원국들은 모든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일반 원칙과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분야별 원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여 왔다. 합의된 모든 원칙은 GATS에 통합될 것이며 현행 서비스 협상 종료시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최혜국대우(MFN) 면제(제2조에 관한 부속서)** 이 주제에 대한 작업은 2000년에 개시되었다. GATS가 1995년 발효되었을 때 회원국들에게 회원국의 교역 상대국들간에 비차별주의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허용되었다.

면제가 취해진 조치는 회원국들의 최혜국대우(MFN) 면제 목록에 기재되었는데 어떤 회원국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가 적용되는지 표시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였다. 원칙상 이러한 면제는 10년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GATS에 규정된 대로 이러한 모든 면제 사항은 처음에 이러한 면제를 하도록 한 조건이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검토중이다. 어쨌든 이러한 면제 사항에 대한 검토 역시 현행 서비스 협상의 일부분이다.

**“자율적” 자유화 고려(제19조)** 우루과이라운드 이래로 자발적으로 자유화를 단행한 국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서비스 시장접근협상시 고려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2001년 3월에 합의한 GATS 협상을 위한 지침과 절차에도 이러한 “자율적” 또는 일방적 자유화를 고려하기 위한 기준을 요청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은 2003년 3월 6일에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제19조)** GATS는 회원국들에게 최빈개도국에게 어떻게 특별대우를 협상중에 부여할 것인지를 규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자유화의 세부원칙”은 특별대우의 범위, 사용 방법을 포괄한다.) 최빈개도국들은 2002년 3월에 논의를 개시하였고 이후 논의의 결과로 2003년 9월 3일에 회원국들은 세부원칙에 합의하였다.

**서비스 무역의 평가(제19조)** 서비스 무역의 평가에 관한 사전 작업은 1999년 초에 시작되었다. GATS는 서비스 무역에 있어 개도국의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GATS의 목표를 포함하여 회원국들이 서비스 무역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상 지침은 이를 강조하여 협상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통계 정보의 부족과 다른 방법론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완전한 자료에 근거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사무국에서 만든 몇몇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항공운송 서비스** 현재 대부분의 항공운송 분야 - 운송권 및 운송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 는 GATS의 적용 범위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GATS는 회원국들에 대한 이러한 상황의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2000년 초반에 시작한 이 검토의 목적은 추가적인 항공운송 서비스가 GATS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협상으로 진전되어 새로운 항공운송 서비스를 GATS 범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에 관한 양허표에 구체적인 약속을 추가함으로써 GATS 자체를 개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services

>도하 아젠다 협상 참조

## 7. 지적재산권 : 보호와 집행

1986~94년동안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된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최초로 지적재산권 규범을 다자무역체제 내로 편입시켰다.

### 발단 : 규범에 근거한 무역체제를 향하여

아이디어와 지식은 무역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새로운 의약품 및 기타 하이테크 상품 가치의 대부분은 관련된 발명, 혁신, 연구, 디자인 그리고 실험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영화, 음반, 서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는 보통 그것을 만들 때 사용된 플라스틱, 금속, 종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정보와 독창성 때문에 매매되는 것이다. 과거 저급기술 상품 또는 제품으로 거래되던 많은 상품들이 지금은 그 가치에 있어 발명 및 디자인의 비중이 커졌다. 예를 들면, 유명상표 의류나 신종 식물이 그 예이다.

창작자에게는 타인이 그들의 발명, 디자인 또는 여타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 그리고, 타인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액을 흥정하기 위해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주어진다. 이러한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 하며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예를 들어 서적, 그림, 영화는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발명은 특허권이 주어질 수 있으며, 상표명과 상품 로고는 상표로 등록된다. 정부와 의회는 사회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데 대한 보상으로 창작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보호 및 집행 정도는 국가마다 다른데, 지적재산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국제경제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새롭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무역규범은 한층 높은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도입하고 분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 WTO TRIPS 협정은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방법에 관한 격차를 좁히고, 공통된 국제 규범하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이다. TRIPS 협정은 각국이 여타 WTO 회원국의 지적재산에 대해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설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장기 이익과 단기 비용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지적재산의 보호가 창작과 발명을 촉진할 때, 특히 보호 기간이 만료하여 창작물과 발명품이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 정부는 예를 들면 공중 보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외를 통하여 단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제는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 협정은 다음의 다섯 가지 폭넓은 이슈를 포함한다.

- 무역 체제의 기본원칙과 여타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 여부
- 국가들은 각 개별 영역 내에서 어떻게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 WTO 회원국간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부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기간 동안의 특별한 경과 조치

### 지적재산권의 종류

TRIPS 협정에 의해 적용되는 재산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서비스표(service marks)를 포함한 상표권
- 지리적 표시
- 산업디자인
- 특허
- 집적회로 배치설계
- 영업 비밀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



### 차이점은 무엇인가?

저작권, 특허, 상표 등은 서로 다른 종류의 창작물이나 발명품에 적용되며, 또한 다르게 처우된다.

특허,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배치설계, 지리적 표시, 상표는 보호되기 위해서는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에는 보호되고 있는 것 - 발명, 디자인, 상표명, 로고 - 에 대한 기술(記述)이 포함되며 이러한 기술은 공개 정보이다.

저작권과 영업 비밀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이들은 등록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서로 다른 보호의 존속기간 등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

### 기본원칙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MFN) 및 균형적인 보호

GATT 및 GATS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협정의 시발점은 기본원칙들이며 다른 두 협정에서와 같이 비차별 원칙이 특징을 이룬다 : 내국민대우(외국인과 내국인의 동등한 대우), 최혜국대우(WTO의 모든 교역 대상국의 국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 내국민대우는 또한 WTO 체제 밖의 다른 지적재산권 협정의 핵심원칙이기도 하다.

TRIPS 협정은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고있다 : 지적재산의 보호는 기술 혁신과 기술 이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 협정은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복리가 증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적재산의 보호방법 : 공통 규범

TRIPS 협정 제2부는 지적재산권의 상이한 종류 및 그들의 보호방법을 규정한다. 그 목적은 적절한 보호 기준이 모든 회원국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점은 WTO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주요 국제 협정상의 의무사항이다.

- 산업재산권(특허권, 산업디자인 등)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문학·예술 저작물(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일부 영역은 이러한 협약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다. 일부 경우에는 규정된 보호 기준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TRIPS 협정은 상당 수의 새로운 또는 보다 높은 기준들을 추가하고 있다.

### 저작권

TRIPS 협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베른협약하에서 어문저작물로 보호되도록 보장하고, 데이터 베이스 보호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이 협정은 또한 국제 저작권 규정을 확대하여 대여권을 포함시키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와 음반 제작자는 그들의 저작물이 대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배타적 권한이 영화에도 적용되는데 영화의 상업적 대여는 저작권 소유권자가 영화에서 얻을 수 있는 잠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복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실연가도 실연의 무단 녹음, 복제 및 방송(불법활동)을 금지할 권한을 50년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음반 제작자들도 음반의 무단 복제를 50년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 상표권

이 협정은 어떠한 종류의 의장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 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최소한의 권리는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서비스표도 상품에 사용된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에서 유명해진 표장은 추가적 보호를 받게 된다.

## 지리적 표시

지명은 때때로 상품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단지 상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품의 특성을 규정하는데, 그러한 특성은 상품의 원산지의 결과이다.

잘 알려진 예로 “샴페인”, “스카치”, “데킬라”, “로크포트” 치즈를 들 수 있다. 포도주 및 증류주 제조자들은 특히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지명의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TRIPS 협정은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 문제는 다른 유형의 상품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상품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졌거나 그 통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그 지명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혼동시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TRIPS 협정은 회원국이 이러한 지명의 오용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협정은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즉, 소비자를 혼동시킬 위험이 없는 경우에조차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지명이 이미 상표로 보호된 경우 또는 일반 명사가 되었을 경우이다. 예컨대, “체다”는 이제 꼭 영국의 체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치즈가 아닌 특정 종류의 치즈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도 예외로 인용하고자 하는 국가는 문제가 되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려는 국가와의 협상을 감수해야 한다.

이 협정은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적 체제를 설립하기 위한 WTO에서의 추가적인 협상을 규정한다. 이는 현재 도하개발아젠다의 일환이며, 증류주가 협상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WTO에서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포도주와 증류주 외에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는 협상의 개시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은 TRIPS 협정하에서 최소 10년간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권자에게는 보호되는 디자인의 복제본인 디자인이 기재되어 있거나 수록되어 있는 물품의 제조,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특허권

이 협정은 발명품에 대해 최소 20년간 특허 보호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허 보호는 거의 모든 기술 분야의 물건 및 방법 모두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상의 이유로 발명품의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었을 경우, 정부는 이러한 발명품에 대해 특허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 및 외과적 방법, (미생물 이외의) 동물 또는 식물, 그리고 (미생물학적 방법 이외의)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방법도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 품종은 특허 또는 특별 제도(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협약에 규정된 육종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다.



이 협정은 특허권자가 향유하는 최소한의 권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므로써 자신의 권리를 남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이 협정은 정부가 “강제 실시권”을 발동하여 경쟁자가 상품을 생산하거나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의 강제 실시는 오직 특허권자의 적법한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일정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특허가 제법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 그 권리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획득된 상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일정 조건하에 법원은 특허권 침해 혐의자에게 특허로 보호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최근에 등장한 이슈로는 -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허제도의 역할을 유지하는 동시에 - 의약품의 특허 보호가 빈곤국가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강제 실시권과 같은 유연성이 TRIPS에 도입되었지만, 일부 회원국 정부는 이 규정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강제실시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WTO 각료들이 특별 선언을 발표했을 때 해결되었다. 각료들은 TRIPS 협정이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금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들은 TRIPS 협정에 포함된 유연성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능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들은 2016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 보호의 예외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남아있는 문제 - 국내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는 국가들이 강제 실시권하에서 생산된 특허 보호되는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추가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해결하는 것 - 에 관해서는 추가 작업을 TRIPS 이사회에 위임하였다. 이러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의무면제(waiver)가 2003년 8월 30일에 합의되었다.

#### 집적회로 배치설계

TRIPS 협정의 집적회로 배치설계(“반도체칩 설계”)의 보호에 관한 기반은 세계지적재산권 기구하의 집적회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워싱턴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89년에 채택되었으나 아직 미발효 상태이다. TRIPS 협정은 다수의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최소한 10년간 보호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비공개 정보 및 영업 비밀

영업 비밀 및 상업적 가치가 있는 다른 형태의 “비공개 정보”는 기밀누설 등 건전한 상관행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절차가 취해져야 한다. 새로운 의약품 및 농약품의 판매 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부에 제출한 실험정보도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 관행의 통제

저작권, 특허권 및 다른 종류의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자는 보호되고 있는 상표, 저작물, 발명품, 디자인 등을 복제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사용 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발급할 수 있다. TRIPS 협정은 사용허가계약의 조건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술이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 조건하에 회원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반경쟁적 사용허가를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문은 또한 정부의 반경쟁적 사용허가의 통제에 관해 상호 협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집행 : 강력하나 공정하게

지적재산권법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는 TRIPS 제3 부에서 다루고 있다. 협정은 정부가 자국법하에서 지적재산권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침해시의 처벌은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 절차는 정당하고 공평하되,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절차는 불합리한 시간 제한이나 부당한 지연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 관련된 사람들은 법원에 행정적 결정의 재심을 요청하거나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협정은 증거획득, 잠정조치, 금지명령, 손해배상 및 다른 벌칙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법원은 일정 조건하에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위조된 상품의 처분 또는 파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는 형사 범죄이다. 정부는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자가 위조품이나 해적판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술이전

특히 개도국은 기술이전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약속의 일부로 본다. TRIPS 협정은 이에 관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최빈 개도국으로 기술이전을 하는데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경과 조치 : 1년, 5년, 11년 또는 그 이상

1995년 1월 1일 WTO 협정이 발효되었을 때, 선진국들은 자국의 법과 관행을 TRIPS 협정에 부합시키도록 하는데 1년이란 기간이 주어졌다. 개도국들과 (일정 조건하의) 체제전환국들은 2000년까지 5년이, 최빈개도국들에게는 2006년까지 11년이 부여되었다. 현재, 의약품 특허의 경우 2016년까지 연장되었다.

어떤 개도국이 TRIPS 협정이 발효된(1995년 1월 1일) 이후에도 특정 기술분야에서 제품 특허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국가는 10년 이내에 그러한 보호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및 농약품에 대해서는 비록 이에 대한 특허를 경과 기간의 종료전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특허 출원의 제출을 경과 기간이 시작될 때부터 수락하여야 한다. 만일 경과 기간 동안 정부가 관련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매를 허용할 경우, 정부는 독점적인 판매권을 5년 또는 제품 특허가 부여될 때까지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 일정한 조건하에서 - 제공하여야 한다.

일정 예외 조항을 조건으로, 일반 원칙은 이 협정의 의무사항이 새로운 지적재산권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과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도해개발아젠다 참조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intellectual property



## 8.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 우발상황 등

양허관세와 이 양허관세를 모든 교역상대국에게 똑같이 부과하는 것(최혜국대우, 또는 MFN : most-favoured-nation treatment)은 상품교역의 원활한 흐름에 필수적이다. WTO 협정은 이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를 허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슈가 있다.

- 덤핑(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 보조금 및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특별한 “상계” 관세
-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조치

### 반덤핑 조치

#### 이 협정의 이름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어떤 회사가 상품을 국내시장에 일반적으로 파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것을 “덤핑(dumping)”이라고 한다. 덤핑은 불공정한 경쟁인가? 이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나 많은 정부가 자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덤핑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WTO 협정은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WTO 협정은 정부가 덤핑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지에 중점을 두어 반덤핑조치를 규율하며 이 협정은 종종 “반덤핑협정(Anti-Dumping Agreement)”으로 불린다. (덤핑에 대한 대응에만 중점을 두는 접근 방식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과 대조된다.)

보다 정확한 법적 정의가 있기는 하나,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WTO 협정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에 진정한(“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 정부가 덤핑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서 회원국 정부는 덤핑이 존재함을 보이고, 덤핑의 정도(수출업자의 국내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수출가격이 얼마나 낮은지)를 계산하고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GATT(제6조)는 회원국이 덤핑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반덤핑협정은 제6조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며 제6조와 함께 작용한다. 회원국이 가격을 “정상가격” 수준으로 하기 위해 또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특정 수출국으로부터의 특정 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조치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양허관세에 대한 GATT 원칙과 교역국 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GATT 원칙에 위배되나 GATT 제6조와 반덤핑협정은 회원국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특정 상품의 덤핑 정도가 심한지 가벼운지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협정은 가능한 선택 범위를 좁혀 어떤 상품의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규정한다. 주된 방법은 수출업자의 국내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제3국에서 책정한 가격을 적용하거나 또는 수출업자의 생산비용, 기타 비용 및 정상적인 이윤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등 두 가지 대안이 있다. 협정은 또한 어떻게 하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에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지는지를 규정한다.

상품에 대한 덤핑 정도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덤핑 조치는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특정 규율에 따라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산업의 상태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조사 결과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밝혀지면, 수출기업은 가격을 합의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고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면할 수도 있다.



반덤핑협정은 반덤핑 조사가 어떻게 개시되고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는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한다.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없는 한, 반덤핑 조치는 부과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조사당국은 덤핑마진이 미미(수출가격의 2% 미만으로 규정)하다고 결정하면 반덤핑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반덤핑협정은 다른 조건들도 명시한다. 예컨대, 덤핑 수입물량이 무시할 수 있을만한 수준(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그 상품 총 수입량의 3% 미만인 경우 - 단, 수입량 3% 미만인 국가들의 수입량 합계가 7%를 초과할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도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반덤핑협정은 회원국들이 모든 반덤핑 잠정 및 확정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반덤핑 관행 위원회에 즉각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매년 두차례에 걸쳐 모든 조사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상대국과 협의하도록 장려되며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antidumping

>도하 아젠다 협상 참조

## 보조금과 상계조치

이 협정은 보조금의 사용을 규율하고,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국가가 취하는 조치를 규제하는 등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협정은 회원국이 보조금의 철회나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의 제거를 위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는 회원국이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판명된 수입품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상계관세”라고 알려진)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협정은 보조금을 정의하고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의 개념 - 즉,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 (또는 주)등에서 특정 기업, 산업, 기업군 또는 산업군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금 - 을 도입하고 있다. 규율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러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국내보조금일 수도 있고 수출보조금일 수도 있다.

협정은 보조금을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 두 가지로 구분한다. 원래는 허용보조금도 있었으나 1999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아서 5년동안만 유효했다. 협정은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도 적용되나 보조금이 농업협정에 규정된 2003년 만료되는 농업협정의 “평화조항”에 해당되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 **금지보조금** : 금지보조금은 수출목표를 달성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내 생산품 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 보조금은 국제 무역을 왜곡하여 다른 국가의 무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지된다.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신속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AD-CVD’?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함께 AD-CVD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반덤핑과 보조금, 그리고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동일한 법률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다루고, 비슷한 절차를 적용하며, 동일한 기관이 조사관할을 가진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WTO의 두 위원회는 종종 공동 개최되기도 한다.

덤핑과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종종 이를 상쇄하는 특별수입세를 부과한다(보조금의 경우, 상계관세). 이 관세는 특정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되며 따라서 양허관세 및 최혜국대우에 관한 GATT 원칙에 위배된다. 협정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나, 관세를 부과하기 전, 수입국이 상세한 조사를 통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정확하게 보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점이 협정에 반영되어 있다.

덤핑은 기업의 행위이다. 반면 보조금의 지급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특정 소비자를 보조하도록 하는 정부 또는 정부기관의 행위이다.

WTO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들의 정부로 이루어진 기구이다. WTO는 기업을 다루지 않으며 덤핑과 같은 기업의 행위를 규율할 수 없다. 따라서 반덤핑 협정은 덤핑에 대한 국가의 대응만을 다룬다. 보조금과 관련하여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상대국의 보조금에 대해 대응하기도 하는 등 양방향에서 작용한다. 따라서 보조금협정은 보조금 자체와 이에 대한 대응을 모두 규율한다.



이 협정의 이름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만약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문제의 보조금이 금지보조금으로 판정되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소국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국내 생산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조치가능보조금** : 보조금이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면 제소국은 이 보조금이 자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조금은 허용된다. 협정은 보조금이 초래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피해를 규정한다. 한 국가의 보조금은 수입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제3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국가의 수출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아울러 한 국가의 국내 보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려고 하는 다른 나라의 수출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만약 분쟁해결기구가 보조금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판정하면, 보조금이 철회되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제거되어야 한다. 아울러 만약 국내 생산자들이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부 규율은 반덤핑 협정 규율과 유사하다. 수입국은 반덤핑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상세한 조사를 한 이후에 비로소 (반덤핑관세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 상품이 보조금을 받는지 여부(이 계산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와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피해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사를 개시하고 수행하는 절차와 상계조치의 이행과 유지(대부분의 경우 5년)에 대한 상세한 규율이 있다. 보조금을 받은 수출업자는 수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받는 대신 수출가격을 높이는 대안에 동의할 수도 있다.

이 협정의 이름은?  
세이프가드 협정 

개도국 또는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국가의 경우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최빈개도국과 1인당 GNP가 1,000 달러 미만인 개도국은 수출보조금을 금지하는 규율로부터 면제된다. 다른 개도국은 2003년까지 수출보조금을 폐지하여야 한다. 최빈개도국은 수입대체보조금(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2003년까지 폐지하여야 하고 여타 개도국은 2000년까지 폐지하여야 한다. 개도국은 자국 수출이 상계조치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우대를 받는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2002년까지 금지보조금을 폐지하여야 한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도하 아젠다 협상 참조

## 세이프가드 : 수입으로부터의 긴급 보호

WTO 회원국은 만약 자국의 국내산업이 수입의 급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상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세이프가드” 조치)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는 심각한 피해여야 한다. 세이프가드조치는 GATT(제19조)에서도 가능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는 드물게 사용되었고, 일부 정부는 GATT 영역에 속하지 않는 양자 협상을 통해 수출국 정부로 하여금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거나 시장을 공유하는 다른 방법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등 “회색지대”에 놓인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런 종류의 합의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 이루어졌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새로운 기반을 제공했다. 이 협정은 “회색지대”에 속한 조치를 금지하고 모든 세이프가드조치에 시한(“일몰 조항”)을 설정했다. 이 협정은 또한 회원국이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조치를 추구하고, 선택 또는 유지하거나, 시장을 나누도록 타협(orderly marketing arrangement)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측에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금했다. 협정에 부합하도록 시정되지 않은 양자 조치는 1998년 말까지 폐지되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조치 중 하나를 1년 더(즉, 1999년 말까지)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유럽연합(EU)만이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이 조항을 사용했다.

세이프가드조치를 정당화하는 수입의 “급증”은 수입의 실제 증가(절대적 증가) 또는 수입은 실제 증가하지 않더라도 규모가 작아지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상대적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

산업계 또는 기업들은 자국 정부에 세이프가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국가 당국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이 요건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확립된 규정과 관행에 따르는 것, 즉, 자의적인 방식을 피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조사를 하는 당국은 심리가 있을 때 이를 공표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증거는 세이프가드조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거를 포함해야 한다.

이 협정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과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규정한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때에는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국내산업의 조정을 돕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수량제한(쿼터)이 부과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을 막거나 치유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 확실히 정당화되지 않는 한, 수입량은 지난 3년간의 연간 평균보다 낮게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표적으로 해서 안 된다. 그러나 협정은 특정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불균형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비롯하여 수출 국가들간 쿼터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당국에 의해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해 산업이 구조 조정중이라는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1년 이상 부과된 조치는 점진적으로 자유화되어야 한다.

한 국가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제한을 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 급부를 주어야 한다. 협정은 수출국(또는 수출국들)이 협의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국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수출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상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보복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조치가 협정에 부합하고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의 결과로 취해졌다면 수출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보복하는 것을 세이프가드조치 개시 후 3년 동안 유예하여야 된다.

개도국의 수출은 일정 범위까지 세이프가드조치로부터 면제된다. 수입국은 한 개도국이 해당품목 전체수입량 중 3% 이상을 공급하거나 3% 미만을 공급하는 개도국들의 총합이 9%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개도국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협정의 운용 및 회원국의 협정 준수를 감독한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매 단계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safeguards



## 9. 비관세장벽 : 번거로운 행정절차들

수많은 협정들이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정적 또는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 수입허가
- 관세평가 규정
- 선적전 검사 :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 원산지규정 :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가?
- 투자조치

### 수입허가 : 절차를 명확하게 유지

과거에 비해 사용빈도는 줄어들었지만, 수입허가제도(import licensing systems)는 여전히 WTO의 통제 하에 있다.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에 의하면 수입허가는 단순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협정은 무역업자로 하여금 허가가 어떻게 그리고 왜 부여되지를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협정은 회원국이 새로운 수입허가 절차를 도입하거나 기존 절차를 변경할 경우, WTO에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이 협정은 각 회원국의 수입허가 신청서 평가방법에 관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어떤 허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발급된다. 이 협정은 관련 절차가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자동허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은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수입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허가 신청과 관련된 수입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협정에 따르면 수입허가업무 담당기관은 신청서를 처리함에 있어 정상적인 경우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에도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관세평가 규정

수입업자에게 있어, 세관에서 수입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는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관세평가에 대한 WTO 협정(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은 관세목적의 상품 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통일되며, 중립적인 체계 - 상업적 현실과 부합하고, 임의적이거나 허위적인 과세가격 사용을 금지하는 체계 -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일련의 평가 관련 규정을 제공하여, 기존 GATT의 관세평가 관련 조항을 확대하고 그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우루과이라운드 각료 결정은, 수입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 의심스러울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세관당국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추가적인 정보에도 불구하고, 세관당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가지게 될 경우,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이 협정의 이름은?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관련 각료 결정("관세당국이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대한 결정" 및 "최소가격 및 독점 대리인, 독점 유통업자 및 독점 영업권자 (concessionaire)에 의한 수입 관련 문서에 대한 결정")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customs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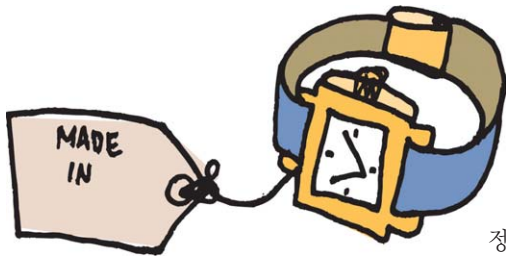
### 선적전 검사 :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선적전 검사는 해외에서 주문된 상품의 선적 상세내용 - 주로 가격, 수량, 물품의 특성 - 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민간기관(또는 “독립기관”)을 고용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 보호(자본 도피, 상업적 사기행위, 관세 회피 방지 등) 및 부적합한 행정 인프라의 보완을 목적으로 개도국 정부에 의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Preshipment Inspection Agreement)은 GATT의 원칙과 의무가 정부에 의해 임명된 선적전 검사기관의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선적전 검사를 이용중인 회원국 정부에 부여된 의무에는 비차별, 투명성, 영업기밀의 보호, 불합리한 지연의 회피, 가격확인 관련 구체적인 지침의 이용 및 검사기관의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회피 등이 있다. 선적전 검사 이용 국가에 대한 수출국의 의무는 국내 법규 적용시의 비차별, 관련 법규의 신속한 공시, 그리고 요청시 기술지원 제공 등이 있다.

이 협정은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절차는 검사기관을 대표하는 검사기관 국제연합(IFI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과 수출업자를 대표하는 국제상공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수출업자와 검사기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 원산지규정 :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원산지규정”은 어떤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다. 쿼타, 특혜관세,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수출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되는) 등 수많은 무역정책이 수출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원산지규정은 무역관련 규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원산지규정은 무역통계 작성에도 사용되며, 제품에 부착되는 “원산지표시(made in...)”에도 사용된다. 세계화의 진행과 제품이 최종적으로 시장에 나오기까지 여러 국가에서 생산공정을 거칠 수 있으므로, 원산지규정은 복잡하다.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Rules of Origin Agreement)은 WTO 회원국들이 원산지규정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에 있어 제한적, 왜곡적 또는 무역을 중단하게끔 하는 효과를 갖지 않도록 하며, 원산지규정이 일관되고, 통일되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원산지규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즉,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요건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원산지를 부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 협정은 회원국간의 공통(“통일”) 원산지규정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혜무역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 것이므로,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고자 하는 국가간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다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원산지규정을 객관적이고, 이해 가능하며,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는 등의 일련의 원칙을 바탕으로 원산지 통일화작업계획(harmonization work programme)을 수립하였다. 이 작업은 1998년 7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몇 번의 완료기한을 경과하였다. 이 작업은 WTO의 원산지규정위원회(Committee on Rules of Origin)와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산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 작업의 최종결과물은 모든 회원국들이 비특혜 무역조건하의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원산지규정이 될 것이다.

이 협정의 부속서로 특히 원산지규정 적용에 대한 “공동 선언”이 있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rules of origin

### 투자조치 : 무역 왜곡의 완화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에 관한 협정은 상품 무역에 관련된 투자 조치에 한해서 적용된다. TRIMs 협정은 특정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고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떠한 회원국도 외국인과 외국 상품에 대한 차별 조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는 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이다). 또한 수량 제한을 야기하는 투자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GATT의 또다른 원칙 위반). 이러한 GATT 조항에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된 TRIMs 예시목록이 협정에 부속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기업에게 특정 비율 이상의 국산품 구매를 요구하는 조치(“국산부품 사용요건”)가 포함된다. 이 목록은 또한 기업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기업의 수출 목표를 설정하는 조치(“무역 균형 요건”)를 자체시키고 있다

이 협정하에서 회원국은 WTO를 통해 이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모든 투자조치에 관한 정보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선진국은 이러한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2년 이내에(1996년 말까지), 개도국은 5년 이내에(1999년 말까지), 그리고 최빈개도국 회원국은 7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 2001년 7월 상품무역이사회는 연장을 요청한 상당수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과도 조치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약속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이 협정에 의하여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협정은 또한 WTO 회원국들이 투자정책 및 경쟁정책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2000년 1월 1일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DDA의 일부가 되었다.

### 10. 복수국간 협정 : 소수의 관심사안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investment

모든 WTO 회원국은 WTO 협정 전체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일부 회원국만 참여하는 4개의 협정이 남아있는데, 이는 모두 도교라운드에서 협상되었으며 이 4개의 협정을 “복수국간 협정”이라고 한다. 다른 모든 협정들은 1995년 WTO가 출범할 때 다자적 의무(즉,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협정)로 편입되었다. 4개의 복수국간 협정은 다음과 같다.

- 민간항공기교역
- 정부조달
- 낙농
- 우육

우육협정과 낙농협정은 1997년 종료되었다.

#### 민간항공기의 공정 거래

민간항공기 협정은 198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현재 3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 협정에서는 군용 비행기를 제외한 모든 비행기와 협정에 포함된 모든 물품, 즉, 민간항공기 엔진과 그에 따른 부품, 민간항공기의 부속품과 반제품, 항공기 모의훈련장치와 이에 관련된 부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시켜준다. 또한 정부의 지시에 따른 민간항공기구매와 구매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때 따라야 하는 절차 및 민간항공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civil aircraft



## 정부조달 : 경쟁을 위한 개방

대다수 국가에서 가장 큰 물품 구매자는 정부와 정부 관련 기관으로서 이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에서부터 첨단기술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물품을 구매한다. 동시에 외국 공급자들보다 국내 공급자들에게 더 특혜를 부여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도쿄라운드에서 협상이 시작되어 1981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 협정의 목표는 정부조달 분야를 국제 경쟁에 최대한 개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은 정부조달에 관련된 법령, 규제, 절차와 관행을 더욱더 투명화시키고 국내상품을 보호하지 않으며 외국의 상품 또는 공급자에 대한 차별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이 협정에는 28개의 회원국이 있다. 이 협정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부분에는 일반 규정과 의무가, 두 번째 부분에서는 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가의 정부 기관들의 목록이 있다. 일반 규정과 의무 중 상당 부분은 입찰 과정에 관련된 것이다.

현재의 정부조달협정과 그 구체적 의무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된 것이다. 이 협상으로 협정에 적용되는 분야가 10배 증가하게 되었고 국제 경쟁이 확대되어 해마다 수천억 달러의 물품을 구매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기관에 적용된다. 또한 개정된 협정에서는 서비스(건설업 포함)와 지방정부(주, 도, 군 등) 단위의 조달 및 공공서비스 사업체의 조달 과정까지 협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개정된 협정은 1996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개정된 협정에서는 또한 국제 경쟁에 있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을 확보하는 규정들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회원국 정부는 피해를 입은 민간 입찰자가 조달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결정이 협정 규정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government procurement



이 협정은 특정 양허하한선 이상의 조달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있어서 양허하한선은 13만 SDR(2003년 6월 기준으로 약 18만 5천 달러)이다. 지방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해서는 양허하한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20만 SDR이다. 공공서비스 사업체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서 양허하한선은 일반적으로 40만 SDR정도이며, 건설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허하한선이 5백만 SDR이다.

## 낙농 및 우육협정 : 1997년 종결

국제낙농협정과 국제우육협정은 1997년 말 종료되었다. 협정 가입국들은 이 분야가 농업협정이나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이 협정의 일부 사항은 협정 가입국의 수가 적어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농제품 주요 수출국 중 일부가 낙농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최소가격에 대해 협력하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최소가격제도는 1995년 중단되었다.



## 11. 무역정책검토 : 투명성 확보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은 교역조건에 대해 가능한 많이 알아야 한다. 따라서 무역규제 및 정책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WTO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회원국들은 정기적인 “통보”를 통하여 WTO 및 상대회원국에게 특정 조치, 정책 또는 법률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WTO는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검토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일부이나, 이는 협상중에 타결된 사항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되기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참가국들은 1988년 12월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의 중간평가로서 이러한 검토제도의 도입에 합의하였다. 최초의 검토회의는 그 다음해에 개최되었다. 당초 무역정책검토는 GATT하에 운영되었으며, 핵심 검토대상은 GATT와 같이 상품교역이었다. 1995년 WTO 창설에 따라 검토 범위는 WTO와 같이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이 협정의 이름은?  
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정책검토의 중요성은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가 WTO 조직상 상위 서열에 있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는 바, 무역정책검토기구는 WTO 일반이사회와 또 다른 모습이다.



무역정책검토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정기적인 감시를 통한 국가의 무역정책 관행의 투명성 및 이해 제고
- 당면 과제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정부간 논의의 질적 향상
- 무역정책이 세계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자간 평가

무역정책검토는 회원국들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보다 광범위한 경제 및 개발 관련 필요사항, 정책 및 목표, 직면하고 있는 대외 경제환경 등을 함께 고려한다. 다른 WTO 회원국들에 의한 이와 같은 “회원국간 검토(peer review)”는 각 회원국들이 WTO 규정과 규율을 보다 엄중히 따르고,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도록 장려한다. 실제로 무역정책검토는 크게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즉, 여타 회원국들이 검토대상국의 정책 및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국들이 검토대상국의 WTO 체제 내에서의 성과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검토대상국 정책에 대한 피드백(feedback)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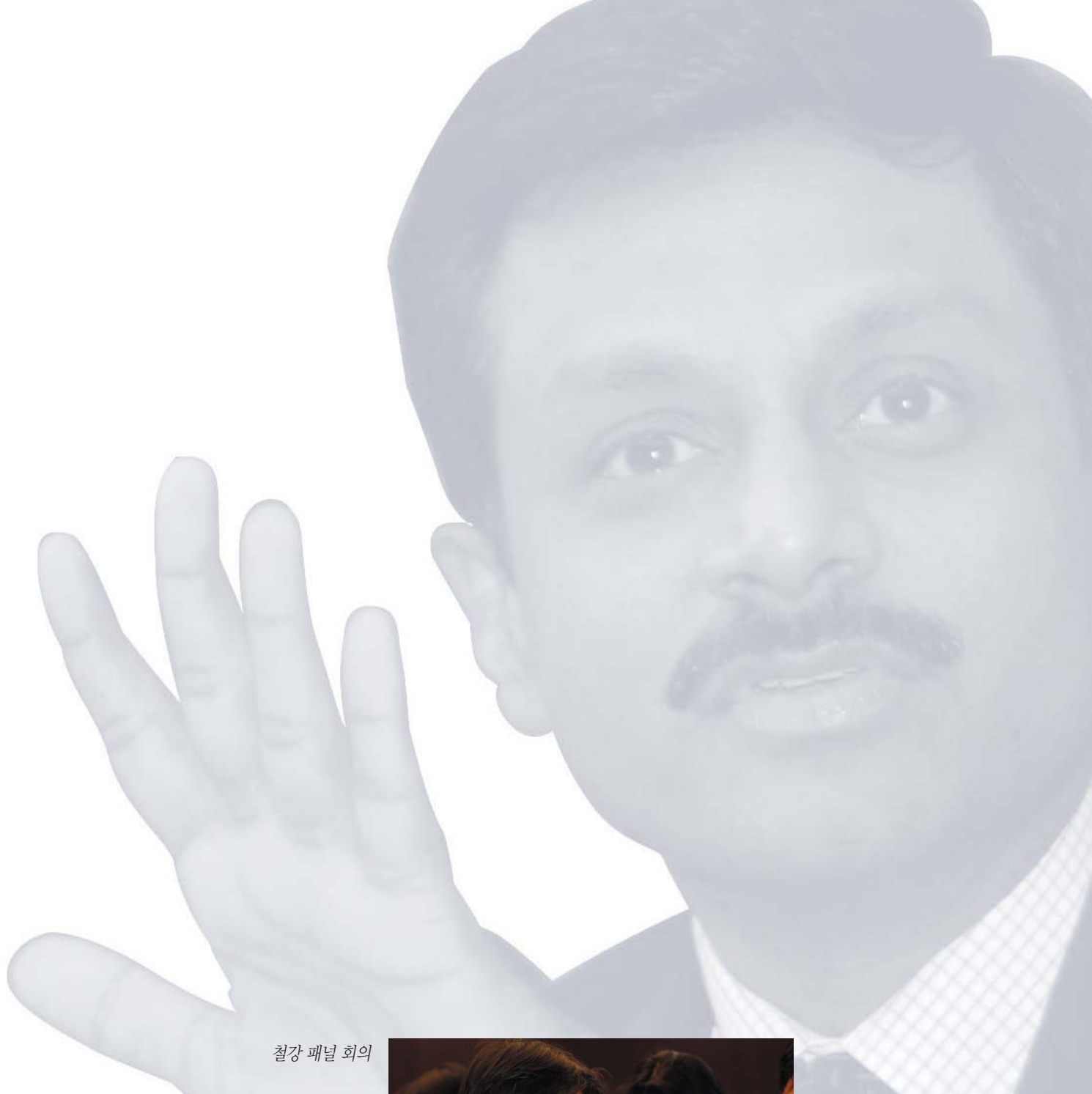
특정한 기간에 걸쳐 모든 WTO 회원국들은 면밀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동 검토의 횟수는 국가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 가장 큰 4개 교역국(the “Quad”) - 유럽연합, 미국, 일본 및 캐나다 - 은 2년마다 검토를 받는다.
- 그 다음의 16개 국가(세계교역비중 기준)들은 4년마다 검토를 받는다.
- 나머지 국가들은 6년마다 검토를 받으며,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기간이 잠시 연장될 수 있다.

회원국 하나에 대한 무역정책검토를 위해서는 2개의 문서가 준비된다. 검토대상국이 작성한 정책보고서와 WTO 사무국이 독립적으로 작성한 상세보고서가 그것인데 이 두 보고서는 무역정책검토기구의 회의록과 함께 즉시 공개된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trade policy reviews



철강 패널 회의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 1. 특별한 기여

분쟁해결은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요소이며,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한 WTO의 특별한 기여이다. 규범을 기초로 한 체제가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없으면 그 규범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WTO 절차는 법의 지배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무역체제를 더욱 안전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든다. 이 체제는 한 사건이 종료하기까지 설정된 작업계획표와 함께 명확하게 규정된 규칙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패널이 판정을 내리면, WTO의 전체 회원국은 이를 승인(또는 거부)한다. 법리에 기초한 상소도 가능하다.



**이 협정의 이름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대한 이해<sup>7)</sup>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하지만 분쟁해결절차의 목적은 판정을 내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2005년 7월까지 전체 332개의 분쟁 중 130개의 분쟁만이 패널 절차의 모든 단계를 마쳤다. 나머지의 대부분은 “법정 외”에서 해결되었다고 통보되었거나 협의단계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그중에는 1995년부터 계속 협의단계에 있는 것도 있다.

**원칙들 : 공정하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서로 수용가능하도록**

WTO에서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이 무역규범을 어겼다고 생각할 경우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 체제를 사용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즉, 이전에 합의한 절차를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국가가 WTO 협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무역정책을 채택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제3국들도 그러한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할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이전의 GATT에도 있었으나 정해진 작업계획표도 없었고, 판정을 막기도 쉬웠으며, 많은 분쟁이 오랜 동안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보다 명확히 설정된 단계들을 지닌 구조적으로 개선된 절차를 도입하였다.

#### 패널

패널은 법정과 같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정과는 달리 분쟁당사국들과 협의하여 패널리스트들을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만 WTO 사무총장이 패널리스트들을 임명한다.

패널은 상이한 국적을 지닌 3명(또는 경우에 따라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은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결정한다. 패널의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에 제출되는데, 분쟁해결기구는 컨센서스가 있어야만 보고서를 거부할 수 있다.

각 분쟁사건의 패널리스트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후보자들의 상시 명부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선정된다. 그들은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며, 어떤 정부의 지시도 받을 수 없다.



상소기구

역주 7) 이하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으로 표기



### 사건이 많아진 것은 좋은 뉴스

법정이 더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때로는 사람들이 법정과 법의 지배 원칙에 더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자신들이 법을 직접 집행하기보다 법정에 의존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WTO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아무도 국가들끼리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더 건전하다.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무역이 확장되고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더 엄격한 규범이 도입된 결과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더 많은 사건들이 WTO로 향하고 있는 것이 WTO 체제에 대해 신뢰가 깊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분쟁해결 각 단계의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다소 신속성을 지니지만 사건이 해결되는데 필요한 전체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원칙을 도입하였다. 분쟁해결 양해는 WTO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양해는 절차 및 분쟁해결을 위한 작업계획과 관련된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초 판정시까지 약 1년 이상이 소요되지 않아야 하며, 상소가 될 경우에는 15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시한에 대해 달리 합의할 경우 다소 신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긴급한 사건의 경우(예를 들어 부패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된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이 양해는 사건에 패소한 국가가 판정의 채택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전의 GATT 절차에서는 판정이 컨센서스로만 채택되어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채택되지 않았다. 지금은 판정을 거부하기 위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한 판정은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즉, 판정을 막으려는 국가가 (분쟁의 상대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절차의 상당부분이 일반적인 법정과 유사하기는 하나 선호되는 해결책은 해당국들이 문제를 상호간에 논의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차의 제1단계는 해당 정부간의 협의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더라도 협의와 중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모든 WTO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분쟁해결기구(일반이사회의 다른 형태)의 책임이다. 분쟁해결기구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패널의 판정 또는 상소기구의 결과를 채택하거나 거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기구는 판정과 권고사항의 이행을 감시하고 한 국가가 판정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 **1단계 : 협의(최대 60일까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분쟁당사국들간에 스스로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WTO 사무총장에게 중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도와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 **2단계 : 패널(최대 45일 이내에 패널 임명, 이후 6개월 이내에 패널 절차 종료).** 협의가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방어하는” 국가는 패널 구성을 한번은 막을 수 있지만 분쟁해결기구가 두 번째 회합할 때에는 패널 임명을 막을 수 없다 (단, 패널 임명에 반대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경우는 예외).

공식적으로 패널은 분쟁해결기구가 판정 또는 권고를 내리는 것을 도와줄 뿐이다. 하지만 분쟁해결기구에서 컨센서스 형성으로만 패널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패널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패널의 판정은 인용된 협정에 기초해야 한다.

패널의 최종보고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부패할 우려가 있는 상품과 관련된 사건 등과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출시한이 3개월로 단축된다.



협정은 패널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다.

- 1차 심리 이전 : 각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에 자국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1차 심리 : 제소국 및 피제소국의 주장 청취 : 제소국(또는 제소국 그룹), 피제소국 및 해당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제3차 참여국은 1차 심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한다.
- 반박 의견 : 당사국들은 서면으로 반박의견을 제출하고 제2차 심리시 구두로 논거를 제시한다.
- 전문가 참여 : 분쟁당사자 중 한쪽이 과학적 또는 다른 기술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패널은 전문가들과 협의하거나 자문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문가 검토 그룹을 임명할 수 있다.
- 보고서 초안 : 패널은 분쟁당사자들에게 그 보고서 중 서술적(사실 및 양측 주장) 부분을 제출하고 2주의 의견제시 기간을 준다. 이 보고서 초안은 판정 및 최종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 잠정보고서 : 패널은 판정 및 최종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를 양측에 제공하면서 1주의 검토기간을 준다.
- 검토 : 검토기간은 2주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 중 패널은 양측과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가 양측에게 제출되고 3주 후에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회람된다. 패널이 분쟁의 대상이 된 조치가 WTO 협정 또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할 경우 그러한 조치를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고칠 것을 권고하며,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도 포함할 수 있다.
- 판정으로의 전환 : 최종보고서는 그 보고서를 거부하는 컨센서스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또는 권고가 된다. 양측은 보고서에 불만을 가질 경우 상소할 수 있다. (때로는 양측 모두가 상소하기도 한다.)

## 상소

분쟁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패널의 결정사항에 대해 상소를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양측 모두가 상소하기도 한다. 상소는 법적인 해석과 같이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해야 한다. 즉, 기존 증거를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쟁점을 검토할 수 없다.

각 상소건은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임명되고 WTO 회원국을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7명으로 구성된 상설 상소기구 위원 중 3명에 의해 검토된다.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는 4년이다. 위원들은 각각 법률이나 국제무역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들이어야 하며 어떤 개별 정부와도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상소보고서는 패널의 법적 판정이나 결론을 유지, 수정 또는 번복할 수 있다. 상소절차는 일반적으로 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절대로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분쟁해결기구는 30일 이내에 상소보고서를 채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는 컨센서스만 가능하다.

##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분쟁해결 양해는 다소 신속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시되는 기간들은 분쟁해결절차 각각의 단계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간들이다. 또한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총 소요기간 역시 대략적인 시한이다.

60일	협의를, 중개 등
45일	패널 구성 및 패널리스트 임명
6개월	분쟁당사국에 최종 패널보고서 제출
3주	WTO 회원국 전체에 최종 패널 보고서 회람
60일	분쟁해결기구의 보고서 채택 (상소 안할 경우)
총 1년	(상소 안할 경우)
60~90일	상소보고서
30일	분쟁해결기구의 상소보고서 채택
총 1년 3개월	(상소할 경우)

### 분쟁건에 대한 결정은 내려졌다. 다음 단계는?

[백만장자 게임의] '감옥으로 곧장 직행. 새로운 출발점까지만. 수금(收金) 금지' 등...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러한 보드게임과 비슷한 정서가 적용된다. 어떤 국가가 뭔가 잘못했다면 신속하게 잘못을 고쳐야 한다. 그 국가가 계속 협정을 위반한다면, 보상을 제공하거나 다소 고통스러운 처벌을 감내해야한다.

한 사건에 대해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도 무역 제재(전통적인 제재수단)가 가해지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 최우선 목표는 패소한 '피제소국'이 문제가 된 정책을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의 판정 또는 권고에 합치하도록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분쟁해결협정은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이나 권고에 신속하게 따르는 것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피제소국이 패소할 경우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보고서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보고서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보고서 이행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권고의 즉각적인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제소국(또는 제소국 그룹)과 협상을 통해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안 - 예를 들면 제소국의 이해가 있는 분야에 대한 관세감축 등 - 을 결정한다.

20일이 지나도 만족할 만한 보상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에 피제소국을 상대로 제한된 무역 제재("양허 또는 의무의 정지")를 부과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한다. 분쟁해결기구는 "합리적인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무역제재 부과를 승인하여야 하는데 승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거부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재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부과된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될 경우 동일한 협정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 대신, 만약 이 조치도 효과적이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않고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면 다른 협정하에서의 조치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조치가 효과적이면서도 관련이 없는 분야에 부작용이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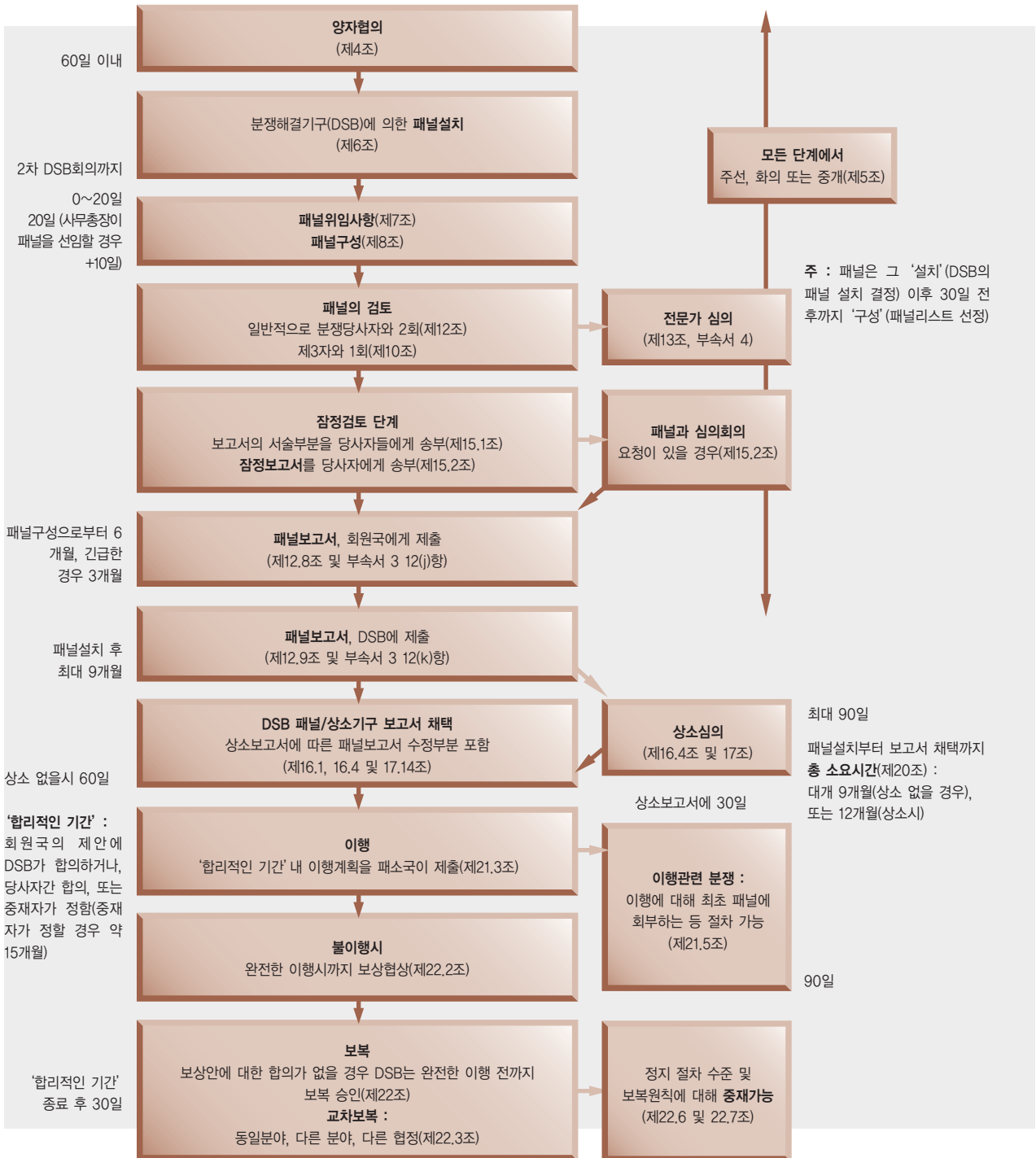
모든 경우에 분쟁해결기구는 채택된 판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감시한다. 분쟁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미해결 분쟁은 분쟁해결기구의 의제로 남아 있어야 한다.

>도하 아젠다 협상 참조

## 2. 패널 절차

아래 표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각 단계를 보여준다. 분쟁당사국들은 어느 단계에서든지 “법정 외”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협의를 진행하도록 장려된다. 마찬가지로 WTO 사무총장은 모든 단계에서 주선, 중개 또는 기타 화해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주 : 제시된 시한은 최대시한이거나 최소시한일 수 있으며, 일부는 의무적이고 다른 일부는 의무적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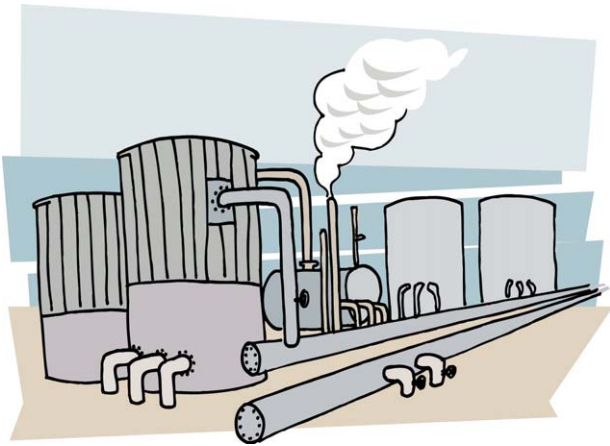


### 3. 분쟁 사례 : 패널절차의 시간표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가솔린 수입에 대해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약 1년 후(1996년 1월 29일) 분쟁해결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완성했다. (그 즈음 브라질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소함으로써 1996년 4월, 이 분쟁건에 합류했으며 같은 패널이 두 사건을 동시에 심의했다.) 미국이 상소했고, 1996년 5월 20일 상소기구가 작성한 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사건이 처음 제소된 이래 1년 4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6개월 반만에 미국의 이행 조치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상소가 종료된 후 15개월(1996년 5월 20일부터 1997년 8월 20일까지)을 조치사항의 이행기간으로 합의했다.

이 사건은 미국이 국내에서 정유한 가솔린에 비해 수입 가솔린의 화학적 특성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베네수엘라(그리고 나중에 브라질은) 미국의 가솔린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 즉,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일반적인 WTO 규범상의 건강 및 환경 보전 관련 조치에 대한 예외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다. 분쟁패널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주장에 동의하였고 상소보고서는 패널의 결론을 재확인하였다(다만 패널의 일부 법리 해석은 수정). 미국은 그 규정을 15개월 내에 수정하기로 베네수엘라와 합의하였고 1997년 8월 19일 새로운 규정안에 서명하였다고 8월 26일 분쟁해결기구에 보고하였다.



www.wto.org > trade topics > dispute settlement





시간 (0=사건개시)	목표/실제 시한	일자	조치 사항
-5년 -4개월		1990년 1994년 9월	미국, 청정대기법안 수정 미국, 청정대기법안에 따라 수입 가솔린 규제
0	"60일"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미국과 협의 요청
+1개월		1995년 2월 24일	양자 협의 실패
+2개월		1995년 3월 25일	베네수엘라,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 요청
+2.5개월	"30일"	1995년 4월 10일	분쟁해결기구, 패널 설치 합의. 미국, 설치 반대 안함. (브라질도 제소, 미국과 양자협의 요청)
+3개월		1995년 4월 28일	패널 임명. (5월 31일 브라질 사건에도 동일 패널 배당)
+6개월	9개월 (목표는 6~9개월)	1995년 7월 10~12일 및 7월 13~15일	패널 회의
+11개월		1995년 12월 11일	패널, 잠정보고서 미국, 베네수엘라 및 브라질에 회람
+1년		1996년 1월 29일	패널, 최종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출
+1년 1개월		1996년 2월 21일	미국, 상소
+1년 3개월	"60일"	1996년 4월 29일	상소기구, 보고서 제출
+1년 4개월	"30일"	1996년 5월 20일	분쟁해결기구, 패널 및 상소보고서 채택
+1년 10.5개월		1996년 12월 3일	미국 및 베네수엘라, 미국의 이행조치 합의 (5월 20일부터 15개월의 이행기간 부여)
+1년 11.5개월		1997년 1월 9일	미국, 분쟁해결기구에 이행상황 관련 최초 월별 보고서 제출
+2년 7개월		1997년 8월 19~20일	미국, 새 규정 서명(19일) 합의된 이행기간 종료(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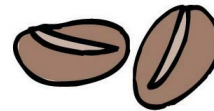
협정전반에 걸쳐있는 이슈들과 새로운 의제

WTO의 업무는 특정한 의무를 지닌 특정 협정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회원국 정부들이 특별 위원회나 작업반 등에서 일련의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 그중 어떤 이슈들은 GATT-WTO 체제에 있어서는 오래된 이슈도 있지만, 새로운 이슈일 수도 있다. 몇몇 이슈들은 독립적으로 분리되기도 하지만 다른 이슈들은 다양한 WTO 주제에 걸쳐있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이슈들은 협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 지역 경제 그룹
- 무역과 환경
- 무역과 투자
- 경쟁정책
- 정부조달 투명성
- 무역 “원활화”(무역 절차를 간소화 하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 이상의 수단을 통해 보다 원활한 무역 흐름 조성)
- 전자 상거래



이외에도 WTO에서 종종 상당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주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 무역과 노동

무역과 노동은 WTO의 작업 의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 최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장에 포함되었다.



1. 지역주의 : 친구 또는 경쟁자?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남미공동시장(Mercosur : Common Market of the South), 호주-뉴질랜드 경제관계 협정(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Agreement) 등.

2005년 7월 기준으로, 단 하나의 WTO 회원국 - 몽고 - 만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1990년대 초 이래, 지역무역협정의 증가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5년 7월까지 총 33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WTO(와 그의 전신인 GATT)에 통보되었다. 330개 가운데 206개는 1995년 1월 WTO 창설 이래 통보된 것이며, 180개는 현재 발효중이다. 이외에도 몇몇 지역무역협정들이 아직 통보되지 않았으나 현재 발효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장 흔한 의문 중 하나는 이러한 지역 그룹들이 WTO 다자무역체제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방해가 되는지 여부이다. WTO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

##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들은 WTO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 사실상 WTO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기도 한다. 지역협정은 여러 국가들이 다자차원에서 가능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규범과 약속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중 몇몇 규범들은 나중에 WTO 내에서 협정이 마련되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서비스, 지적재산, 환경 표준, 투자 및 경쟁정책들은 지역협정 협상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이며, 나중에 WTO 내의 협정 또는 논의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WTO에 의미가 있는 그룹들은 무역장벽을 철폐 또는 완화하는 그룹들이다. WTO 협정은 지역협정과 보다 긴밀한 경제통합이 국가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WTO는 또한 어떤 상황하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이 다른 국가들의 무역적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보통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는 모든 교역대상국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한다는 WTO 원칙(“최혜국대우”)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GATT 제24조는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역무역협정을 설치하는 것을 특별한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역무역협정은 역외지역에 대한 장벽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역내에서 국가들간의 무역흐름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적 통합은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GATT 제24조는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이 형성되었을 경우, 역내의 관세나 다른 무역장벽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부분에 있어 완화 또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외 국가에게는 그룹형성 이전에 비해 역내국가와의 교역이 더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GATS 제5조는 서비스 부문의 경제통합협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WTO 협정문의 다른 조항들은 개도국들간의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1996년 2월 6일 WTO 일반이사회는 지역경제협력체를 검토하고 이와 같은 지역경제협력체들이 WTO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역무역협정위원회(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또한 이 위원회는 지역협정이 다자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협정과 다자협정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regional trade agreements



>도하 아젠다 협상 참조



## 2. 환경 : 특별한 관심

WTO에서 환경을 다루는 별도의 협정은 없다. 그러나 WTO 협정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각국 정부가 환경을 보호할 권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다수의 협정이 환경 문제를 다루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의 목적은 WTO 설립협정 서문에 서술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60년 다자무역체제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된 1994년 당시 참가국 통상장관들은 WTO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작업 프로그램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무역환경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이슈는 WTO 작업의 주류로 부각되었다.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이 주제에 관한 일부 분야에서의 협상 개시가 합의되었다.

>도하 아젠다 협상 참조

### 무역환경위원회 : 폭넓은 작업 범위

이 위원회는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 등 다자무역체제의 모든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 위원회는 무역과 환경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무역 협정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무역환경위원회의 작업은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기초한다.

- WTO는 무역을 다루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 즉, 환경 문제에 있어 WTO의 유일한 임무는 환경 정책이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 야기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WTO는 환경 기구가 아니다. 회원국들은 WTO가 개별 국가 및 국제적 환경 정책에 개입하거나 환경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다른 기관들이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 위원회가 문제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은 WTO 무역체제의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들은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가 환경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국가 및 국제적 노력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는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지구정상회의”)와 그 후속회의인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의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무역환경위원회의 작업 프로그램은 10개 분야에 집중된다. 위원회의 의제는 개별 회원국들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제안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다음에서는 몇몇 이슈들에 대해 개괄하고 위원회가 현재까지 도출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 ‘녹색’ 조항 (‘Green’ provisions)

WTO 협정에서의 환경문제 관련 규정의 예

- GATT 제20조 :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무역관련 정책은 특정 조건하에서 일반적인 GATT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제품 및 산업표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동식물 건강 및 위생) 협정 : 환경 목표의 명확한 인식
- 농업협정 : 환경 프로그램은 보조금 감축 대상에서 면제된다.
-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 새로운 환경법에 적응하도록 각 기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이 허용된다.
- 지적재산권 협정 : 정부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협하거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특허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TRIPS 제27조)
- GATS 제14조 :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무역관련 정책은 특정 조건하에서 일반적인 GATS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핵심 문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무역행위가 환경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 국가는 상대국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의 실행이 가능한 것인가? 현재 이에 대한 확정적 법률 해석은 없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질문이 WTO 안팎에서 법적 분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무역협정과 WTO 이외의 환경협정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첫째, 협력하라 : 관련 국가들은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2. 불만이 있는 국가(예를 들면 수입품에 대해) 국내의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는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WTO 협정에 의하면 적용되는 기준, 세금을 비롯한 기타 조치는 자국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내국민대우")되어야 하며, 다른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최혜국대우")되어야 한다.
3. 상대국이 해당 환경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불만이 있는 국가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도 WTO의 관여사항이 아니다.
4. 상대국이 환경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불명확하게 되어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일부 환경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에도 협정상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아직 WTO에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WTO 협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안 중 하나는 해당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때 일국이 특정 상황에서 이 환경협정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제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방안이 자국의 환경 기준을 타국에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5. 환경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WTO규정이 적용된다. WTO 협정은 해석상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무역제한조치는 단순히 상품의 생산 방식에 근거해서만 적용될 수는 없다. 둘째, 한 국가는 그 영토를 벗어나 자국의 기준을 타국에 적용할 수 없다.

## WTO와 환경협정 :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WTO 무역체제와 "녹색" 무역조치는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WTO 협정과 다양한 국제 환경협정 및 협약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현재 WTO 영역 밖에서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는 약 200여 개의 국제협정이 발효중인데, 이들은 다자간환경협정(MEAs :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으로 불린다.

이들 협정 중 약 20여 개의 협정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제품의 교역을 금지하거나 교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들 중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위험 폐기물의 국제 교역 혹은 국경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이 있다.

요컨대, WTO의 무역환경위원회는 WTO의 기본원칙인 비차별성과 투명성이 환경협정하에서 취해진 조치를 포함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역조치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이 위원회는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들이 각국 정부가 국내 환경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다.

위원회는 환경협정을 통해 국제적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이야말로 무역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는 WTO의 작업을 보완한다고 설명한다. 즉, 국제 환경협정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한 국가가 자국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타국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후술 새우-바다거북 사례 및 돌고래-참치 사례 연구 참조)

위원회는 특히 무역이 환경문제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보호 목적의 조치가 환경협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무역제한만이 사용 가능한 유일한 조치가 아니며, 항상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아닐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 관련 국가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획득 지원, 금융지원 및 훈련 제공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국제 환경협정에 따라 취해졌으면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GATT-WTO 체제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가 없다. 관련 국가들이 특정 환경협정에 가입한 경우라면, 비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그 환경협정하에서 취해진 조치가 WTO에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무역환경위원회는 환경협정 가입국가가 동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타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환경협정을 발동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도하 아젠다 협상 참조

## 분쟁 : 어디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

어느 국가가 WTO 영역 밖의 환경협정에 따라 무역조치(예를 들어 세금 부과 또는 수입 제한)를 취하고 다른 국가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분쟁을 WTO 협정에 따라 다루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협정에 따라 다루어야 할 것인가? 무역환경위원회는 특정 환경협정에 의해 취해진 무역조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분쟁당사국 양측이 모두 동 협정에 가입한 경우라면 양 당사자는 환경협정을 원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국 중 한 국가도 그 환경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유일한 장은 WTO가 될 것이다. 해당 환경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을 선호한다고 하여 환경 이슈가 WTO의 분쟁에서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TO 협정에 의하면 분쟁을 검토하는 패널이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WTO 분쟁 사례 : '새우-바다거북' 사건

이 사건은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태국이 미국을 제소한 사례로서 1998년 11월 6일 상소기구 및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공식명칭은 “미국의 특정 새우 및 새우 제품 수입 금지”이며, WTO 공식 사건번호는 58, 61번이다.

###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인가?

일곱 종이 있다고 알려진 바다거북은 열대 및 아열대지방에 걸쳐서 서식하고 있으며 육지에 서 먹이를 구하거나 알을 낳기 위해 바다로 이동하며 생애를 보낸다.

바다거북은 이미 인간에 의해 직접적(고기나 껍질 그리고 알을 뺀 것) 혹은 간접적(우발적 포획, 거주지 파괴, 해양 오염)으로 피해를 입어 왔다.

1997년 초반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태국은 미국이 특정 새우 및 새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한 것에 대해 공동 제소하였다.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것이 금지 조치의 핵심이유였다.

1973년 미국 멸종위기 동물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은 미국 해협에 나타나는 바다거북 다섯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한 위협을 받는 종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영해 및 공해에서 바다거북에 “위해를 가하는” 조치를 금지하였다. (“위해를 가한다” 함은 괴롭히거나 사냥 및 포획을 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함)

이 법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새우 트롤 어부들에게 바다거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한 어업지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어망에 “바다거북 탈출 장치(TEDs : turtle excluder devices)”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1989년 발효된 미국 공법(公法) 제101-102(제609조)는 바다거북에게 해를 끼치는 조업기술로 포획된 새우는 규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우 포획국의 우발적 바다거북 포획률이 미국과 유사하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포획국의 어획 환경상 바다거북에 대해 특별한 피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금지시켰다.

자국의 관할권 내에 상기 다섯 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를 보유하고 기계장치를 통해 새우를 포획한 국가들이 미국 내로 새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인증 받고자 한다면 미국과 유사한 요건을 자국의 어부들에게 부과하여야 했다. 이는 바다거북 탈출 장치를 항상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였다.

## 상소기구가 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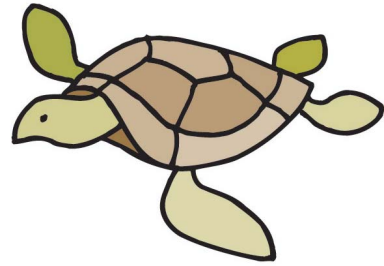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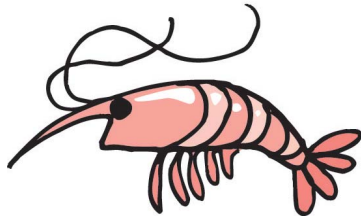
‘...우리는 WTO 회원국인 주권국가가 바다거북과 같은 멸종 위기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 분명히 주권국가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야만 한다...’

### 법적으로 말하자면..

패널은 미국이 부과한 수입 금지 조치가 GATT 제11조(수입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에 합치되지 않으며 GATT 제20조(환경적인 이유를 포함하는 일반적 예외)를 통해 GATT 규정의 예외 허용)하에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g)항에 문리적으로는 해당되나 제20조(일반적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의 상위문장의 요건은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미국의 조치는 GATT 제20조(엄격히 말하자면, “GATT 1994”,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해 수정 보완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원심 패널은 미국의 (이행) 조치를 검토했는데 그 조치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패널보고서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의 조치가 GATT 1994의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패널보고서를 확정하였다.



### 판결

상소기구는 그 보고서에서 WTO 규정하에서 국가들이 환경(특히 인간, 동식물의 건강 및 멸종 위기 종과 고갈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WTO가 회원국에게 이러한 권리를 “허락”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 보고서는 비차별주의와 같은 특정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WTO 무역규범의 다양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GATT 제20조에 따라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예외로 정당화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이 패소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환경 보호 조치를 취해서가 아니라 WTO 회원국들간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주로 카리브 연안의 서반구 국가들에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했고 그 지역 어업자에게 바다거북 탈출 장치를 사용하기 전 유예 기간을 더 오래 부과했다.

한편 미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한 아시아 4개국(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과 태국)에 대해서는 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판결은 또한 WTO 패널이 NGO나 다른 이익집단들 등 법정 조언자에 의한 “의견서(amicus brief)”를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결정하지 않은 사항들...’

다음은 상소기구 판결 내용 중 일부분이다.

“185.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 상소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을 재차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환경의 보호와 보존이 WTO 회원국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또한 우리는 WTO 회원국인 주권국가가 바다거북과 같은 멸종 위기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결정하지 않았다. 분명히 취할 수 있고, 취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권 국가들이 양자적, 복수적, 혹은 다자적으로 WTO 내에서 혹은 국제 무역의 장에서 멸종 위기의 종을 보호하거나 혹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결정하지 않았다. 분명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186. 이번 상소에서 우리가 결정한 바는 간단하다. 즉, 비록 미국의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취한 조치가 GATT 1994의 제20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제20조의 상위 문장의 요건에 위배되어 WTO 회원국은 서로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설명된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에서든지 이 조치는 GATT 1994의 제20조에 의해 인정되는, 정당한 환경 목적을 수반하는 동시에 동등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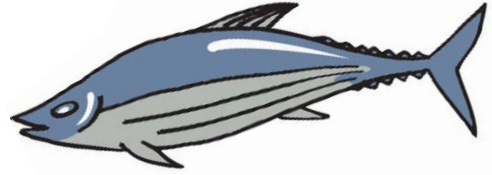


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을 형성하거나 국제 무역에서 위장된 제한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허용되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미국 가솔린 사건(1996년 5월 20일, WT/DS2/AB/R, 30쪽)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하의 의무를 준수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 환경 보호 목적의 국내정책을 채택할 자유가 있다.”

**GATT 분쟁 : 돌고래-참치 사례 연구**

이 사건은 환경분쟁에 대한 합의 때문에 현재에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구 GATT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핵심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환경규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가?
- 무역규범이 (상품 자체의 특성이 아닌) 상품의 생산 방법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인가?**

동태평양 열대지역에서 황다랑어 떼는 보통 돌고래 떼 바로 아래에서 헤엄친다. 건착망을 이용하여 참치를 잡을 때 돌고래도 그물망에 포획되며, 놓아주지 않으면 대부분 죽게 된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은 자국 어선단 및 태평양 연안에서 황다랑어를 포획하는 다른 나라 어선단에 대하여 돌고래 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에 참치를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법이 규정한 돌고래 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로부터의 모든 참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분쟁에서 멕시코는 참치 수출국이었으며, 멕시코의 대미 참치 수출은 금지되었다. 멕시코는 1991년 GATT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하였다.

수입금지 조치는 멕시코에서 참치를 수입,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 처리국”에도 적용되었다. 이 분쟁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적용된 “중간 처리국”은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이며, 초창기에는 프랑스, 네덜란드령 안틸리스제도, 영국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 외에 캐나다, 콜롬비아, 한국, ASEAN 국가 등이 “중간 처리국”에 해당되었다.

**패널**

멕시코는 1991년 2월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다수의 “중간 처리국”들 또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패널이 1991년 9월에 GATT 회원국들에게 보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은 참치 생산과정에 대한 멕시코의 규정이 미국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멕시코산 참치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수입 참치의 품질 또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자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품” 대 “제작과정” 이슈로 알려졌다.
- GATT 규범은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거나 천연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 자국법을 다른 국가내에서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it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첨언. 패널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현행 WTO 체제하에서는 (분쟁해결기구에 참가한) WTO 회원국들이 컨센서스를 이뤄 60일 이후에도 패널보고서를 기각하지 않으면, 해당 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수용(“채택”)된다. 하지만, 과거 GATT 체제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멕시코가 이 건과 관련된 절차를 계속 밟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패널보고서는 일부 “중간 처리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았다. 멕시코와 미국은 GATT 체제 밖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양자 협의를 개최하였다.

1992년 유럽연합(EU)의 제소로, 1994년 중반 제2차 패널보고서가 GATT 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 이 보고서는 제1차 패널의 판결 중 일부를 재확인하고, 일부는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이 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지만 미국은 일련의 GATT 이사회 회의와 GATT 체약국(회원국)들간의 마지막 회의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보고서가 채택되기 위해 GATT 체제하에서 요구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1995년 1월 1일 GATT는 WTO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판결의 배경에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만약 미국의 주장이 수용되었다면, 어떠한 국가라도 수출국이 자국과 상이한 환경, 보건 및 사회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실상 한 국가가 자국 기준을 국내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 자국기준을 부과하기 위해서도,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호주의적 목적을 지닌 남용 사례가 만연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무역규범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주된 목적과 상충되는 것이다.



패널의 임무는 그 정책이 환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GATT 규범이 어떻게 특정 문제에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는 데에 국한되었다.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련된 규범을 수정하거나 의무문제에 합의한다면, 미국의 정책은 GATT 규범과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패널은 밝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국들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도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패널은 또한 참치 제품에 대해 “돌고래 안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구입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미국정책에 대한 심판도 요청을 받았다. 패널은 이에 대해 동 마크는 수입품, 국산품의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참치 제품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 관행을 예방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GATT 규범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환경 라벨링 (Eco-labelling) : 차별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중요한 환경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WTO에 있어서 핵심은, 마크의 부착 요건 및 그것의 실행 관행이 교역 상대국간에 (최혜국대우 적용), 그리고 국내 상품 및 서비스와 수입 상품 및 서비스간에 (내국민대우 적용),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환경위원회가 향후 논의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는,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규범에서 (제품 그 자체와 구분하여)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인지를 표기하는 라벨 부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투명성 : 과도한 서류작업 없는 정보제공**

비차별 원칙과 함께, 투명성 원칙은 중요한 WTO 원칙이다. WTO 회원국은, 자국이 채택하고 있는 환경 정책이나 시행예정인 조치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WTO에 통보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 작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책에 대해 요구되는 것보다 더 과중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역환경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WTO 규범이 수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WTO 사무국은 회원국이 중앙통보등록처(Central Registry of Notifications)에 제출한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모든 WTO회원국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 하고 있다.

## 국내에서 금지된 상품 : 위험 화학물질 등

이는 일부 유해하거나 독성을 지닌 물품의 환경 또는 공중보건상 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채 자국 시장에 그러한 물품이 수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다수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이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품목의 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국제 협정(예를 들어,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국제 무역시 화학 물질의 정보 교환에 관한 런던 지침(London Guidelines for Exchange of Information on Chemicals in International Trade)) 등이 존재한다. WTO 무역환경위원회는 이러한 여타 국제협정과 중복된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고자 하며, WTO가 이들의 작업에 대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자유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 무역과 환경 모두에 유의

보다 자유로운 무역은 환경 보호에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무역환경위원회는 (우루과이라운드 상의 의무를 포함한)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무역 제한과 왜곡을 철폐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와 환경 모두에 유익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작업을 계획중이다.

## 지적재산권, 서비스 : 추가 연구분야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환경 정책이 무역체제 관련 규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이 두 분야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무역환경위원회는 GATS와 환경보호정책간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회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이, 각 회원국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제품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TRIPS와 생물다양성보존협약(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간의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environment

>도하 아젠다 협상 참조

### 3. 투자, 경쟁, 정부조달 및 무역절차 간소화

WTO 회원국 각료들은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무역 투자 작업반, 경쟁 정책 작업반 및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 등 새로운 3개의 작업반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무역원활화”이슈에 해당된다. 싱가포르 회의에서 이 네 개의 작업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싱가폴 이슈(Singapore issues)”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네 주제는 본래 도하개발아젠다에 포함되어 있었다. 신중히 협상된 지시(mandate)에 따르면 “명백한 컨센서스에 따라 자유화의 세부원칙에 관해 취해질 결정에 기초해서”, 2003년 칸쿤 각료회의 이후에 이 네 주제에 대해 협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컨센서스는 성립되지 않았고, 회원국들은 2004년 8월 1일 하나의 주제인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이 진행되도록 합의하고 나머지 세 분야는 도하 아젠다에서 제외하였다.

>도하개발 아젠다 참조

#### 투자과 경쟁 : WTO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투자와 경쟁정책 문제에 관한 WTO의 작업은 이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보기 보다는 특정한 무역정책 문제에 특정하게 대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그러한 관점을 변경하였다. 각료들은 두 개의 작업반을 설치하여 무역이 어떻게 투자와 경쟁 정책에 관계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토하도록 결정하였다.

작업반의 업무는 분석적이고 탐구적이었고, 명백한 컨센서스 없이는 새로운 규범이나 약속에 대해 협상하지 않았다.

각료들은 또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를 비롯한 다른 국제 기구에서 진행중인 작업을 인정하였다. 이들 작업그룹은 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 관련 문제들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이들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하였다. 1995년 기준 전 세계 상품과 서비스 교역 총액인 61조 달러의 약 1/3이 기업 내부간 교역 - 예를 들면, 모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자회사간의 교역 - 이라는 사실은, 무역이 투자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무역과 투자 및 경쟁정책과의 밀접한 관계는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왔다. 당초 1940년대 후반 이미 상품 무역에 관한 규범과 함께, 투자 및 경쟁 정책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고자 의도하였다. (국제무역기구(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 시도가 무산되면서 투자와 경쟁정책 관련 협정은 완성되지 못했다.)

그동안 GATT와 WTO는 지금까지 이 관계의 특정 부분들을 점증적으로 다루어왔다. 예를 들어 GATS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교역의 유형에는, 해외투자를 통해 현지국에 영업거점을 설치하는, 즉 해외투자를 통해 제공하는 외국 기업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Agreement)에 의하면 수입품을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자의 권리도 투자자의 수출 성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경쟁 정책에 대해서도 투자와 마찬가지로이다. GATT와 GATS는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며, 통신에 관한 규범 및 약속에 대한 원칙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에 관한 협정 모두 반경쟁적 관행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와 이러한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investment  
www.wto.org > trade topics > competition policy



### 정부조달 투명성 : 다자간 규범 제정 논의

WTO는 이미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 있다. 이 협정은 복수국간 협정이며, 현재까지 일부 국가들만 서명한 상태이다. 이 협정은 투명성 및 비차별과 같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각료들의 결정은 두 가지이다. 다자적 성격의 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이고 - 작업그룹은 모든 WTO 회원국을 포함한다. 그 작업반의 작업을 정부조달 관행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작업반은 국내 공급자를 위한 특혜 조치가 비공개적이지 않는 한 검토하지 않는다.

작업반 논의의 첫 번째 단계는 국가별 정책을 고려하면서 정부 조달 관행의 투명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협정에 포함될 의제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government procurement



### 무역원활화 : 새로운 주요 이슈

일단 형식적인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 다른 문제들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규정과 통관절차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상품이 한 국가로 반입되는 지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red tape)를 제거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역 “원활화”의 양대 방안이다.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이 분야와 관련된 WTO 규범의 적용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무역 절차 간소화”에 대한 탐구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을 시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의 결정 이후 관련 협상이 개시되었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trade facilitation



## 4. 전자상거래

새로운 무역 분야인 전자상거래는 전자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에 관한 것이다. 넓게 보아서 이는 통신망을 통한 상품의 생산, 광고, 판매 및 유통을 말한다.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상품의 가장 명확한 사례로는 전화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서적, 음반, 비디오를 들 수 있다.

1998년 5월 20일 제2차(제네바)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전자 상거래에 관한 선언문에서는, WTO 일반이사회가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작업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일반이사회는 1998년 9월 25일 이 프로그램을 착수하기 위한 계획을 채택하여,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TRIPS(지적재산)이사회와 무역개발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및 무역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한편 WTO 회원국들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electronic commerce

### 공식답변

1996년 싱가포르 각료선언에서 핵심 노동기준에 대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키로 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이 기준들을 설정하고 다루는 기능을 가진 기구이며, 우리는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촉진시키는 이 기구의 작업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확인한다. 우리는 무역 증가와 무역 자유화의 확대에 의한 경제 성장 및 발전이 이러한 기준들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노동기준을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각국의 비교우위, 특히 저임금 개도국의 비교우위가 결코 문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WTO와 ILO 사무국이 기존의 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 5. 노동기준 : 컨센서스, 일관성 및 논쟁

노동기준은 노동자들의 대우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 용어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한다 : 즉, 아동 노동의 사용과 강제 노동부터, 노동조합 단결권 및 파업권, 최저 임금, 보건 및 안전 조건, 그리고 근무 시간 등 포괄적 내용을 포함한다.

### 핵심 노동기준에 대한 컨센서스 및 국제노동기구(ILO)에 위임된 작업

모든 WTO 회원국들간에는 결사(association)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및 아동 노동 금지, 그리고 성차별을 포함한 작업장에서의 차별 금지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소수의 “핵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대해 명백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다.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를 노동 기준 협상을 위한 권한있는 적합한 기구임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WTO의 역할을 한정지었다. 현재 WTO의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는 노동기준에 대한 어떠한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두 기관의 사무국은 국제 경제정책 입안의 “일관성”을 기치로 기술적 문제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며, 국제적 집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장차가 큰 상태이다.

### 이 문제가 WTO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논의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WTO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질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이다.

- **분석적 문제** : 한 국가가 노동권에 대해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의 수출이 부당한 우위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국가로 하여금 노동 기준을 낮추도록 만들 것인가? (소위 “바닥을 향한 경주”가 되는 것인가?)

- **대응 문제 :** “바닥을 향한 경주”가 발생한다면, 국가들은 오직 비슷한 노동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만 교역을 해야 하는가?
- **규범 문제 :** 다른 국가가 노동기준을 준수하게끔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정부가 무역 제재를 가하는 것을 WTO 규범이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 **제도적 문제 :** WTO는 노동에 관해 논의하고 규범을 제정하거나, 또는 ILO의 규범들을 포함하여 그 규범들을 집행하기에 적합한 곳인가?

아울러 위의 모든 논점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 무역 조치가 노동 기준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혹은 이것이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의문이 그것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등 다른 기준에 관해서도 이와 유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WTO 협정은 이러한 노동기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으로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현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WTO의 규범과 규율을 통해, 회원국들이 작업조건을 개선하고 각국 노동기준의 “국제적 일관성”(정책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어구)을 확보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 문제가 WTO 체제 안에서는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노동 문제를 WTO 틀 내에서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사실상 저임금 무역 상대국의 비교우위를 저해하려는 선진국의 시도이며, 특히 이로 인해 무역 능력이 저하될 경우 개도국들이 경제발전을 통해 노동기준을 높이는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제안된 기준이 자신들의 경제발전 수준에서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면서, 노동 기준을 다자적 무역협상 무대로 가져오려는 노력은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좀 더 복잡한 법적 관점에서는 ILO 기준과 WTO 협정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 - 예를 들어 ILO의 기준이 WTO의 규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 되는지와 같은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 WTO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WTO에서, 특히 1996년과 1999년에 노동 문제는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 노동 기준을 준수하기로 한다는 점과 이들 기준이 보호주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 각료선언문에 의하면 저임금 국가들의 경제적 우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WTO와 ILO 사무국은 기존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각료회의 의장이었던 싱가포르의 통상산업부 장관(Mr. Yeo Cheow Tong)은 폐회사를 통해, 각료선언문에 따라 노동은 WTO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연하였다. WTO에서 좀 더 많은 노동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위원회나 작업반도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노동 이슈는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제기되었으나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 없이 싱가포르 선언문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작업 프로그램은 21개 주제를 다룬다. 원래의 협상 마감 시한인 2005년 1월 1일은 지켜지지 못했고 그 다음 비공식 마감시한이었던 2006년 말도 지켜지지 못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개시하는데 동의하였다. 특히 현 협정의 이행문제를 포함한, 다른 이슈도 함께 다루도록 하였다. 이 모두를 포괄해서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로 부른다.

협상은 **무역협상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이들 보조기관은 보통 정례 이사회나 위원회 회의의 **“특별회의”** 또는 특별히 만들어진 **협상그룹**으로 구성된다. 작업 프로그램의 여타 작업은 여타 WTO 이사회와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는 회원국들이 나머지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합의할 현황 평가(stock-taking) 회의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는 면화를 포함한 농업 문제에서의 불화로 인해 빠져거렸고, 결국 싱가포르 이슈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후술내용 참조) 싱가포르 이슈와 농업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일반인 사회에서 일련의 결정(때로는 7월 패키지로 불림)이 있는 2004년 8월 1일에서야 이루어졌다. 회원국들은 원래의 협상 마감 시한인 **2005년 1월 1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후 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 협상을 종료할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 역시 실패하였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간 이견을 좁히는데 진전이 있었으나, 일부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고,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2006년 7월 협상을 일시 중단시켰다. 그 후에는 2007년 초에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노력이 집중되었다.

도하 선언문에는 “규범”을 1개 주제로 볼 것인가 3개 주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19~21개 주제들이 있다. 대부분 협상과 관련되는 주제이고 그 외에 “이행”, 분석, 모니터링 등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다음은 선언문의 지시사항(mandate)에 대한 비공식 설명이다. (각 지시사항을 언급하는 선언문의 문단과 함께 나열됨)

### 이행 관련 이슈와 우려사항(제12항)

“이행”은 현 WTO 협정,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생겨난 협정들을 이행하는데 있어 개도국들이 겪는 문제를 간단히 표현한 것이다.

도하 각료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거의 3년간의 힘든 교섭과정중 이 분야보다 더 주목을 끌고 논란이 컸던 분야는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약 100개 이슈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두 갈래의 접근법이 도출되었다.

- 즉시 이행을 목적으로 12개 표제 아래 40여 개 항목이 도하 각료회의 전 또는 회의시에 합의되었다.
- 나머지 대다수 항목은 즉시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도하 각료선언문의 제12항과 함께 이행 관련 별도의 각료 결정에 명시되었다.

이행 결정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자세한 설명은 WTO 웹사이트(www.wto.org)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국제수지 예외 : 개도국이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 개도국들에 적용되는 덜 엄격한 GATT의 조건을 명확화
- 시장접근 약속 : 쿼타 배분에 대한 협의나 협상을 위한 자격을 명확화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Doha Development Agenda

www.wto.org >  
the WTO > General Council

www.wto.org >  
trade topics > Doha Development Agenda  
>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 농업

- 개도국의 농촌개발과 식량안보
- 최빈개도국과 순식량수입개도국
-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
- 관세할당

## 위생 및 식물위생(SP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조치

- 개도국이 다른 나라의 새로운 SPS 조치를 준수하는데 있어 더 긴 기간 부여
- 신규 SPS 조치 발표 시점과 효력발생 시점 사이에 “합리적 기간” 부여
- 동등성 : 식품 및 동식물 관련 건강 보호를 제공하는 타국의 조치가 자국의 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동등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행
- SPS 협정의 재검토
- SPS 관련 국제 기준 설정시 개도국의 참여
- 재정 및 기술 지원

## 섬유 및 의류

- 섬유 및 의류상품 관련, GATT 일반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조기 통합된 품목에 대한 협정 조문의 “효과적” 사용 및 쿼타 철폐
- 반덤핑조치의 억제
- 각국의 새로운 원산지규정에 대한 검토 가능성
- 소규모 공급자 및 최빈개도국에 우호적인 쿼타 제공 및 쿼타 규모 확대 고려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일반적 기술지원 검토
- 가능하다면, 개도국이 새로운 조치에 적응하도록 6개월의 “합리적 기간” 제공
- WTO 사무총장이 국제기준 설정에 개도국의 참여를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독려

##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 상품무역이사회는 협정과 불합치하는 조치의 폐지와 관련, 7년간의 이행기간 연장에 대한 최빈개도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

## 반덤핑(GATT 제6조)

-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한 해에 두 번 이상의 반덤핑 조사 금지
- 선진국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고려할 때 개도국의 상황에 “특별 배려”를 하도록 인정  
한, 개도국을 위한 특별조항(반덤핑 협정 제15조)의 실행 방법
- 덤핑 수입량이 미미한지와 이에 따라 반덤핑조치가 필요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의 명확화
- 협정 이행의 연례 검토 개선

## 관세평가(GATT 제7조)

- 개도국의 협정 이행 마감기한 연장
- 기만행위 처리 : 수출가를 포함한 정보 교환에 있어 협력 방안

## 원산지규정

- 회원국간 통일원산지규정 마련
- 새로운 통일원산지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적용될 가협정 교섭

## 보조금 및 상계조치

- 개도국의 수출 조건부 보조금의 지급 가능 조건인 일인당 GNP 1,000 달러 미만의 조건을 일부 개도국들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검토
- 개도국이 “합법적인 개발 목표”가 있는 프로그램하에서 보조를 제공할 경우, 상계조치나 다른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에 주목
-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조항 검토
- 최빈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금 금지의무 면제 재확인
- 특정 개도국에 대해 이행기간을 연장토록 보조금 위원회에 지시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비위반” 제소 : 실제 TRIPS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기대이익의 상실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TRIPS 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미해결 문제
-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이슈(cross-cutting issues)

- 어떤 개도국 우대조항이 의무적인가? 현재 비구속적 조항들을 의무조항화하는 경우의 함의는 무엇인가?
- 개도국 우대조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방안은 무엇인가?
- 개도국 우대조항을 새로운 협상에 반영할 방안은 무엇인가?
- 선진국이 일반적이고 비차별적 태도로, 즉 선택된 소수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개도국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촉구

## 미결 이행 이슈

- 도하 선언문 제12항에서 다룰 예정

## 최종 조항들

- WTO 사무총장은 개도국의 현행 WTO 협정 이행을 지원하고, 이들이 향후 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WTO 기술지원의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확실히 할 것
- WTO 사무국은 기술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국제기구와 좀 더 긴밀히 협력할 것

이행 결정은, 각료들이 미해결 이행 문제를 다루기 위해 향후 작업 프로그램에 합의한 도하 각료선언문과 연결되어 있다. 각료들은 향후 “미해결 이행 이슈에 대한 협상은 작업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 한 부분”이 된다고 선언했다. 선언문에서 각료들은 이중 접근법을 마련했다. 선언문에 합의된 협상 지침이 있는 이슈들은 해당 지침에 따라 다루어진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Doha Development

Agenda > Implementation Decision Explained

협상지침이 없는 이행이슈는 관련 WTO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우선 사항”으로 다루어진다. 이 기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위해 2002년 말까지 무역협상위원회에 진전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 농업(제13항, 14항)

**농업 관련 주요일자**

협상개시 : 2002년 초

“기본골격” 합의 : 2004년 8월 1일

공식을 비롯한 기타 “자유화의 세부원칙(modalities)”

: 당초 2003년 3월 31일까지였으나,

지금은 2005년 제6차

각료회의(홍콩)까지

각국의 전반적인 약속초안 및 현황 점검 :

당초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까지

최종시한<sup>8)</sup>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 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

(일괄타결의 일부분)

농업협상은 WTO 농업협정 제20조에 의해 2000년 초에 시작되었다. 2001년 11월과 도하 각료회의 개최시까지 121개 회원국 정부는 다수의 협상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협상은 일련의 마감시한도 포함된 도하 선언문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선언문은 이미 수행된 작업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그 목적을 확인·정교화하고 향후 협상을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농업은 2005년 1월 1일(지금은 비공식적으로 2006년 말)을 거의 모든 협상의 타결시한으로 하는 일괄타결의 일부분이다.

이 선언문은 현 WTO 협정에서 이미 합의된, 근본적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무역체제를 수립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재확인한다. 이 프로그램은 강화된 규범, 정부 지원과 농업보호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의 무역에 대한 장애요인과 왜곡을 바로잡고 방지하는 것이다.

결과를 예단함이 없이, 회원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목표로 포괄적인 협상을 할 것을 약속했다.

- 시장접근 : 실질적인 관세감축
- 수출보조금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철폐(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에서, 회원국들은 향후 합의될 기일까지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합의)
- 국내보조 : 무역 왜곡 보조의 상당한 감축(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에서, 선진국들은 도하 아젠다 협정 이행 첫날부터 무역왜곡 국내보조의 20%를 감축하기로 약속)

선언문은 새로운 약속이나 신규 또는 개정된 규범 등, 협상 전반에 걸쳐 개도국 우대를 필수 요소로 하고 있다. 선언문에 따르면, 결과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고 특히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등 개도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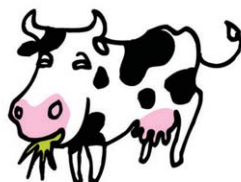
각료들은 또한 이미 제출된 협상제안서에 반영된 비교역적 관심 사항(환경보호,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에도 주목한다. 각료들은 농업협정에 명시된 대로, 협상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고려될 것임을 확인한다.

회원국들은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에 합의함으로써 최종 합의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일반이사회 결정의 부속서 A)

이 협상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special session)”에서 이루어진다.



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agriculture > agriculture negotiations



역주 8) DDA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협상의 타결시한은 2008년 초로서 이하 모든 관련 시한에도 적용된다.



## 서비스(제15항)

도하개발아젠다에 의제로 포함될 당시, 서비스(부문에 대한) 협상은 이미 별도로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GATS는 회원국 정부가 특정 이슈에 관해 협상을 추진하고 서비스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해 후속 협상 라운드에 착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늦어도 1995년부터 5년 내에 시작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초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는 공식적으로 서비스협상을 시작하였다. 2001년 3월 서비스무역이사회는 협상 지침(guidelines)과 절차를 제정함으로써 지시사항(mandate)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를 이행했다.

도하 각료선언문은 이미 수행된 작업 성과를 승인하고, 협상 지침과 절차를 재확인하며, 일괄 타결의 일부분으로서의 협상 종결 시한 등을 포함한 시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협상은 서비스무역이사회 **“특별회의”**와 관련된 부속 위원회나 작업반의 **정례회의**에서 이루어진다.

## 비농산물 시장접근(제16항)

각료들은 모든 비농산물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특히 개도국의 수출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정점, 고관세 및 경사관세를 포함한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상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 및 필요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은 다른 협상국과 일치 또는 완전히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감축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작 단계로서, 협상 참가국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감축할 것인지 “자유화의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도쿄라운드의 경우, 협상 참가국들은 품목 전반(across-the-board)에 걸친 산술적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의 경우, 협상 참가국들은 품목별로 관세감축에 대해 협상하였음) 합의된 절차는 최빈개도국들이 효율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배양 및 연구를 포함해야 했다. 협상 참가국들은 2003년 5월 31일까지 “자유화의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제네바에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 도출 시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2004년 8월 1일 회원국들은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로 목표 시한을 연장하였다.

GATT 체제하의 여덟차례 관세협상을 통해 평균 관세율은 최저 수준에 있으나,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에 비해 “민감”한 품목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정점”과 같이, 특정 관세들은 여전히 교역, 특히 개도국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5% 이상의 관세가 일반적으로 “관세정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역을 제한하는 관세의 또 다른 예는 “경사관세”로, 원재료보다는 반가공품에 대해, 반가공품보다는 완제품에 대해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율은 국내 가공업계를 보호하고 원재료가 생산되는 국가의 가공업 발달을 저해한다.

이 협상은 시장접근 협상그룹에서 이루어진다.

### 서비스 관련 주요일자

협상개시 : 2000년 초

협상 가이드라인과 절차 : 2001년 3월

1차 양허 요청안 제출 : 2002년 6월 30일까지

1차 양허안 제출 : 2003년 3월 31일까지

현황 점검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수정 양허안 제출 : 2005년 5월 31일까지

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

**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

(일괄타결의 일부분)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services > services negotiations

### 비농산물 시장접근 관련 주요일자

협상개시 : 2002년 1월

현황 점검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 비공식적으로 2006년말까지**

(일괄타결의 일부분)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market access > market access negotiations

**지적재산 관련 주요일자**

일반이사회에 강제실시권 및 의약품  
생산능력 부족에 관한 해결책 보고 :

**당초 2002년 말까지였으나  
2003년 4월 30일에 합의 도출**

무역협상위원회(TNC)에 제12항에 따른 미해결  
이행 이슈에 관한 조치 보고 : **2002년 말까지**

(시한 경과)

최종시한 -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에 관한 협상  
(포도주 및 증류주)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까지**  
(시한 경과)

도하 선언문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협상의 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 비공식적으로 2006년 말까지**

최빈개도국의 의약품 특허 조항 적용 시한 :  
**2016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17~19항)**

TRIPS와 공중보건 선언문을 통해 각료들은 기존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공중보건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TRIPS 협정을 이행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각료들은 이 주제에 대해 별도의 선언을 했다.

TRIPS와 공중 보건에 관한 별도 선언문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대해 TRIPS가 내포하는 의미에 대한 우려 사항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선언문은 TRIPS 협정은 회원국들이 공중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선언문은 회원국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협정을 적용하는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별도 선언문에서는 회원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 특히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ing)과 병행수입(parallel importing)에 대한 유연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WTO 사이트의 TRIPS 페이지 참조)

이 별도 선언문은 도하 아젠다에 두 개의 구체적인 과업을 설정하고 있다. TRIPS 이사회는 회원국들의 의약품 제조 능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 실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2002년 말까지 일반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2003년 8월에 해결, “제2장 협정”의 지적재산 부분 참조) 또한 이 선언문은 최빈개도국의 의약품 특허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시한을 2016년 1월까지로 연장하였다.

**지리적 표시 - 등록제도** 지리적 표시는, 제품이 특정한 장소에서 만들어짐으로써 가지게 되는 특징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명(일부 국가에서는 장소와 관계가 있는 단어도 포함)이다. WTO TRIPS 이사회는 이미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위한 다자적 등록제도에 관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도하 선언문에서는 협상 시한을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로 설정하였다.

이 협상은 TRIPS 이사회의 “특별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지리적 표시 - “높은 수준의 보호”를 여타의 제품으로 확대** TRIPS 협정은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관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많은 회원국들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다른 제품들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협상하기를 원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으며, TRIPS 이사회에서는 TRIPS 협정 관련 조항이 포도주와 증류주 이외의 품목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협상 지침(mandate)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도하 선언문에서는 이행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선언문의 제12항에 근거하여 TRIPS 이사회가 이 문제를 다룰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제12항은 다음의 이중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a) 이 선언문에서 구체적인 협상지침(mandate)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 관련 이행 이슈는 그러한 지침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b) 여타 미해결 이행 이슈는, 관련 WTO 기구에 의해 우선순위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들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위해 2002년 말까지, 이 선언문 제46항 이하 절에 따라 설립된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on Committee)에 보고해야 한다.”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일부 회원국 정부들이 이러한 지침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표명하는 문서들을 회람했다.

아르헨티나는 “(b)에 언급된 여타 미해결 이행 이슈의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002년 말까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가리아, 체코, EU, 헝가리, 인도, 리히텐슈타인, 케냐,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스위스, 태국, 터키 등은 당장 협상을 하도록 하는 분명한 지침이 있다고 주장했다.

**TRIPS 조항의 검토** TRIPS 이사회에서는 식물·동물 발명의 특허성(patentability) 또는 비특허성(non-patentability)과 식물변종의 보호에 관한 제27조 3항(b)에 대한 검토와, 제71조 1항에 따른 TRIPS 협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도하 선언문에서는 이들 검토 및 다른 이행 이슈에 대한 TRIPS 이사회 작업이, TRIPS 협정과 국제연합(UN)의 생물다양성보존협약과의 관계,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의 보호, 그리고 TRIPS 협정 검토 과정에서 회원국 정부가 제기한 새로운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문제에 대한 TRIPS 이사회 작업은 TRIPS 협정의 목적(제7조)과 원칙(제8조)에 준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개도국들의 개발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언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intellectual property

### 네 개의 '싱가폴' 이슈 : 협상의 부재

2001년 도하 선언문은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그리고 무역원활화에 대한 협상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다. 이 선언에 의하면 "각료회의 제5차회의에서 명백한 컨센서스에 따라 자유화의 세부원칙(modalities) (즉, 협상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가)에 대해 취해질 결정에 기초해서, 이 이슈들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네 가지 주제에 대해 협상하는데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2004년 8월 1일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세 주제들은 도하 아젠다에서 제외되었다.

### 무역과 투자 관련 주요일자

지정된 의제들에 대한 작업반의 작업 지속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까지

협상 : 자유화의 세부원칙에 대한 "명시적인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이후

최종시한 : 일괄타결의 일부분으로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8월 1일 결정에 따라  
도하 아젠다에서 제외

### 무역과 경쟁정책 관련 주요일자

지정된 의제들에 대한 작업반의 작업 지속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까지

협상 : 자유화의 세부원칙에 대한 "명시적인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이후

최종시한 : 일괄타결의 일부분으로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8월 1일 결정에 따라  
도하 아젠다에서 제외


## 무역과 투자와의 관계(제20~22항)

이것은 "싱가폴 이슈"의 하나로,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설립된 작업반이 이 주제를 연구해왔다.

싱가폴 각료선언문은 2003년 각료회의까지 이번 작업반이 이 이슈의 정의 및 범위, 투명성, 비차별성, 협상된 약속을 준비하는 방법, 개발조항, 예외사항 및 국제수지 세이프가드, 협의와 분쟁해결 등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협상된 약속(negotiated commitments)은 서비스 협정에서 이루어진 방식을 따라, 광범위한 약속을 하고 예외목록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포지티브 방식")할 것이다.

또한 이 선언문은 투자국과 투자대상국간 이익균형을 도모할 필요성, 국가들의 투자 규제 권한, 개발, 공익 및 개별 국가의 특수 상황 등과 같은 다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또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위한 지원 및 기술협력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등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04년 8월 1일의 결정 이후 이 주제는 도하 아젠다에서 제외되었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investment 

##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관계(제23~25항)


이것은 두 번째 "싱가폴 이슈"로, 1996년 설립된 작업반이 이 주제를 연구해왔다.

싱가폴 각료선언문은 2003년 각료회의까지 작업반이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지시하고 있다.

- 투명성, 비차별성, 절차적 공정성,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 즉, 공식적으로 형성된 카르텔)에 관한 조항 등 핵심원칙
- WTO 회원국 정부들간의 경쟁 정책에 관한 자발적인 협력 방법
- 능력배양을 통해 개도국이 경쟁 제도를 점진적으로 재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이 선언문에 의하면 그러한 작업은 개발 관련 수요(developmental need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발 관련 수요는 개도국들이 다양한 개발 목표에 대해 보다 긴밀한 다자협력이 가지는 함의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분석 및 개발 등의 주제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와 같은 기구와의 협력도 포함된다.

2004년 8월 1일 결정 이후 이 주제는 도하 아젠다에서 제외되었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competition policy 




## 정부조달의 투명성(제26항)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설립된 작업반이 다룬 세 번째 “싱가폴 이슈”가, 바로 정부조달의 투명성이다.

도하 선언문에 의하면, “이 주제에 관한 협상은 투명성 측면에 한정되어야 하며, 국가들이 국내공급품 및 국내공급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복수국가간 협정인 정부조달 협정과는 별도의 것이다.

이 선언문은 또한 개발 관련 사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2004년 8월 1일 결정 이후 이 주제는 도하개발아젠다에서 제외되었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government procurement

## 정부조달(투명성) 관련 주요일자

지정된 의제들에 대한 작업반의 작업 지속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까지**

협상 : 자유화의 세부원칙에 대한  
“명시적인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이후**

최종시한 : 일괄타결의 일부로서  
**2005년 1월1일까지였으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8월 1일 결정에 따라**  
도하 아젠다에서 제외


## 무역원활화(제27항)

1996년 각료회의를 통해 시작된 네 번째 “싱가폴 이슈”는 무역원활화이다.

이 선언은 “통과증인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및 반출, 통관에 대한 촉진과, 이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과 능력배양의 강화 필요성”을 인정한다.

1997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작업해 온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2003년 제5차 각료회의까지의 기간 동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그리고 제10조(무역 규정의 공포 및 운영)의 관련 측면을 검토하고, 적절할 경우 이를 명료화하고 개선해야 하며, 회원국들, 특히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들 쟁점 사항은 간쿤의 교착상태를 해소했던 2004년 8월 1일 결정에 열거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나 세 개의 다른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trade facilitation

## 무역원활화 관련 주요일자

지정된 의제들에 대한 상품 이사회의 작업 지속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까지**

협상 : 2004년 8월 1일 합의 도출된 협상 세부원칙에 대한 “명시적인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이후, 2004년 8월 1일 협상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

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 **비공식적으로 2006년 말까지**  
(일괄타결의 일부분)



###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주요일자

협상개시 : 2002년 1월

현황점검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 비공식적으로 2006년 말까지

(일괄타결의 일부분)

### WTO 규범 : 반덤핑 및 보조금(제28항)

각료들은 반덤핑(GATT 제6조) 및 보조금협정에 대해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의 목표는 이 협정들의 기본, 개념, 원칙을 지키고,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는 가운데, 규율을 명료화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여러 협상단계에서, 참가국들은 우선 협상의 다음 단계에서 이 두 협정의 어떠한 규정이 명료화되고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언급하였다. 각료들은 특히 수산보조금 부문이, 개도국에게 있어 중요하며, WTO 규율을 명확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언급하였다.

이 협상은 규범 협상그룹에서 이루어진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antidumping  
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지역무역 관련 주요일자

협상개시 : 2002년 1월

현황점검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 비공식적으로 2006년 말까지

(일괄타결의 일부분)

### WTO 규범 : 지역무역협정(제29항)

WTO 규범에 의하면, 지역무역협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규범의 문구에 대한 해석에는 논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문구해석이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주요 작업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1995년 이후 이 위원회는 개별 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실패해 왔다.

대부분의 회원국이 지역무역협정의 당사자이거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또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중대한 도전이다. 도하 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 이러한 협정이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참작하여 해결책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도하 선언문은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되는 현행 WTO 규정의 규율과 절차”를 명료화하고 개선하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하고 협상시 지역무역협정의 개발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부여(mandate)하였다.

이 협상은 도하 각료선언문에 따른 거의 모든 협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시한을 따라야 한다. 당초 최종시한인 2005년 1월 1일은 이미 경과하였고, 현재의 비공식적인 목표는 2006년 말까지 협상을 끝내는 것이다. 당초 2003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는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며, 필요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이 협상은 규범 협상그룹에서 이루어진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goods > regional trade agreements



## 분쟁해결에 대한 양해(제30항)

1994년 마라케쉬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정부에게 WTO 협정 발효후 4년 내에(즉, 1999년 1월 1일까지) 분쟁에 대한 양해(DSU :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분쟁해결에 관한 WTO 협정)의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부여하였다.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는 1997년 하반기에 검토를 시작하여, 제안서 및 회원국들이 확인한 쟁점을 기초로 일련의 비공식 협의를 개최했다. 전체 회원국은 아니지만, 많은 회원국들이 분쟁해결 양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분쟁해결기구(DSB)는 검토 결과에 대해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했다.

도하 각료선언문은 협상을 지시하도록 하면서 이것은 일괄타결의 일부가 아니라고 명시했다(제47항). 이 협상은 도하 각료선언문이 지시한 다른 협상의 전반적인 성공 또는 실패와 연관되지 않을 것이다. 당초 최종시한은 2003년 5월까지였으나, 협상은 시한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 협상은 분쟁해결기구의 “특별회의(special session)”에서 이루어진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dispute settlement



## 무역과 환경(제31~33항)

### 새로운 협상

**다자간환경협정** 각료들은 현행 WTO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정상에 규정된 특정 무역의무간의 관계에 관한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이 협상에서는 WTO 규범을 환경협정의 당사국인 WTO 회원국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특히 환경협정에 따라 취해진 무역 조치와 WTO 규범간의 관계를 어떻게 명료화할 것인지에 대해 다룬다.

지금까지는 환경협정에 의거하여 취해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GATT-WTO 체제하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정보교환** 각료들은 다자간환경협정 사무국과 WTO 사무국간의 정기적 정보교환 절차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무역환경위원회는 다자간환경협정상의 무역관련 조항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각 다자간환경협정 사무국과 1년에 한두 차례 정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교환 절차는 기존의 협력범위를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오퍼버 지위** 대체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WTO가 다른 국제정부기구에 오퍼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재 차단되었다. 이 협상은 WTO에서의 오퍼버 지위 부여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 관련 무역 장벽** 각료들은 또한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예로는 촉매변환장치, 공기정화장치 또는 오수(汚水) 관리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들 수 있다.

### 분쟁 양해 관련 주요일자

협상개시 : 2002년 1월

최종시한 : 당초 2003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 최종시한이 없는 상태(일괄타결과 별도)

### 환경 관련 주요일자

각료들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및 2005년 제6차 각료회의(홍콩)

현황점검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최종시한 :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였으나, 현재 비공식적으로 2006년 말까지 (일괄타결의 일부분)

수산보조금 각료들은 수산보조금에 적용되는 WTO 규범을 명료화하고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산보조금 문제는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수년간 연구되었다. 일부 연구는 수산보조금으로 인해 어업 인구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수산자원이 고갈될 경우, 환경이 손상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개념을 포함하여 이들 이슈에 관한 협상이 무역환경위원회의 “특별회의(special session)”에서 이루어진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시장접근에 관한 협상은 시장접근 협상그룹과 서비스이사회의 “특별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위원회 활동

각료들은, 무역환경위원회가 협상 의제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 대한 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래 분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하였다.

- 시장접근에 대한,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의 환경 조치의 효과
- “Win-win-win” 상황 : 무역제한 및 왜곡을 철폐 또는 감축하는 것이 무역, 환경 및 개발에 모두 이익이 되는 상황
- 지적재산. 각료선언문 제19항은 TRIPS 이사회가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보존협약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명확화하도록 하는 지침(mandate)을 부여하였다. 각료들은 또한 무역환경위원회에게 TRIPS 협정의 관련 조항을 계속 검토할 것도 요구하였다.
-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 요건. 무역환경위원회는 환경라벨링(eco-labelling)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존 WTO 규범이 환경라벨링 정책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공통사항 : 시장접근, “win-win-win” 상황, 지적재산 및 환경라벨링에 대한 작업 수행 시, 무역환경위원회는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 WTO 규범을 찾아내야 한다.
- 일반사항 : 각료들은 무역과 환경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또한 각료들은 회원국이 자국의 환경 검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독려한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environment



## 전자상거래(제34항)

도하 선언문은 이미 수행된 전자상거래 관련 작업을 승인하고, **일반이사회**가 작업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그 진전사항을 제5차 각료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에 의하면, WTO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할 것이다. 도하 선언문은 회원국들이 이러한 관행을 제5차 각료회의까지 지속할 것을 규정한다.



웹사이트  
www.wto.org > trade topics > electronic commerce

## 소규모 경제국(제35항)

소규모 경제국들은 세계무역에 참여하는데 있어 규모의 경제 부재, 제한된 천연자원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도하 선언문은 **일반이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다음 각료회의시까지 소규모 경제국들의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무역관련 조치안을 제시하도록 지침(mandate)을 부여하였다.

## 무역, 채무 및 금융(제36항)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심각한 대외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고, 금융 위기를 겪어 왔다. WTO 각료들은 도하에서, 무역 관련 조치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조사하기 위해 **무역, 채무 및 금융** 작업그룹을 설치하였다. 이 작업그룹은 일반이사회에 보고하고, 일반이사회는 이를 차기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이다.

## 무역과 기술이전(제37항)

WTO 협정상의 다수의 조항들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이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이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술의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WTO 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WTO 각료들은 도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작업그룹 설치를 결정했다. 이 **작업그룹**은 향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고, 일반이사회는 이를 차기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이다.

## 기술협력과 능력배양(제38~41항)

도하 각료선언문의 여러 조항에서, WTO 회원국 정부들은 기술협력과 능력배양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했다. 예를 들어, 무역과 투자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분야에서 기술지원과 능력배양에 대한 지원 강화의 요청(제21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협력과 능력배양”이라는 구체적인 제목하에, 제41항은 도하 각료선언문에서 기술협력에 관한 약속에 대한 모든 관련 참고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제16항(비농산물 시장접근), 제21항(무역과 투자), 제24항(무역과 경쟁정책), 제26항(정부조달 투명성), 제27항(무역원활화), 제33항(환경), 제38~40항(기술협력과 능력배양), 제42항과 제43항(최빈개도국). (서문의 제2항도 열거)

##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일자

진전사항 보고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 소규모 경제국 관련 주요일자

권고안 제출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및 2005년 제6차 각료회의(홍콩)

## 채무 및 금융 관련 주요일자

일반이사회 보고서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및 2005년 제6차 각료회의(홍콩)

## 기술이전 관련 주요일자

일반이사의 보고서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및 2005년 제6차 각료회의(홍콩)

## 기술협력 관련 주요일자

기술지원 기금 80% 증액 : 도하개발아젠다 세계신탁기금(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설립 : 2001년 12월

사무총장의 일반이사회 보고서 : 2002년 12월

사무총장의 각료 보고서 :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및 2005년 제6차 각료회의(홍콩)

이러한 제목하에(제38~41항), WTO 회원국 정부는 각료선언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모든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약속을 재확인했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 약속을 추가했다

- 사무국은, 다른 관련 기관과의 협조하에, WTO 개도국 회원국들이 무역을 빈곤퇴치의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무역 관련 조치를 자국의 개발전략에 포함시키도록 독려해야 한다.
- 도하 선언문에 규정된 아젠다는, 제네바에 상주 대표부가 없는 회원국 및 옵저버(observer) 뿐 아니라, 소규모경제국, 경제취약국 및 체제전환국에도 우선순위를 둔다.
- 기술지원은 일관된 정책의 틀 안에서 WTO와 그 외 다른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2002년 12월 **일반이사회**와 **제5차 각료회의**에서 상기 새로운 약속들의 이행 및 적정성에 대해 보고했다.

**일반이사회**는 WTO 기술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자금조달을 보장하는 계획을 마련하라는 도하 선언문의 지시에 따라, 2001년 12월 20일(도하 각료회의의 1개월) 기술지원 기금을 80% 늘린 새로운 예산안을 채택했고, 천 5백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핵심예산(core budget)을 바탕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세계신탁기금(Global Trust Fund)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현재 2천 4백만 스위스 프랑이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development > technical cooperation & training

#### 최빈개도국 관련 주요일자

보고 : 2002년 7월 일반이사회, 2003년 제5차 각료회의(멕시코) 및 2005년 제6차 각료회의(홍콩)

#### 최빈개도국(제42, 43항)

많은 선진국들이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현재 상당히 낮은 관세나 실질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WTO 회원국 정부는 도하 선언문에서 최빈개도국 상품을 위해 무관세 및 무쿼타(duty-free, quota-free) 시장접근의 목표를 약속했으며 이들 수출품의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회원국들은 최빈개도국들의 WTO 가입 협상을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기위해 노력할 것에도 합의하였다.

일부 기술지원은 특별히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하 선언문은 WTO 기부회원국(member donor)들이 그들의 지원을 상당히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소위원회(WTO 무역개발위원회의 부속기관)는 도하 선언문의 지시에 따라,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의 무역 관련 부분들을 고려하여 2002년 2월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development

## 개도국 우대(제44항)

WTO 협정에는 개도국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특별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별조항은 예를 들면 협정이나 약속의 이행기간의 연장, 개도국의 무역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다.

도하 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 모든 개도국 우대조항들을 강화시키고 더 정교화하기 위해 이 조항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하 선언문은 (이행 관련 이슈 및 관심사항에 관한 결정과 함께) 무역개발위원회가 개도국 우대조항 중 어떤 것들이 강제조항인지를 확인하고, 현재 구속성이 없는 조항들을 강제조항화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고려하도록 지시(mandate)하였다.

이행 관련 이슈 및 관심사항에 관한 결정은 무역개발위원회가 2002년 7월 전까지 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나, 회원국들이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보고 시한이 2005년 7월 말로 연기되었다.

개도국우대 관련 주요일자

일반이사회에 권고안 제출 :

2002년 7월, 2005년 7월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development



## 2003년 칸쿤, 2005년 홍콩

도하 아젠다는 2003년 9월 10~14일간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 이전에 다수의 작업을 종료하도록 결정했다. 각료회의 직전인 8월 30일 TRIPS와 공중보건 이슈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농산물과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한 “자유화의 세부원칙(modalities)”, 분쟁해결 양해 개척 및 개도국 우대에 관한 권고안 등 많은 작업들이 종료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또한 칸쿤에서 종결지를 예정이었던,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다자등록제도에는 합의의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다.

칸쿤에서 많은 중요 쟁점에 대해 협상단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으나, 회원국들은 “싱가폴 이슈” -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상 개시 -와 농업 등 다수의 이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각료회의는 컨센서스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그러나 10개월 후인,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가 “7월 패키지”에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교착상황이 해소되어 무역원활화 협상이 출범하였으나, 3개 싱가포르 이슈는 제외되었다. 협상 일정의 연기는 2005년 1월 1일이라는 당초 협상 종료 시한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비공식적으로, 회원국들은 2005년 12월 13~18일간 개최되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과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한 완전한 “자유화의 세부원칙(modalities)” 등 다음 단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해 말까지 협상을 종료할 것을 비공식적 목표로 하였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he wto > decision making > ministerial conferences









WTO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그룹의 특별한 필요사항을 어떻게 다루는가

### 1. 개관

150여 개 WTO 회원국 중 약 2/3가 개도국이다. 그 수와 세계경제에서 높아지는 위상, 그리고 무역을 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의 증대 등으로 인해 개도국들은 WTO 내에서 갈수록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종종 매우 다른 관점과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구성의 집단이다. WTO는 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사항을 다루기 위해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 WTO 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조항을 갖고 있다
- 무역개발위원회는, 무역과 부채, 기술이전 등과 같은 특정 주제를 다루는 여타 기관과 함께 WTO에서 개도국 관련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주요기관이다.
- WTO 사무국은 개도국에 기술지원(주로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제공한다.

#### 각 협정에 포함된 사항들 : 보다 긴 시간, 보다 나은 조건

WTO 협정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특별한 권리 또는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하는 수많은 조항들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조항” - 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들 중에는 선진국들이 다른 WTO 회원국에 비해 개도국들을 더 유리하게 대우할 것을 허용하는 조항도 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상품무역을 다룸)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있어 - 선진국이 개도국에 양허를 제공할 때 개도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제안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 비호혜적 개념의 조항을 담은 무역과 개발에 대한 특별한 절(제4부)이 있다.

GATT와 GATS는 모두 개도국에 어느 정도의 특혜적 대우를 허용하고 있다.



WTO 협정에서 개도국 관련 여타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개도국의 WTO 협정 이행을 위한 추가 기간 허용(다수의 WTO 협정에 포함)
- 개선된 시장접근을 통한 개도국의 무역기회 증진을 위해 고안된 조항들(예를 들어 섬유, 서비스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국내 또는 국제적 조치들(예를 들어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채택할 때 WTO 회원국들이 개도국의 이해를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들
- 개도국 지원의 여러 수단에 대한 조항들(예를 들어 동식물 안전 기준, 기술 표준 관련 약정의 이행, 국내통신 부분 강화 등)

### 법률 지원 : 사무국 서비스

WTO 사무국에는 WTO 분쟁에서 개도국을 지원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법률 자문관이 있다. 이 서비스는 WTO의 훈련 및 기술협력처(Train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Institute)에서 제공되며, 개도국들은 이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32개 WTO 회원국들이 WTO 법에 대한 자문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의 회원국은 기금을 제공하는 국가와 법률 자문을 받는 국가로 구성된다. 모든 최빈개도국은 자동적으로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회원이어야 한다.

### 최빈개도국 : 특별한 초점

최빈개도국은 WTO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 모든 WTO 협정은 최빈개도국이 가능한한 최대의 신축성 혜택을 받아야 하고 부유한 회원국들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체결된 이래 최빈개도국을 위한 여러 결정들이 내려졌다.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각료들은 “최빈개도국을 위한 행동 계획”에 대해 동의했다. 여기에는 최빈개도국이 다자무역체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원과 선진국들이 최빈개도국의 상품에 대해 시장접근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일 년 후인 1997년 10월 6개 국제기구(IMF, ITC, UNDP, UNCTAD, World Bank, WTO)는 최빈개도국들만을 대상으로 한 합동 기술지원 프로그램인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를 발족시켰다.

2002년, WTO는 최빈개도국들을 위한 작업계획을 채택했는데, 이 계획에는 시장접근 개선, 기술지원 확대, 최빈개도국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일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WTO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작업 지원,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 협상시 보다 신속한 절차 제공 등 광범위한 요소가 담겨있다.

동시에 점점 더 많은 회원국들이 최빈개도국들의 모든 수출품에 대한 관세와 쿼타를 일방적으로 철폐해 왔다.

## 제네바의 '저택' : 상주하는 것은 중요하나 모두에게 쉽지는 않다

WTO의 공식 업무는 주로 제네바에서 이루어진다. 공식 업무만큼 중요한 비공식 접촉도 주로 제네바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제네바 주재 대표부를 두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30여 개 최빈개도국 회원국들 중 오직 1/3 정도만이 제네바에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이들 대표부는 WTO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연합 관련 활동도 담당하고 있다.

제네바에 WTO 본부를 유치하고자 하는 협상의 결과로, 스위스 정부는 최빈개도국들에 사무실 임대료를 보조해 주기로 한 바 있다.

다수의 WTO 회원국들도 최빈개도국 각료 및 수행 직원들이 WTO 각료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development



## 2. 위원회

WTO 내에서 특히 개도국만을 위한 작업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 (1) WTO 위원회 차원의 작업 (본 절에서 다룸), (2) 위원회 지침에 따른 WTO 사무국의 정부 관료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훈련 제공(다음 절에서 다룸)

### 무역개발위원회

WTO 무역개발위원회는 폭넓은 위임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우선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개도국 우대조항들의 이행상황, 기술협력 지침, 무역체제에 개도국들의 참여 증대, 최빈개도국의 지위 등이다.

회원국들도 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역양허 관련 특별 프로그램과 개도국간의 지역협정을 WTO에 알려야 한다. 무역개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통보를 다룬다.

- 선진국이 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해 무역장벽을 낮추어 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 남미공동시장(MERCOSUR),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와 같은 개도국간의 특혜협정

### 최빈개도국 소위원회

최빈개도국 소위원회는 무역개발위원회에 보고하지만 그 자체로도 중요한 기관이다. 여기서 두 가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 최빈개도국의 다자무역체제로의 통합 방법
- 기술협력

이 소위원회는 WTO 협정상의 최빈개도국 우대조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도하 아젠다 관련 위원회들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임무와 작업반들이 추가되었다. 무역개발위원회는 도하 개발아젠다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무역, 부채 및 금융 작업반과 무역과 기술이전 작업반이 설치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제5장 도하 아젠다 참조)

## 3. WTO 기술협력

기술협력은 거의 전적으로 개도국들(그리고 체제전환국들)이 다자무역체제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도록 돕기 위한 WTO의 업무이다. 그 목적은 필요한 제도 설립 지원과 정부관료 훈련이며, 무역정책과 효과적인 협상을 모두 다룬다.

### 훈련, 세미나, 워크숍

WTO는 제네바에서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 훈련 세션을 개설하고 있다. 덧붙여,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워크숍 및 제네바에서의 과정을 포함하여 연간 약 500여건의 기술협력 활동도 조직하고 있다.

주요 대상 국가는 개도국과 체제전환국들이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미나는 또한 아시아, 남미, 카리브해, 중동 및 태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기술협력과 훈련을 위한 자금은 WTO의 정규 예산, WTO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 행사에 관련된 국가나 국제기구의 비용 분담 등의 세 가지 재원을 통해 마련된다.



현재 기술협력과 훈련을 위한 WTO 정규 예산은 7백만 스위스 프랑이다.

회원국에 의한 추가 기여금은 사무국이나 공여국이 관리하는 신탁기금으로 들어가며, 2004년 신탁기금은 2천 4백만 스위스 프랑에 달했다.

1997년에는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에 정보센터간 네트워크를 설립하고자 WTO 조희센터(WTO Reference Centre)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센터들에서는 인쇄본, CD-ROM, 인터넷을 통한 WTO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등의 방식으로 WTO 정보와 문서들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 센터들은 주로 통상부처나 지역조정기구 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40개의 조희센터가 있다.

#### 4. 제기된 문제들

우루과이라운드(1986~94년)는 GATT-WTO 체제의 남-북 정치 관계를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는 비록 당시에도 예외는 있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들간에는 대립적인 경향이 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당시에는 이러한 대립구도가 완화되었으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슈에 따라 이와 다른 형태로 다양한 연합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섬유·의류 및 WTO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이슈 등 일부 이슈에서는 선·개도국간 대립구도가 여전히 분명하며, 개도국들은 아프리카 그룹과 최빈개도국 그룹과 같은 동맹을 만들었다.

다른 많은 이슈에서는 개도국들이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지 않으며 협상에서 반대편에 설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로 다른 개도국 그룹 사이에 여러 개의 다른 동맹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농업과 같은 개도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쟁점들을 간추려보았다.

#### '관세정점' 및 '경사관세' : 이것은 무엇인가?

**관세정점(tariff peaks)** : 현재 대부분의 수입 관세는 아주 낮은 편이며, 선진국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 그래서 정부가 관련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이것이 "관세정점"이다. 이 중 일부는 개도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 만약 어떤 국가가 자국의 가공 또는 제조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 국가는 해당 산업에서 사용되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낮게 책정하고 - 그래서 해당산업의 비용을 줄이고 - 해당 산업의 제품 보호를 위해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높게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 "경사관세"이다. 수입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의 가공정도에 따라 관세를 상승시킬 경우, 수입국은 원자재 생산국의 고부가가치의 수출용 제품의 가공 및 제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경사관세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존재한다. 느리긴 하나, 경사관세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 다자무역체제에의 참여 : 기회와 우려

1986-94년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인 WTO 협정은 개도국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도하 아젠다를 통한 추가적인 자유화는 이러한 기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기회는 이러한 이득 중 하나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 농업무역에서의 근본적 개혁
- 개도국의 섬유 및 의류 수출에 대한 쿼타의 단계적 철폐
- 공산품에 대한 관세감축
- WTO 하에서 관세율 인상을 어렵게 하기 위한 관세 “양허” 품목 수 증대
- 특정 품목의 무역량을 제한하는 양자협정의 단계적 폐지 - 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s)와 같은 “회색지대” 조치는 GATT-WTO 하에서 실제로는 인정된 바 없다.

아울러, WTO 하에서 자유화는 전 세계 GDP를 증대시키고,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전 세계 수요를 촉진시킨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개도국들은 현 협정의 이행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도하 아젠다 의제로 제기했다. 그리고 주요시장에서의 특정 품목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관세(“관세정점”)로 인해 개도국들이 주요 품목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 예로 섬유, 의류, 어류와 어류제품 등에 대한 관세정점 등이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선진국들은 주로 개도국이 수출하는 제품(37%)에 대해, 전체 국가들이 수출하는 제품(40%) 보다 평균적으로 관세를 약간 덜 감축했다. 동시에, 고율의 관세가 때로는 개도국간에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개도국 상호간 무역의 가능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속적 양허(binding)” 적용대상 품목의 무역 비중 증가는 개도국 수출에 안전성을 더 하고 있다.

관련된 다른 이슈는 “경사관세”로, 이는 수입국이 자국의 가공 또는 제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료나 부품에는 낮은 관세를,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도 경사관세 문제는 지속되고 있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특정 품목에 대한 경사관세를 철폐하고 있어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현재, 도하 아젠다에서는 관세정점과 경사관세가 대폭 축소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특혜잠식

개도국들이 염려하는 이슈 중 하나는 특혜의 잠식이다. 일부 개도국들이 선진국들로부터 받아 왔던 기존의 특혜관세가 일반적인 관세의 감축으로 인해 큰 차별성이 없어짐에 따라, 특혜의 효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상적인 WTO 관세 양허와는 달리, 특혜관세는 WTO 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쉽게 바뀔 수 있다. 특혜관세는 수입국의 주도하에 일반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특혜관세 적용대상 무역은, 관세를 쉽게 올릴 수 없는 정상적인 양허관세 적용대상 무역보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정상적 양허관세하의 교역이 더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와 일부 기업은 특혜로부터 이익을 얻어 왔다. 그 이익은 상품마다 다른데 특혜로 인한 이익은 생산자가 특혜를 받는 동안 그 기회를 이용하여, 특혜가 철회된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달려있다.

## 적응능력 : 공급 측면

개도국이 변화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 이지만, 단 그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그렇다. 이는 정책 개발과 거시경제 운용의 개선에서부터 훈련과 투자 증진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치의 복합적 처방에 달려 있다. 최빈개도국은 인력과 자본의 결핍, 빈약한 기간시설, 비효율적인 제도, 그리고 일부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기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 제 7 장 조 직

WTO는 '회원국들에 의해 움직이는' 기구로, 결정은 모든 회원국간의 컨센서스에 따라 이루어진다

### 1. 누구의 WTO인가?

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주요 결정은 각료(최소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짐), 대사 또는 대표단(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짐)들을 통해 전체 회원국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사결정은 보통 컨센서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WTO는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같은 여타의 국제기구와는 다르다. WTO에서는 이사회나 국제기구의 수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다.

WTO 규범이 국가들의 정책을 규율한다면 그것은 WTO 회원국간 협상의 결과다. WTO 규범은 회원국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절차에 따라, 회원국들에 의해 집행된다. 무역제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회원국들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회원국 전체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를 들어 자금 회수에 대한 위협 등을 통해 한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국제기구 조직과 다른 점이다.

150여 개나 되는 회원국들간에 컨센서스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주된 이점은 컨센서스를 통해 내려진 결정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보다 쉽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국들은 주목할 만한 합의를 도출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회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같은 소규모의 집행기구를 창설하자는 제안은 종종 제기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WTO는 회원국들에 의해 움직이는, 컨센서스에 기반한 조직이다.

#### 최고위 기구 :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따라서 WTO는 회원국들이 주인이다. 모든 WTO 회원국들은 각종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원으로, 이를 통해 결정을 내린다. 이 중 최소 매 2년 마다 개최되어야 하는 각료회의는 최고 권위를 갖는다. 각료회의는 WTO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 또다른 견해

'WTO는 느리고 번거로운 의사결정 및 관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120개 이상의 회원국'을 가진 조직은 "전체 위원회"에 의해 운영될 수 없다. 집단관리는 운영의 효율성이나 중요 정책논의에 적합하지 않다.

IMF와 세계은행 모두, 조직의 임원들을 감독하는 이사회를 가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 이사회에 상임으로 참여하며, 의사결정은 가중 투표방식(weighted vot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WTO도 이와 유사한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 소수 회원국의 정치적 지향은 여전히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 제프리 쏿(Jeffrey J. Schott)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워싱턴

####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he WTO > decision making > ministerial conferences

역주 9) 2007년 12월 현재 WTO의 회원국은 모두 151개국이다.



### 투표도 가능하다

WTO는, 투표가 아닌 컨센서스에 따르는 GATT의 전통적인 의사결정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인해 모든 회원국들의 이해가 적절히 반영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국들이 다자무역체제 전반의 이익을 위해 컨센서스에 동참하기도 한다.

컨센서스 도출이 불가능할 경우 WTO 협정은 "1국 1표" 원칙하에 표결을 허용하고 있다.

WTO 협정은 투표를 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다자간 무역협정문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WTO 회원국 3/4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될 수 있다.
- 각료회의는 다자간 협정에 입각하여 특정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를, 회원국 3/4 이상의 찬성으로 면제할 수 있다.
- 다자협정의 규정은 그 성격에 따라 모든 회원국 혹은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이 규정을 수용한 WTO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관한 결정은 각료회의 또는 각료회의 회기간에는 일반이사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위원회

- 시장접근위원회(Market Access)
- 농업위원회(Agriculture)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원회(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섬유감시기구(Textiles Monitoring Body)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Subsidies and countervail)
-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 관세평가위원회(Customs Valuation)
- 원산지규정위원회(Rules of Origin)
- 수입허가위원회(Import licensing)
- 투자조치위원회(Investment measures)
- 세이프가드위원회(Safeguards)
- 국영무역작업반(Working Party on State Trading)

### 차상위 기구 :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의 세 가지 형태

각료회의의 사이사이에 일상적인 업무는 다음 세 기구에 의해 처리된다.

-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이상 세 기구는 사실상 동일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WTO 설립을 위한 협정은 비록 위 세 기구가 서로 다른 위임사항을 갖더라도 이들 기구를 모두 '일반이사회' 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이 세 기구 모두 전체 WTO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구는 각료회의에 그들의 활동을 보고한다.

일반이사회는 WTO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료회의의 업무를 대행한다. 일반이사회는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로,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역정책검토기구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갖는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he WTO > General Council

### 제3순위 기구 : 무역에 관한 주요 분야별 이사회 등

서로 다른 주요 무역 분야를 담당하는 3개 이사회가 더 존재하고, 이들은 자신의 활동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

-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RIPS Council)

각 이사회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이사회들은 각각 WTO 협정의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역시 전체 WTO 회원국들로 구성된다. 이들 이사회는 그 산하에 또 부속기구를 두고 있다. (후술할 상품무역이사회의 각 위원회 참조)

상기 3개 기구 이외에 6개의 다른 기구가 일반이사회에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한다. 그들이 다루는 분야는 이사회보다는 작기 때문에 "위원회(committee)"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전체 WTO 회원국들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회는 무역과 개발, 환경, 지역무역협정, WTO 운영과 같은 이슈들을 다룬다. 1996년 12월에 개최된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을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그룹(working groups)을 만들기로 결정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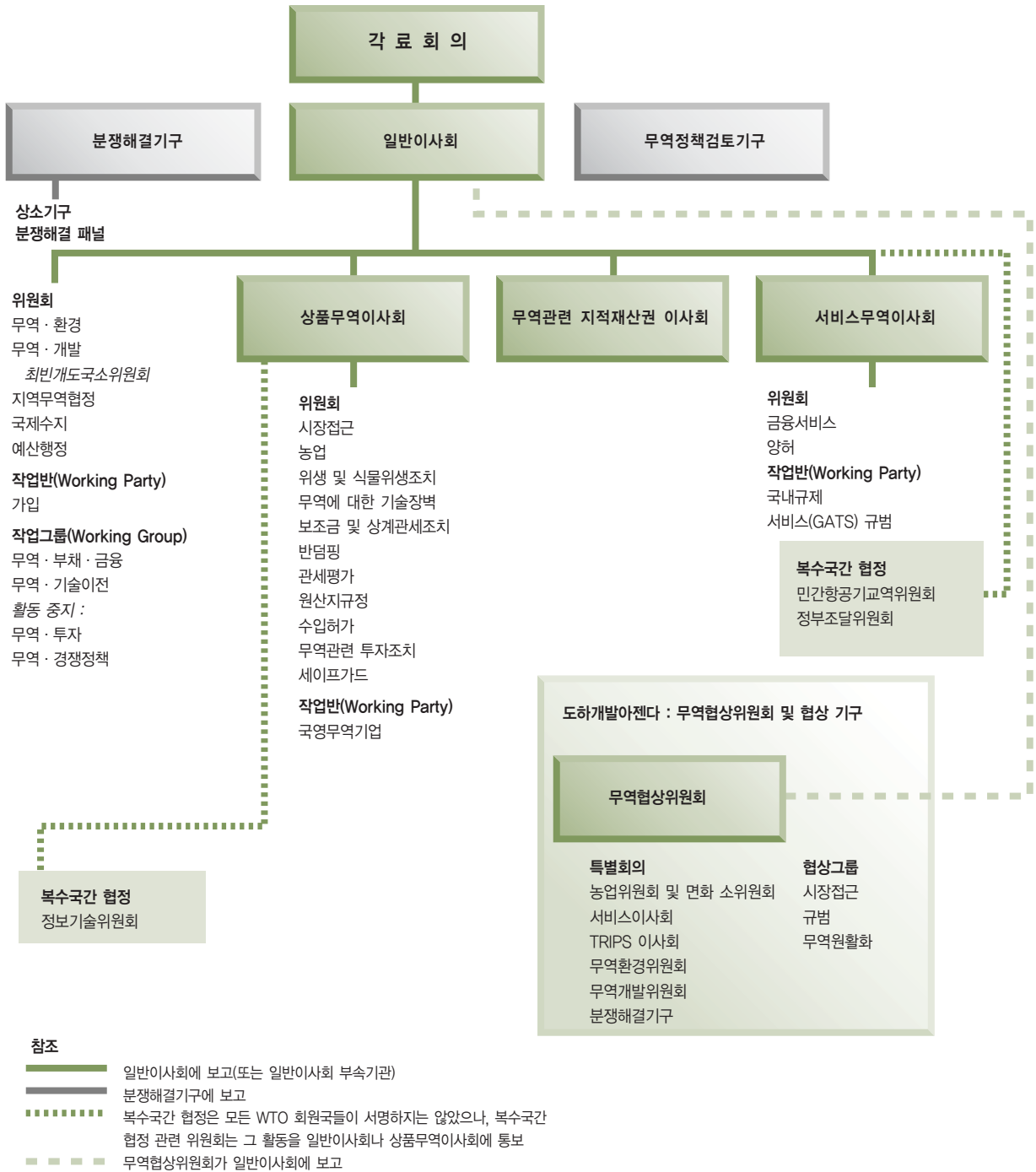
복수국간 협정(WTO 회원국들 중 일부만 서명한 협정)을 다루는 두 개의 부속기구도 그들의 활동을 일반이사회에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 제4순위 기구 : 세부적인 내용

각각의 이사회는 부속기구를 갖고 있다. 상품무역이사회 산하에는 특정 분야(농업, 시장접근, 보조금, 반덤핑조치 등)를 다루는 11개 위원회가 있으며 이들 각각의 위원회도 전체 WTO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또한, 의장 1명과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섬유감시기구(Textiles Monitoring Body)와 통보(notifications)(각국정부는 기존의 또는 새로운 정책 및 조치를 WTO에 통보) 및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 등을 다루는 그룹들도 그들의 활동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 WTO 조직구조

모든 WTO 회원국들은, 상소기구, 분쟁해결 패널, 섬유감시기구 및 복수국간 협정 관련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 참석할 수 있다.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키구로서 개최되기도 한다.



서비스무역이사회 산하기구는 금융서비스, 국내규제, GATS 규범 규정과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이사회와 동급인 분쟁해결기구도 그 산하에 두 개의 부속기구를 두고 있다. 즉, 미해결 분쟁에 대해 판결하는 분쟁해결 “패널” 과 상소(appeals)를 다루는 상소기구가 그것이다.

### ‘수석대표회의(HODs)’와 그밖의 기구들 : 비공식 회동의 필요성

#### 다른 모자를 쓴, 같은 사람?

아니, 정확히 그렇지는 않다.

공식적으로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는 전체 WTO 회원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가 동일하고, 그 차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각기 요구되는 직급이나 전문분야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이사회와 위원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

주 제네바 대표부의 수장(통상적으로 대사)은 대체로 일반이사회급 회의에서 자국을 대표한다. 일부 위원회의 경우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어서, 각국 정부는 수도(首都)에서 해당 회의에 참가할 전문가를 보낸다.

심지어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 등의 경우에도, 많은 대표단들이 각 회의를 담당하는 각기 다른 담당자를 참석시킨다.

앞서 언급한 공식기구에서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그다지 흔하지 않다. 최고위급 이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WTO의 의사결정은 투표가 없는 컨센서스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WTO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협의는 매우 다양한 회원국들을 합의점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체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수석대표회의(HOD : Heads of Delegations)와 같은 비공식 회의는 공식회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해결이 어려운 이슈는 보다 작은 그룹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최근의 보편적인 관행은, 협상그룹 의장이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별 국가 대표단, 또는 2~3개 대표단, 또는 20~30개국 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의 회의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협의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절차의 “투명성”), 모두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절차의 “포괄성”)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그린룸 회의(Green Room)는 실제 회원국 대표단보다 외부에서 쟁점이 되어왔다. “그린룸”이란 사무총장 회의실의 비공식 명칭에서 유래한 문구이다. 이 문구는 20~40개국 대표단들이 참석하는 수석대표급 회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러한 회의는 각료회의장과 같은 어느 곳에서도 개최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 뿐 아니라 회의를 주관하는 각료에 의해서도 소집될 수 있다. 비록 그린룸 회의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특정 개별 주제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의장에 의해서도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협의가 개최될 수 있다.

과거에 회원국들은 그린룸 회의에서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졌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비공식 협의의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각국은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갖는 국가들과 공조그룹(coalitions)을 형성하여 왔는데, 이는 그린룸 회의와 같은 소규모 비공식 협의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농업과 같은 일부 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가가 하나 이상의 공조그룹에 속해있다. 그리고 상당수는 여러 공조그룹에 중첩적으로 속해있다. 이는 각 공조그룹의 조정국, 또는 그 공조그룹의 주요 회원국이 참여하는 회의라면 일부 국가만이 소집되는 비공식 회의라고 할지라도 모든 국가들의 이해가 대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정자들은 그린룸 회의와 같은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여 공조그룹 내에서 논의된 입장을 전달하고, 그들이 속한 공조그룹에 비공식 회의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통보한다. 이러한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투명성”과 “포괄성”이 보장될 수 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결정은 모든 회원국들의 컨센서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회원국들이 모두 모이면 일부 소그룹이 자신들의 의지를 전체에 강요하려는 시도에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국가도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전체 회원국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접근 협상 역시 소규모 회의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다. 최종 결과물은 모든 국가들의 약속을 한데 모은 꾸러미인데, 이러한 약속은 개별 국가들의 이해에 기반한 수많은 양자 협상 및 비공식 교섭의 결과이다. (이러한 예로는 전통적인 관세인하 협상과 서비스분야의 시장접근 협상이 있다.)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비공식 협의가 합의도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공식적인 것이므로 공식적인 조직표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비공식 협의가 공식적인 회의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공식 협의는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식회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공식회의를 통해서 각국은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결정된 내용을 승인하게 된다. 모든 WTO 회원국들이 합의점에 도달하려면 일부 국가들간에 이루어진 타결책이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도록 국가들의 입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웹사이트  
www.wto.org > the WTO > accessions

## 2. 회원자격, 연합 및 행정조직

모든 회원국들은 협상의 결과로써 WTO 체제에 가입했기 때문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이라 함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의미한다.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특혜와 통상규범이 가져다주는 안정성을 향유하게 된다. 그 대가로 회원국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WTO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회원자격 획득(즉, “가입”)과 관련한 협상의 결과이다. 회원자격 획득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국가들은 WTO “옵저버(observer)”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 WTO에 가입하는 방법 : 가입절차

무역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또는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은 WTO에 가입할 수 있으나, WTO 회원국들이 가입조건(terms)에 동의해야 한다. 대략 가입절차는 다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 **첫째, “자국에 대해 설명하라”.** 가입신청국은 WTO 협정과 관련 있는 자국의 무역과 경제정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것을 각서(memorandum) 형태로 작성하여 해당국의 가입문제를 다루는 가입작업반에 제출한다. 이 가입작업반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개방되어 있다.
- **둘째, “시장 개방안에 대해 논의하자”.** 가입작업반이 원칙과 정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에 이와 병행하여 가입신청국과 개별회원국 사이에 양자 협상이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협상이 양자간에 일어나는 이유는 각국의 무역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상은 관세율과 구체적 시장접근 약속,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다룬다. 신규가입국의 이행의무는 양자적으로 협상되더라도 모든 WTO 회원국에게 일반적인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rules)하에서 동등하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이 양자 협상을 통해 WTO 회원국들이 신규 가입신청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출 기회 및 보장 형태의) 혜택이 결정된다. (양자 협상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때로는 이 양자 협상이 전체 다자간 무역협상만큼 커질 수 있다고도 한다.)
- **셋째, “가입조건 초안을 작성하자”.** 가입작업반이 가입신청국의 무역제도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진행된 시장접근에 대한 양자 협상이 완료되면 가입작업반은 가입조건 최종안을 확정한다. 가입조건은 가입작업반 보고서,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라 불리는 회원가입 조약 초안 및 가입신청국의 양허표(“schedules”라 함)에 반영된다.
- **마지막, “결정”.** 가입작업반 보고서, 가입의정서 및 양허표로 구성된 최종 가입안은 WTO 일반이사회나 각료회의에 제출된다. 이 최종안에 대해 WTO 회원국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가입신청국은 가입의정서에 서명하고 WTO 회원국이 될 수 있게 된다. 많은 경우에, WTO 정식 회원국이 되기 전 신청국의 의회나 입법부가 WTO 가입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 협상 주요 4개국(Quad), 협상 주요 5개국(Quint), 협상 주요 6개국(Six) 그리고 ‘이외 그룹’

몇몇 가장 어려운 협상들의 경우 4~6개의 주요 회원국들간의 협상에서 먼저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 우루과이라운드 시절에는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으로 구성된 협상 “주요 4개국(Quadrilaterals, 또는 Quad)”이라는 것이 있었다.

2000년으로 접어들어 도하라운드 시작되면서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브라질, 인도, 그리고 케언즈 그룹의 대표로서 호주도 협상 주요국에 포함되게 되었다. 일본은 스스로의 경제력에 힘입어서 뿐만 아니라, 농업협상에서 G-10의 일원으로서 계속 주요국으로 인정되었다.

2005년 이후로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 인도, 일본, 미국 중 4~6개국은 특히 농업협상에 있어서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협의를 해왔다. 이들은 “새로운 주요 4개국(new Quad)”, “4/5개 관련국(FIPS : Four/Five Interested Parties)”, “주요 5개국(Quint)”, “주요 6개국(G-6)” 등으로 불렸다. 이들 6개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도하 라운드는 2006년 7월 잠정 중단됐다.

그 후로 주요 6개국의 대안으로서 “non-G-6” 또는 “오슬로그룹(Oslo Group)”이라 불리는 일단의 국가들이 타협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국가들은 자신들의 “대안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알파벳 순서와 정반대로 열거되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케냐, 인도네시아, 칠레, 캐나다의 순서로.

### 유럽연합(European Union)인가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ies)인가?

법적인 이유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WTO 관련 사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라고 불린다. 27개의 EU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WTO의 회원국이며 EU는 개별 회원국과는 별개로 그 자체가 WTO 회원이다. 따라서 EU 자체와 EU 개별 회원국을 합치면 총 28개의 WTO 회원국이 되는 셈이다.

각 EU 회원국들이 그들의 입장을 브뤼셀과 제네바에서 조정하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WTO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단독으로 EU를 대표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WTO 관련 문서에서는 각각의 EU 회원국이 아니라 EU를, 법적으로 보다 정확하게는 EC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 특히 EU 회원국간에 법이 서로 다른 경우, EC 자체가 아닌, 그 개별 회원국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 몇몇 분쟁에서 한 EU 회원국의 법이나 조치가 인용되거나 지적재산권(TRIPS) 관련 EU 회원국의 법이 통보되는 때가 그러한 경우다. WTO 위원회의 의장의 경우에도 해당 국적이 언급된다.

### 케언즈 그룹(Cairns Group)

4개 대륙, OECD 국가부터 최빈개도국까지 포괄한다.

- 아르헨티나
- 호주
- 볼리비아
- 브라질
- 캐나다
- 칠레
- 콜롬비아
- 코스타리카
- 과테말라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뉴질랜드
- 파라과이
- 페루
- 필리핀
- 남아프리카공화국
- 태국
- 우루과이

### 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

WTO에서의 업무는 각 회원국의 대표들에 의해 처리되지만, 사실 산업계나 상업계의 일상적인 활동이 그 근본에 있다. 무역정책 및 협상에서의 입장은 대체로 민간기업, 농민,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국의 수도에서 마련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네바 주재 대표부를 가지고 있고, 때때로는 WTO 업무만을 전담하는 대사가 이 대표부의 수장을 맡게 된다. 대표부의 담당관은 WTO 본부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이사회, 위원회, 작업그룹 및 협상그룹 회의에 참석한다. 경우에 따라 특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각국 수도에서 전문가가 직접 오기도 한다.

### 여러 회원국들의 그룹을 대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WTO 내에서 그룹이나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들은 한 대변인 또는 하나의 협상팀을 통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농업협상의 경우, 20여 개가 넘는 동맹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고, 이들 동맹의 대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중에 있다. 개도국이 참여하는 동맹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WTO 내에서의 협상력이 여러 국가에 폭넓게 퍼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및 여타국가로 구성된 G-20은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정치적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 외에도 소속국이 중복되는 수많은 “그룹(Gs)”들이 있으며, 면화부문의 무역개혁을 목적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 간에 구성된 “그룹(C-4 : Cotton Four)”도 있다.

동맹을 구성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통합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 더 많은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시장이 세계 곳곳에 설립되고 있다. 또한 동맹을 구성하는 것은 작은 국가들이 거대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증가시키고, 소규모 회의가 개최될 경우 자신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각 그룹들이 그룹의 공동입장을 제시할 경우, 컨센서스가 좀 더 쉽게 도출되기도 한다. 때때로 이러한 그룹들은 그룹의 공동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형성된다. 그러나 WTO 내에서 그룹의 형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규칙은 없다.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인 그룹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이에 속한 27개 회원국이다. (법적인 이유로, WTO에서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를 공식명칭으로 사용) EU는 단일한 대외무역정책과 관세를 가진 관세공동체이다. EU 개별 회원국들이 브뤼셀이나 제네바에서 입장을 조정하기는 하나, 실제 대부분의 WTO 회의에서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만이 EU를 대표하여 발언한다. EU 회원국들이 WTO 회원국들인 것과 동시에, EU 그 자체도 WTO의 회원국이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에 속한 WTO 회원국 간에는 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다. (ASEAN 회원국인 라오스는 현재 WTO 가입신청중) 그룹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무역 관련 다수의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자신들의 입장을 조정하여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대변인 역할은 ASEAN 회원국들간에 차례로 담당하며, 주제에 따라 여러 국가가 담당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로 구성된 정회원국과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를 준회원국으로 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도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최근의 노력들은 그 구성원들이 WTO 이슈에 대해 단일한 대변인을 가질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예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로 구성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다. 이따금씩 단일성명을 발표하는 여타 그룹으로는, 아프리카 그룹(African Group),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그룹(ACP :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Latin American Economic System, SELA) 등이 있다.

다른 종류의, 잘 알려진 동맹으로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이 있다. 이 그룹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시작되기 직전인 1986년에 농업무역자유화를 주창하며 설립되었다. 이 그룹은 농업협상에 있어 중요한 제3세력이 되었으며, 지금도 활동중에 있다. 이 그룹의 소속국가는 다양하지만, 농업부문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측면에서 더 큰 국가들과 경쟁하기에는 자신들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데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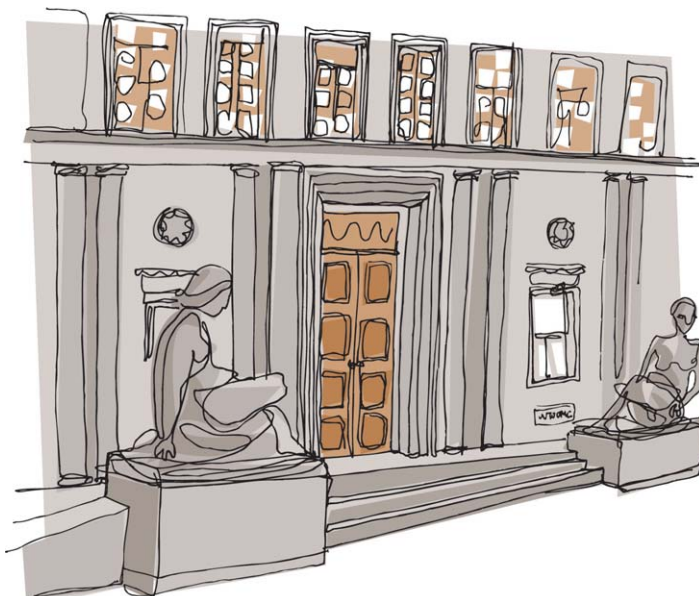
### WTO 사무국과 예산

WTO 사무국은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그 수장으로 사무총장이 있으며, 그 외 630여 명의 직원이 있다.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협정 이행 및 협상을 위한 WTO 하위 기구(위원회, 이사회, 작업반, 협상그룹)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
- WTO 경제학자 및 통계학자를 통한 무역성과 및 무역정책 분석
- WTO 규범 및 판례의 해석과 관련된 무역분쟁 해결과정에서 법률담당자의 지원 제공
- 신규가입국과의 가입협상 처리 및 신규가입을 검토중인 국가에 대한 자문 제공

WTO의 어떤 부서는 특정 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국은 농업 위원회와 SPS 위원회를 지원한다. 또 다른 WTO의 부서는 기술지원, 경제분석, 정보제공 등 WTO 업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WTO의 예산은 1억 6천만 스위스 프랑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개별회원국의 분담금은 WTO 회원국 전체의 무역량 대비 해당 회원국의 무역량 비중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WTO 예산의 일부는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에 배당된다.



### 3. 사무국

WTO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Director General)과 4인의 사무차장(Deputies)에 의해 관리된다. 각 부서는 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들에 직속되어 있다. 다음은 2005년 9월 초 현재 WTO 사무국의 구조이다.

<b>사무총장</b> 파스칼 라미(Pascal Lamy)	<b>사무총장실</b> : (분쟁)상소기구에 대한 행정적 지원 <b>이사회 및 무역협상위원회</b> :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무역협상위원회(DDA) 등 <b>정보 및 언론관계 업무국</b> <b>DDA 특별 업무국</b> : 면화의 개발지원 측면과 일부 DDA 이슈들에 집중
<b>사무차장</b>	<b>총무국</b> : 예산, 재정 및 행정 <b>인사국</b> <b>전산국</b> <b>언어 서비스 및 문서관리국</b> <b>무역환경국</b> : 무역과 환경,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등 <b>무역정책검토국</b> : 무역정책검토, 지역무역협정
<b>사무차장</b>	<b>개발국</b> : 무역과 개발, 최빈개도국 <b>경제조사통계국</b> <b>훈련 및 기술협력처</b> <b>기술협력 감사</b>
<b>사무차장</b>	<b>가입국</b> : WTO 가입 협상 <b>농업 및 1차 산품국</b> : 농업,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등 <b>대외 협력국</b> : 국제기구 및 NGO 및 의전 등과의 관계 <b>지적재산권국</b> : TRIPS, 경쟁 및 정부조달
<b>사무차장</b>	<b>시장접근국</b> : 상품무역이사회, 시장접근, 관세평가, 비관세조치, 수입허가,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 <b>법률국</b> : 분쟁해결 등 <b>규범국</b> :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국영무역, 민간항공기 등 <b>무역과 금융국</b> :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부채 및 금융, 국제수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 관련 이슈, 무역원활화(무역절차 간소화), 무역과 투자 등 <b>서비스무역국</b> : GATS 등



## 4. 특별정책

WTO의 주된 임무는 무역협상 및 협상의 결과로 마련된 다자간 무역규범의 이행(분쟁해결 포함)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뒷받침하는 다음 네 가지의 특별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지원
- 수출증진을 위한 특별지원
- 전 세계적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 회원국이 신규 무역조치를 도입하거나 기존조치를 변경할 경우 정기적인 통보

###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지원

WTO 전체 회원국의 3/4은 개발도상국이다. 현재 시장경제로 전환중에 있는 “체제전환국”과 함께, 이들은 WTO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WTO는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의 특별한 요구나 문제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WTO 사무국의 훈련 및 기술협력처는 WTO의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하고 정부 관료와 협상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일부는 관련 국가에서 개최된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어떤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형태를 갖고 있고, 경우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이 제공되기도 한다.

지원내용은 WTO 가입을 위한 협상과 WTO 의무 이행과 관련되는 내용부터 다자간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안내까지 다양하다.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은 WTO의 여러 기구 참여와 관련되거나 그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역 및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 받는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trade topics  
> development  
> WTO Training Institute

### 수출을 위한 특화된 지원 :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무역센터는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개도국의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1964년 GATT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WTO와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는데 UN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를 통해 이 센터에 관여한다.

국제무역센터는 개도국들의 요청에 따라 수입절차 운영기술은 물론 수출증진 프로그램의 입안 및 이행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센터는 수출시장과 마케팅 기술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수출증진과 마케팅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하는데 지원을 제공한다. 이 센터의 이 같은 지원은 모든 최빈개도국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 전 세계적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WTO

WTO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전 세계적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기타 다자기구와 협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1994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별도의 각료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

이 선언문은 전 세계적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WTO가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선언문은 경제정책의 여러 면들이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WTO가 통화 및 금융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국제기구(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선언문은 무역 자유화가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공헌하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선언문은 전환과정에서 비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지만, 여러 WTO 회원국이 착수하고 있는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성공에 있어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 **투명성(1) : WTO에 지속적으로 통보하기**

많은 경우에 WTO 협정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의무 이행시 WTO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WTO 협정은 회원국 정부가 새로운 무역 관련 조치를 이행하거나 기존의 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반덤핑법 또는 상계관세법,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술 표준,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변경,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 등, 이 모든 것이 관련된 WTO 기구에 통보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나 신규 가입국의 무역정책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 그룹도 설치되어 있다.

#### **투명성(2) :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기**

일반인들은 주로 웹사이트([www.wto.org](http://www.wto.org))를 통해 WTO를 접할 수 있다. 매일 WTO 관련 소식들이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WTO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WTO)”를 포함하여 여러 이슈에 대한 배경 정보와 설명들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WTO 관련 이슈를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재 15만 건 이상 되는 공식 문서를 온라인 문서(Documents Online)를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02년 5월 14일, WTO 일반이사회는 보다 많은 문서들을 회원국에 회람함과 동시에 대중들에게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접근이 제한되는 일부 문서 역시, 접근제한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대중들에게 보다 빨리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투명성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보다 이전인 1996년 7월 18일, WTO 일반이사회는 WTO 활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데 동의하고, 접근제한이 해제된 WTO 문건을 포함한 공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목적은 보다 많은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대중매체는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제네바 상주 기자들에게 모든 주요 회의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거나 이메일 또는 여타 다른 방법으로 세계 각국의 기자들에게 주요 회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한편, 지난 수년간 WTO 사무국은 WTO에 관심을 가지는 비정부기구(NGO)나 국회의원, 학생, 학자 등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해왔다.

2001년 도하 각료회의의 준비 기간 동안 WTO 회원국들은 NGO와 관련된 몇 가지 새로운 활동들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했다. 2002년 WTO 사무국은 모든 주요 WTO 회의에 관한 NGO 대상 브리핑 횟수를 증가시켰고 브리핑 일정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NGO 들은 또한 정기적으로 WTO 사무국에 초청되어 그들의 정책 연구 및 분석을 회원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WTO 사무국은 NGO 입장에 관한 문서를 취합하여 그 목록을 매월 회원국 정부에 정보제공을 위해 배포한다. 월간 전자 소식지는 NGO들에게도 제공되어, 이들이 WTO 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wto.org](http://www.wto.org) > [community/forums](http://community/forums)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2007년 10월 1일 제네바 개최)



우리나라는 WTO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세계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 1. WTO 가입과 그 영향

우리나라는 1967년에 GATT 회원국이 되었으며, WTO 설립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기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자 무역의존도가 GDP의 73%에 이르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WTO 가입을 통해 무역규모를 확대하고 무역상대국을 다양화하여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WTO는 회원국간의 다자무역에 관한 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이러한 협상 결과로 얻어진 협정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하며, 협정 이행과 관련된 회원국간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와 기구를 제공한다.

WTO는 협정 이행 및 분쟁해결 과정을 통해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등 일방주의 억제에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이후 우리에게 대한 미국 및 EC 등 일부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무역보복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무역관련 조치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도 대비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세계화와 개방화를 추진하는 기틀도 마련할 수 있었다.

## 2. WTO 분쟁 사례

2007년 9월 말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분쟁사례는 우리가 제소한 것이 13건, 제소된 것이 11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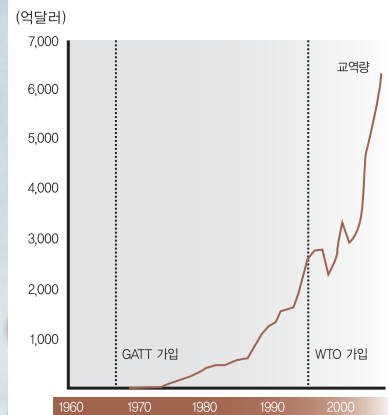
이 중 주요 분쟁사례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가 제소한 사례

- **미국 DRAM 반덤핑 분쟁(DS99)** : 1991년 4월 22일 미국 Micron사가 한국산 DRAM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1993년 4월에 LG전자와 현대전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현대전자와 LG전자는 최종판정 이후 3차례에 걸친 연례 재심에서 계속해서 미소 덤핑마진 판정을 받았고, 세 번째 연례 재심 신청시 반덤핑 관세 철폐를 요청하였으나, 미국 상무부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7년 8월 14일 반덤핑 관세 철폐기간 판정을 WTO에 제소하였고, 패널은 1999년 1월 29일에 미국 상무부 규정상 반덤핑 조치 철폐요건 중 일부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양국은 분쟁해결기구 회의시 1999년 11월 19일까지 판정내용을 이행키로 합의 하였으나, 미국이 관련 조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조치를 계속 유지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6일 분쟁해결기구에서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미 상무부는 이 패널의 심리가 진행중인 2000년 9월 19일에 일몰재심을 통해 현대전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역량

우리나라의 교역량은 1998년 전후의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미국 스테인리스 반덤핑 분쟁(DS179)** : 미국은 1999년 5월 21일과 7월 27일 포항제철의 스테인리스 후판(plate)과 스테인리스 판재(sheet)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1999년 7월 30일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2000년 12월 23일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이유로 미국 측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양국은 분쟁해결기구 회의시 2001년 9월 1일까지 판정내용을 이행키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은 재조사를 통해 2001년 8월 24일 우리 철강회사들의 스테인리스 후판 및 스테인리스 판재에 대한 덤핑마진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판정내용을 이행하였다.
- **미국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DS202)** : 미국은 2003년 3월 1일에 우리나라 탄소강관 수입물량 중 연간 9,0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이라고 2000년 6월 13일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2001년 10월 29일에 할당관세의 기본세율 적용 물량을 수출국간에 할당하는 과정에서 국별 과거 수출실적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할당이 이루어졌고(GATT 제13조 위반), 미국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의 연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b) 위반), 세이프가드조치의 선결요건인 “예상치 못한 상황(unforeseen development)”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GATT 제19조 위반), 세이프가드조치 시행 이전에 관련국에게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치 대상국들에게 이 조치 이전 수준의 양허조건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세이프가드협정 제12.3조 및 제8.1조 위반) 미국 측의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양국의 상소에 따라 상소기구는 2002년 2월 15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WTO 협정 위반 판정을 내렸다. 판정내용 이행기간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29일에 중재절차를 요청하였으며, 2002년 7월 10일 미국 측이 우리에게 양자적인 해결 모색을 제안하여, 2002년 9월 1일까지 판정내용을 이행키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합의 사항을 준수하였다.
- **미국 Byrd 수정법 분쟁(DS217/234)** : 미국 의회가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징수액을 미국내 제소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Byrd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켜 2000년 10월 28일에 동 법안이 발효되자,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21일에 이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EC, 일본, 브라질 등 총 10개국이 공동 제소국으로 참여하였다. 패널은 WTO 협정상 덤핑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치만이 허용되므로, Byrd 수정법은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고, 이 법안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상소기구도 2003년 1월 16일에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판정내용 이행기간에 대해 공동제소국과 미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재절차에 따라 미국이 2003년 12월 27일까지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정이 내려졌으나, 미국은 동 기간까지도 Byrd 수정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동 제소국들은 2004년 1월 15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중재패널이 설치되어 2004년 8월 31일 반덤핑·상계관세 징수액의 72% 수준의 양허정지를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우리나라는 EC,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브라질의 6개 공동 제소국과 함께 2004년 11월 26일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대미 양허정지조치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이후 미국 의회가 2006년 2월 Byrd 수정법을 2007년 10월 1일까지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행문제도 일단락되었다.
-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DS251)** : 미국이 2002년 3월 5일 판재류 등 14개 철강제품에 대해 3년간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하자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20일에 이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EC, 일본, 중국, 브라질 등 7개국이 공동 제소국으로 참여하였다. 패널은 2003년 7월 11일 세이프가드 조치의 선결요건인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unforeseen development)’ 을 입증하지 못하였고(GATT 제19조 위반), 조치대상 중 일부는 조사기간 후반부에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세이프가드 조

치를 취하였으며(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 위반),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 및 제4.2조(b) 위반),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었으나 조치대상에서는 제외되어 동등성(parallelism)이 위배되었으므로(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 미국의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 역시 2003년 11월 10일 패널의 주요 결정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국은 2003년 12월 10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 **미국 DRAM 상계관세 분쟁(DS296)** : 미국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하이닉스 채권단의 구조조정 조치를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2003년 6월 17일 하이닉스 DRAM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30일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2004년 12월 21일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 4개 금융기관을 제외한 채권은행들이 정부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해 하이닉스 구조조정에 참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보조금협정 제1.1조(a)(1)(iv) 위반), 이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여타 요건인 혜택 및 특정성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으며(보조금협정 제1.1조(b) 및 제2.1조 위반), 국내산업 피해 판정시 하이닉스 DRAM 수입에 의한 피해와 다른 요인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으므로(보조금협정 제15.5조 위반) 미국의 조치가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의 상소에 따라 상소기구는 2005년 6월 27일 패널이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관해 여러 개별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관련 사실 조사를 새로이 실시하였기 때문에, 제출된 사실에 따라서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패널의 검토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여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으며,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관한 패널판정 번복에 따라 혜택과 특성성에 관한 패널판정 역시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 **EC DRAM 상계관세 분쟁(DS299)** : EC도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조치를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2003년 8월 22일에 하이닉스 DRAM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5일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2005년 4월 19일, 2001년 5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 것은 보조금협정 제1.1조(a)에 위배되고, 산업은행 등의 자금지원이 혜택(benefit)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보조금협정 제1.1조(b)에 위배되며, EC가 5개 구조조정 프로그램 모두를 현금공여(grant)로 간주하여 상계관세율을 산정한 것은 보조금협정 제1.1조(b) 및 제14조 위반되고, 국내산업 피해 판정시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와 기타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구분하지 않아 보조금협정 제15.5조를 위배한다는 등의 이유로 EC의 조치 중 일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배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 및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등을 보조금으로 취급한 것과, EC가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부정적으로 유추한 것은 보조금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양국은 2006년 4월 3일까지 판정을 이행키로 합의하였으며, EC는 2006년 4월 21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시 판정을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선언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 **EC 조선 보조금분쟁(DS301)** :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업체와 경쟁하는 역내 조선사에 대해서만 6%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EC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2003년 9월 3일에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2005년 2월 10일에 EC 측의 조치가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WTO 분쟁해결절차규정 제23.1조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EC는 2005년 6월 20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시, 시효가 만료된 자국 조치를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판정을 이행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이 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우리나라는 EC와의 조선 피제조 및 맞제조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여 90년대 후반부터 장기간 계속되어 온 한-EC간 조선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일본 김 수입 쿼타 분쟁(DS323)** : 우리나라는 일본의 김 수입 쿼타 제도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2004년 12월 1일에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우리나라는 WTO를 통한 김 수입 쿼타 철폐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적 해결방안도 병행하여 모색하였으며, 일본이 2006년 1월 20일에 한국에 대한 김 수입 쿼타 물량을 향후 10년간 2004년 물량의 5배(1,200만속)로 증량하기로 함에 따라 이 분쟁은 최종 타결되었다.

#### 우리나라가 제소된 사례

- **주세분쟁(DS75/84)** : EC와 미국은 소주보다 위스키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우리 주세제도가 WTO 협정 위반임을 들어 각각 1997년 4월 4일과 1997년 5월 23일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1998년 7월 31일 우리 주세제도가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으며, 상소기구도 1999년 1월 15일 패널의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세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27일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시 판정 내용 이행을 통보하였다.
- **EC 혼합분유 셰이프가드 분쟁(DS98)** : 분유에 대한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혼합분유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자, 우리나라는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를 거쳐 1997년 3월 7일 셰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혼합분유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시행하였다. EC는 산업피해조사의 적정성 및 수량제한조치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1997년 8월 12일 이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패널은 1999년 6월 21일 국내산업 피해 여부 판정시 WTO 셰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제4.2조)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고, 수량제한 조치가 국내 산업 보호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조치가 WTO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도 1999년 12월 14일에 패널의 판정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20일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여 판정 내용을 이행하였다.
-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DS161/169)** : 미국과 호주는 각각 1999년 12월 1일과 4월 13일에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 제도, 수입쇠고기에 대한 표시제 등 수입 쇠고기 유통상의 제약과 축산 보조금 제도가 WTO 규범에 위배된다고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2000년 7월 31일 우리나라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 제도와 수입쇠고기에 대한 표시제도 등의 유통상 제약은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배되며, 한우산업에 대한 보조금 계산방법도 WTO 농업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2000년 12월 11일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구분 판매제도가 WTO 규범에 위배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나, 축산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보조금 감축 약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입제도를 개선하여 2001년 9월 25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판정 내용 이행을 통보하였다.
- **미국 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 분쟁(DS163)** : 미국은 1997년 9월 30일 WTO 정부조달 협정위원회 회의에서 신공항건설공단이 입찰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차별한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이래 이 문제를 양자적으로 제기해오다 1999년 2월 16일에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2000년 5월 1일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담당했던 신공항건설공단 등은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기관이 아니므로 동 협정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 기관들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의 조달조치는 WTO 규범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 분쟁은 우리나라가 피소국으로서 승소한 최초의 사례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여타 WTO 회원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 **EC 조선보조금 분쟁(DS273)** : EC는 2002년 10월 21일에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 정부의 보조금이라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2004년 12월 22일 일반금융기관들의 경우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를 받아 구조조정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출입은행 등 공공성이 인정된 6



개 금융기관 역시 상업적 고려에 의해 구조조정 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대우조선 등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가 WTO 보조금협정상의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각 조선사에 제공한 제작금융 및 선수금환급보증 중 일부는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나, 수출입은행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legal regime), 제작금융 및 선수금환급보증 자체는 보조금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분쟁(DS312)** : 인도네시아는 2004년 6월 4일 자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소하였다. 패널은 2005년 7월 14일 우리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 분쟁은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소된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승소로 인해 **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한 대외공신력이 제고**되고, 향후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추가적인 WTO 제소를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 3.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

WTO에서는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무역 관련 조치나 정책, 또는 법률 등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정기적 통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1996년, 2000년 및 2004년에 WTO로부터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시장개방 확대와 국제규범 및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2004년 무역정책 검토회의시 회원국들은 우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차기 무역정책 검토는 2008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 4. DDA 협상

우리나라는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범세계적인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통일된 무역규범을 강화하여, 보다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동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양자 및 다자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DDA 협상의 주요 쟁점은 농업과 비농산물(공산품 및 임·수산물) 분야 협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분야 이외에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등 협상 전반에 걸쳐 수준높고 균형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 협상 분야별 우리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농업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의 수립이라는 농업개혁의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농업개혁은 개혁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각 회원국의 특수한 사정과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농업개혁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협상이 수입국이나 수출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 전체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해야 하며, 우리에게 큰 이해가 걸려 있는 시장접근 확대와 국내보조 감축의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게 폭과 속도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서비스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그간의 자유화정책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통신·유통·해운 등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는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방을 요청하고, 시청각·법률·교육 등 분야에서는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맞게 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비농산물 시장접근

우리나라는 공산품 주요수출국으로서 공산품 분야의 과감한 관세감축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 및 교역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각국의 평균 양허세율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이중계수의 스위스 공식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비농산물 민감품목인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양허 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14일 현재 실행세율에 일정한 숫자를 더하여(mark-up) 기준세율을 책정하고 이를 관세감축공식을 통해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분야별 무세화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무세화 협상 방식으로 자발적인 방식과 함께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면 무세화의 효력이 발생하는 critical mass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비관세장벽도 도하각료선언의 지침(mandate) 중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하에 비관세장벽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LDC) 우대라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개도국들도 그 능력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규범

### 반덤핑

우리는 WTO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협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WTO 반덤핑협정에 자의적 해석가능성이 남아있고, 수출업자에게 불리한 규정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요 관심 사항으로는 제로잉(zeroing) 금지, 재심절차 개선, 일몰조항(반덤핑 조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종료), 최소부과원칙의 의무적용 등이 있다.

### 보조금

일반 보조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상계관세조치가 수입규제조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강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의 경쟁관계를 감안하여 선진국과 함께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산 보조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고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조금만을 규율하도록 하여 수산 보조금 규율 범위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 제로잉(zeroing)

덤핑마진을 산정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0(zero)으로 간주하여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관행

###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수출업자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덤핑마진**과 수입국 국내산업의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수출업자의 수출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피해마진** 중 작은 것만큼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

현행 WTO 반덤핑협정에는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DDA 협상에서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지역협정

우리나라는 WTO 차원의 지역협정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규정 개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통보 및 정보제공 등 절차 규정, '실질적인 모든 무역거래(substantially all the trade)' 요건의 명확화, 무역구제조치의 역내국 면제, 특혜원산지 기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환경

WTO와 다자간환경협정(MEA)간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우리 공산품에 대해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EU의 도하 선언문 지침(mandate) 확대 해석에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무역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환경상품의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시 무역수지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 최종환경용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환경상품 범위를 제한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 TRIPS

지리적 표시관련 다자등록처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따른 실익이 없고, 구속적 다자등록체제 설립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크므로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의 다자등록체제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지리적표시 보호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명 지리적표시가 없어 확대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축적된 생명공학 기술수준에 비해 유전자원이 부족하므로 국내법상 계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며,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독자적 보호체계 설립과 관련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 무역원활화

우리나라는 통관절차개선 등 무역원활화 규범화(text-based)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 분야별 무역원활화 실질요소 논의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유사한 입장을 가진 그룹(콜로라도 그룹)을 중심으로 지지기반 확대(outreach)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 특별대우(S&D),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TA&CB) 관련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여 개도국의 협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분쟁해결양해(DSU) 개정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분쟁해결양해의 개선·명료화를 통한 다자간 분쟁해결체제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역장벽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분쟁해결제도의 정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패널판정의 신속한 이행확보에 중점을 두어 분쟁해결 양해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실질적인 모든 무역거래(substantially all the trade)' 요건

FTA나 관세동맹 등의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어긋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부분에 대한 관세와 무역장벽 제거 및 감축 등(GATT 제24조)의 제한적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모든 무역거래' 해석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개별 지역무역협정의 WTO 규정과의 합치여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도하 선언문의 지침(mandate)에는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정의 규율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특정무역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

도하 각료선언문에서는 다자간환경협정(MEA)의 무역관련 사항을 '특정무역의무'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재 WTO와 다자간환경협정간의 관계정립과 관련하여, 수많은 환경협정 중 어떤 것이 다자간 환경협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U를 비롯한 유럽국가와 일본 등 환경논의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다자간환경협정을 개념적으로 정의한 후 이 정의에 부합하는 환경협정은 자동적으로 WTO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자는 '개념적(conceptual) 접근방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우리나라 등 대다수 국가들은 각각의 환경협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WTO와의 상충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실질적(pragmatic) 접근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wtodda.net >우리입장>우리 정부입장

## 5. WTO에 대한 재정적 기여

### WTO 분담금 출연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7조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분담금(contribution)을 출연하게 되며, WTO는 연간 예산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이러한 회원국의 분담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의 분담금은 전 세계 무역량에서 각국의 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2007년 분담금은 약 457만 스위스 프랑으로, 전체 회원국 중 13위 규모이며 전체 분담금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분담금은 약 426만 스위스 프랑)

### 개도국 기술지원을 위한 세계신탁기금 출연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개도국 지원사업 확대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각료선언문 제40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12월 WTO 일반이사회는 개도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DDA 세계신탁기금(DDA Global Trust Fund) 설립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신탁기금이 설립된 이후 매년 20만 달러 이상을 기여하였으며, 2007년에는 35만 달러를 기여하였다.

WTO 개도국 기술지원사업과 관련한 위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기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DDA 세계신탁기금 설립 이전:

- 1996년 : 5만 달러(싱가폴 각료회의 관련 최빈개도국 참가 경비 지원)
- 2001년 : 약 29만 달러(최빈개도국 기술지원 협력 용도)

DDA 세계신탁기금 설립 이후:

- 2002년 : 25만 달러(별도 조건 없이 공여)
- 2003년 : 20만 달러(별도 조건 없이 공여)
- 2004년 : 20만 달러(별도 조건 없이 공여)
- 2005년 : 20만 달러(지원금 중 3만 달러를 TCBDB\*에 사용토록 지정)  
\* TCBDB : Trade Capacity Building Database(무역역량구축 데이터베이스)
- 2006년 : 20만 달러(별도 조건 없이 공여)
- 2007년 : 35만 달러(별도 조건 없이 공여)



(ㄱ)

가입의정서 105  
 가입작업반 103, 105  
 각료 결정 13, 27, 29, 49, 77  
 각료회의 18, 20, 23, 80, 89, 91, 101, 102  
     제1차 WTO 각료회의(싱가폴) 72, 73, 74, 84, 85, 94, 102, 120  
     제2차 WTO 각료회의(제네바) 10, 74, 89  
     제3차 WTO 각료회의(시애틀) 75  
     제4차 WTO 각료회의(도하) 23, 42, 65, 77, 83, 96, 111, 120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쿰) 77, 81, 82, 84, 85, 86, 87, 89, 90, 91  
     제6차 WTO 각료회의(홍콩) 77, 80, 81, 87, 89, 90, 91  
 감축대상보조금(Amber Box) 28  
 개도국 우대 91  
 개도국 우대조항 79, 91, 95  
 검사기관국제연합(IFIA) 50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81, 97  
 공조그룹 104  
 관세감축 16, 17, 25, 27, 28, 58, 81, 98, 118  
 관세감축공식 81, 118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3,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1, 23, 24, 25, 26, 27, 31, 32, 33, 40, 44, 45, 47, 49, 50, 51, 53, 55, 56, 63, 66, 67, 69, 70, 77, 78, 81, 87, 93, 97, 98, 102, 109, 11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10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 1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 16, 44, 78, 86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7조 16, 79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 67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3조 11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6조 16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9조 47, 11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 30, 65, 67, 68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3조 16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 64, 119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8조 2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4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49  
 관세정점(tariff peaks) 81, 97, 98  
 관세평가에 대한 WTO 협정 49  
 관세할당 27, 28, 29, 78  
 관세화 26, 27  
 국내보조 26, 27, 28, 80, 107, 117  
 국내총생산 13  
 국영무역기업 102, 103, 108  
 국제노동기구(ILO) 74, 75

국제무역기구(ITO) 15, 72  
     국제무역기구(ITO) 헌장 15, 16  
 국제상공회의소(ICC) 50  
 국제수역사무국(OIE) 30  
 국제수지 36, 77, 84, 103, 108  
 국제식물신물종보호동맹(UPOV) 4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30  
 국제연합(UN) 83, 95, 109  
 국제통화기금(IMF) 15, 29, 94, 101, 108, 109, 110  
 그린룸 104  
 가설정 의제 20  
 기술이전 43, 79, 89, 93  
 기술협력과 능력배양 89, 90  
  
 (ㄴ)  
 (국제)낙농협정 16, 17, 51, 52  
 남미공동시장(MERCOSUR) 63, 95, 106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63  
 내국민대우 10, 11, 12, 33, 34, 35, 40, 51, 60, 66, 70, 116  
 농업위원회 80, 102, 103, 107  
  
 (ㄷ)  
 다자간섬유협정(MFA) 2, 17, 31, 32, 33  
 다자간환경협정(MEA) 66, 87, 117, 119  
 다자무역체제 10, 11, 15, 16, 17, 18, 33, 39, 55, 63, 64, 65, 70, 71, 94, 96, 98, 102  
 데갈라 41  
 데이비드 리카르도(David Ricardo) 14  
 도쿄라운드 16, 17, 18, 51, 52, 81  
 도하개발아젠다(DDA) 9, 11, 12, 13, 19, 20, 21, 23, 24, 36, 37, 41, 43, 45, 51, 72, 77, 80, 81, 82, 84, 85, 89, 90, 91, 96, 98, 103, 108, 117, 118  
     도하 (각료)선언문 77, 79, 80, 82, 83, 84, 89, 90  
     도하개발아젠다 세계신탕기금(DDA GTF) 89, 90, 120  
     도하 아젠다 관련 위원회 96  
 독점 대리인 49  
 독점 영업권자 49  
 독점 유통업자 49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63, 69, 106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95  
 딜론라운드 16  
  
 (ㄹ)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 107  
 레나토 루지예로(Renato Ruggiero) 15

# INDEX

로코포트 치즈	41	반담핑조치	16, 23, 44, 45, 46, 50, 78, 102, 113, 118
(ㄱ)		반담핑협정(GATT 제6조)	16, 44, 45, 46, 78, 86, 113, 117, 118
마라케쉬	15, 18, 19	베네수엘라	60, 61, 106
마라케쉬 각료회의	87, 109	베른협약	40
마라케쉬 선언문	17	보조금 및 상계조치	16, 23, 44, 45, 65, 79,
마라케쉬 의정서	25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	102, 103
면화	77, 108	보조금협정	45, 86, 114, 115, 117
면화 소위원회	103	보호주의	14, 15, 17, 30, 31, 35, 70, 75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66	복수국간 협정	12, 16, 24, 51, 73, 85, 102, 103
몬트리올	15, 18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63, 107
몬트리올 의정서	66	분쟁해결기구(DSB)	33, 55, 56, 57, 58, 59, 61, 65, 87,
무역개발위원회	74, 91, 93, 95, 96, 103	102, 103, 104, 108, 113, 114, 115, 11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23, 24, 65, 71, 79, 82, 83, 91, 106, 108, 119		브레튼우즈 체제	1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이사회	42, 74, 82, 83, 88, 102, 103	브뤼셀	15, 18, 10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	10, 11, 23, 24, 39, 42, 43, 71,	블레어하우스 합의	18, 19
79, 82, 83, 88, 108, 110		비관세장벽(NTB)	10, 11, 16, 18, 23, 49, 63, 64, 81, 118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 제2부	40	비교우위	13, 14, 74, 7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 제3부	43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81, 89, 91, 118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 제3조	11	비정부기구(NGO)	68, 108, 11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 제4조	10	(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 제27조	65	사무차장	108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51, 72, 78, 103, 108	사무총장	15, 19, 55, 56, 59, 77, 78, 79, 89, 90, 104, 107, 108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16, 30, 70, 75, 78, 94, 108	산업디자인	39, 40, 4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	31, 65	상소기구(Appellate Body)	56, 57, 59, 60, 61, 67, 68, 10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위원회	31, 88, 102, 103	104, 108, 114, 115, 116	
무역역량구축 데이터베이스(TCBDB)	120	상품무역이사회	33, 51, 72, 73, 74, 78, 85, 102, 103, 104, 107, 108
무역왜곡 국내보조	80	새우-바다거북 사건	67
무역원활화	63, 72, 73, 84, 85, 90, 91, 102, 103, 108, 117, 119	삼페인	41
무역정책검토(TPR)	23, 24, 53, 108, 117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10, 11, 23, 24, 33, 34,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53, 102, 103	35, 93, 104, 108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12, 53	서비스무역이사회	74, 81, 102, 103, 104
무역협상위원회(TNC)	77, 80, 82, 83, 103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23, 49, 50, 108
미국 멸종위기 동물 보호법	67	선적전 검사기관	50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69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50
민간항공기교역	16, 17, 24	섬유감시기구(TMB)	33, 102, 103
민간항공기교역위원회	103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	31, 32, 33
민간항공기협정	17, 24, 51	세계관세기구(WCO)	50
(ㄴ)		세계은행(World Bank)	15, 29, 94, 101, 108, 109, 110
바다거북 탈출 장치(TEDs)	67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40, 42
바젤협약	66, 71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	16, 21, 23, 33, 37, 44, 47,
반담핑	16, 18, 19, 44, 45, 78, 86, 108, 113, 114, 117, 118	48, 84, 94, 108, 116	
반담핑법	110	세이프가드 위원회	48, 102
반담핑위원회	102, 103	세이프가드조치	33, 47, 48, 49
		세이프가드협정	46, 114, 115, 116

수석대표회의(HODs)	104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49
수출보조금	10, 17, 25, 26, 27, 28, 29, 45, 46, 50, 79, 80, 98, 107, 117
수출신용(Export credits)	78
수출자유규제(VER)	47, 98
수파차이 파닛팍디(Supachai Panitchpakdi)	
순식량수입개도국	27, 29, 78
스위스 공식	118
스카치	41
스타니스라브 울람(Stanislaw Ulam)	13
시장접근	10, 13, 18, 19, 20, 24, 25, 27, 28, 33, 37, 38, 80, 88, 90, 94, 108
시장접근 약속	10, 24, 26, 34, 35, 77, 105
시장접근 위원회	102, 103
시장접근 협상그룹	81, 88
신축성	10, 12, 56, 94
싱가폴 이슈	72, 77, 84, 91
 (o)	
아바나(Havana)	15, 16
아바나 현장	16
아서 던켈(Arthur Dunkel)	15, 19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95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그룹(ACP)	107
양시	15
양허관세	25, 27, 44, 45, 99
양허세율	12, 25, 26, 28, 118
양허철회	35
양허표	23, 24, 25, 27, 28, 34, 36, 38, 105
에릭 윈담 화이트 경(Sir Eric Wyndham White)	15
예측가능성	11, 12, 26, 27, 39, 70, 99
오슬로그룹(Oslo Group)	105
올리비에 롱(Olivier Long)	15
우루과이라운드(UR)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31, 33, 36, 38, 39, 49, 51, 52, 53, 56, 65, 71, 77, 81, 94, 97, 98, 105
(국제)우육협정	16, 17, 51, 52
워싱턴	18, 101
워싱턴 조약	42
원산지규정	21, 23, 49, 50, 78, 79, 108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50
원산지규정위원회	50, 102, 103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30, 52, 78
위생 및 식물위생(SPS) 위원회	102, 103, 107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30, 65, 78, 108
유럽공동체(EC)	18, 106, 113, 114, 115, 116
유럽연합(EU)	19, 47, 53, 63, 69, 83, 105, 106, 119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72, 84, 94, 109
유엔 무역 및 고용회의	15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53, 56, 64, 73, 74, 77, 80, 82, 89, 90, 91, 102, 103, 104, 105, 108, 111
일반특혜관세제도(GSP)	95
 (ㅈ)	
자유무역지대	50, 64, 106
자유무역협정(FTA)	11, 50, 110
자유화의 세부원칙(modalities)	27, 38, 72, 80, 81, 84, 85, 91
잠정보고서	57, 59
잠정세이프가드	33
저작권	11, 39, 40, 42, 43
절대우위	14
정부조달	10, 16, 20, 21, 37, 52, 72, 108, 116
정부조달 투명성	63, 73, 84, 85, 89, 91, 102
정부조달 협정	12, 17, 24, 51, 52, 73, 116
제로잉(zeroing)	118
제프리 쏿(Jeffrey J. Schott)	101
중간 처리국	69
지리적 표시	39, 41, 82, 83, 91, 119
지역무역협정(RTA)	63, 64, 86, 102, 108, 119
지역무역협정 위원회	64, 86, 103
지적재산권	10, 11, 12, 16, 18, 19, 20, 21, 23, 24, 39, 40, 42, 43, 53, 65, 66, 71, 73, 108
 (ㅊ)	
체다	41
총감축대상보조(AMS)	28
최빈개도국	13, 27, 28, 29, 33, 37, 38, 43, 46, 51, 53, 78, 79, 81, 82, 84, 85, 86, 89, 90, 93, 94, 95, 96, 97, 99, 106, 107, 108, 109, 118, 120
최빈개도국 소위원회	90, 96, 103
최소부과원칙	118
최소시장접근	28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29
최혜국대우(MFN)	10, 11, 12, 23, 25, 33, 34, 37, 38, 40, 44, 45, 64, 66, 70, 119
최혜국대우 면제	24, 34, 37, 38

## INDEX

### (㉑)

컨센서스(consensus)	18, 55, 56, 57, 58, 69, 72, 74, 83, 84, 85, 87, 91, 101, 102, 104, 106
케네디라운드	16
케언즈(Cairns) 그룹	105, 106, 107
콜로라도(Colorado) 그룹	119
쿼드	18, 19
쿼타	11, 12, 23, 26, 27, 29, 31, 32, 33, 47, 48, 50, 77, 78, 90, 94, 98, 116

### (㉒)

도르케이	15, 16
통일화작업계획(harmonization work programme)	50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	94
특별대우	28, 33, 38, 93, 119
특별 법률 자문관	94
특별세이프가드조치	28
특정무역역무	119
특정제약하의 직접지불(Blue Box)	29
특혜관세	50, 99
특혜잠식	99

### (㉓)

파리협약	40
파스칼 라미(Pascal Lamy)	77, 108

패널	55, 56, 57, 59, 60, 61, 67, 68, 69, 70, 103, 104, 113, 114, 115, 116, 117, 119
패널보고서	69, 56, 57, 58, 59
평화조항	27, 45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다자등록처제도	91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20
폴 스뮤엘슨(Paul Smuelson)	13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15, 18, 19
피터 서덜랜드(Peter Sutherland)	15

###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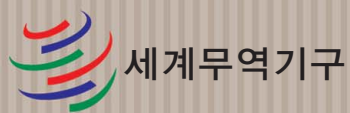
하이닉스	115
합리적인 기간	58, 59
허용보조(Green Box)	29
현대전자	113
회색지대 조치	47, 98

### (기타)

50주년 기념행사	10
7월패키지(기본골격)	77, 80, 91
Byrd 수정법	114
LG전자	113
Micron	113
WTO 조회센터(Reference Centre)	97
WTO 사무국	79, 87, 93, 94, 95, 107, 108, 109, 110, 111







WTO 사무국 발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번역